

2021년 개정판

인도네시아 투자실무 가이드

Indonesia Investment Guide

ESG 경영 및 우수사례 수록

인도네시아 투자실무가이드
Indonesia Investment Guide

» 목차

I.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환경 / 7

1. 인도네시아 경제 및 투자정책 동향 / 8
2. 인도네시아 투자의 개방과 제한 / 13
3. 외국인 투자사의 혜택 및 인센티브 / 23

II. 투자 절차, 사업허가 및 청산 / 31

1. 진출 형태 / 32
2. 법인 설립 / 40
3. 위험도 기반 사업허가 / 49
4. 법인 청산 / 53

III. 인도네시아 비관세 장벽 / 59

1. 인도네시아 표준인증(SNI) / 60
2.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청(BPOM) 인증 / 64
3. 인도네시아 할랄(HALAL) 인증 / 67
4. 인도네시아 국산부품사용(TKDN) 제도 / 70

IV. 노무관리 / 75

1. 근로 관계 / 76
2. 근무(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및 초과근무수당 / 81
3.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 85
4. 근로관계의 해지 및 각종 보상금 / 87
5. 외국인력의 고용 / 94

V. 지식재산권, 영업비밀보호 관리 / 97

- 1. 지식재산권 관리 / 98
- 2. 영업비밀보호 / 103

VI. 세무관리 / 107

- 1. 인도네시아 조세 관련 법령 개관 / 108
- 2. 조세기본법 / 109
- 3. 법인소득세 / 112
- 4. 개인소득세 / 118
- 5. 원천징수 / 118
- 6. 부가가치세 / 122
- 7. 기타 중요 세무 / 126

VII. 인도네시아 ESG 동향 / 129

- 1. ESG 개별 요소 관련 인도네시아 현황 / 130
- 2. ESG 관련 법령의 개관 / 133
- 3. ESG 권장을 위한 인도네시아 기관의 정책과 그 영향 / 135

» 발간사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첫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진 국가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주로 목재, 석탄, 고무 등 자원 확보를 위해 진출을 시작하여 풍부한 노동력, 우회 수출과 내수 거냥, 최근에는 조코위 대통령 집권 2기로부터 발생 되는 정치적 안정성 및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인도네시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측면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국가입니다. 우선, 농업 자원에서 광물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 부국입니다. 특히 전기차에 필수적인 2차 전지 원료인 니켈 생산량이 세계 1위이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현대차그룹 및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는 2021년 기준 약 3억 명이라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으로 평균연령 29세의 풍부한 노동력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거대 내수시장이 조성된 국가입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건강, 미용,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인도네시아 인구의 80% 수준이 무슬림인데(약 2.2억 명) 이는 단일 국가 중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다수의 국가들과 할랄 인증과 관련해 공신력을 인정받아 교차인증을 허용하고 있어 다른 무슬림 국가 진출에 용이한 거점 국가로도 각광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對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작년 11월 ‘일자리 창출 특별법(일명 옴니버스법)’을 공포했고 올해 2월에는 49개에 달하는 세부 시행령까지 발표하였습니다. ‘옴니버스법’은 노동·금융·조세 세 개의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기존 투자 걸림돌로 작용했던 복잡한 조업 인허가 절차, 고용, 토지 취득 문제 등과 같은 규제 개혁에 방점이 찍혀있어 인도네시아 진출로 인해 얻게 되는 인센티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KOTRA는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투자실무 가이드를 개정하였습니다. 옴니버스 법 관련 및 현지 경영·노무관리·ESG 사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최신의 정보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이미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거나 새로이 진출을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 기업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책자 발간을 위해 수고해주신 KOTRA 자카르타무역관과 투자 MnA팀, 마지막으로 자료 수집 및 원고 작성에 큰 도움을 주신 법무법인 세종 자카르타 사무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KOTRA Invest KOREA 대표 장상현



인도네시아 투자실무가이드



I .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환경

1. 인도네시아 경제 및 투자정책 동향
2. 인도네시아 투자의 개방과 제한
3. 외국인 투자사의 혜택 및 인센티브

1. 인도네시아 경제 및 투자정책 동향

1.1 인도네시아 개관

인도네시아의 면적, 인구, 종교 등 개괄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¹⁾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 가능성, 산업 전반에 걸친 수요의 측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건국이념	반짜실라 ²⁾
면적	1,904,569 km ² [자료원: World atlas(2021.2 기준)]
수도	자카르타
인구	270,200,000 명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2021.1 발표)]
민족(인종)	자바족 (40.1%), 순다족 (15.5%), 말라유족(3.7%), 바타크족 (3.6%), 마두라족(3%), 브타위족(2.9%), 반뎬족(2.9%), 미낭까바우족(2.7%), 부기스족(2.7%), 발리족(1.7%), 중국족(1.2%), 기타 1,340 부족(통계청 인구조사 통계)
언어	인도네시아 어(Bahasa Indonesia)
종교	이슬람 (87.2%), 개신교 (6.9%), 카톨릭 (2.9%), 힌두 (1.7%), 불교 (0.7%), 유교 (0.05%)
기후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 무풍다습
국가원수	2014. 10.~2019. 10(조코 위도도 1기) 대통령 : 조코 위도도 (Joko Widodo) 부통령 : 유슈 갈라 (Jusuf Kalla) 2019. 10.~2024. 10(조코 위도도 2기) 대통령 : 조코 위도도 (Joko Widodo) 부통령 : 마루프 아민(Maruf Amin)

1) <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

2) 인도네시아의 건국 이념인 '반짜실라'. 산스크리트어인 'panca(다섯)'와 'sila(원칙)'가 결합된 단어로서 다섯 가지의 건국 원칙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 헌법 전문에 이 다섯 가지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i) 전능하신 신의 은총, ii) 정의롭고 문명화된 인류, iii) 통일된 인도네시아, iv) 속고의 지혜가 이끄는 민주주의, v)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한 사회 정의"가 바로 다섯 가지의 원칙이다.

1.2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 전망 및 경제지표

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의 전세계적 유행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특히, 2020년 대규모 사회적제약(Pembatasan Sosial Berskala Besar: PSBB) 정책을 통해 여행 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재택근무, 재택교육 등의 방역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 분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가 2019년 대비 부진했다. 2021년 1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의 백신 보급 확대와 함께 경제도 회복되는 추세였으나, 2021년 7월 코로나 19 델타 변이의 확산과 함께 긴급일반활동제한(Pemberlakuan Pembatasan Kegiatan Masyarakat Daru; PPKM Darurat)의 시행과 함께 경제 활동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의 연도별 주요 경제지표는 다음과 같다.³⁾

경제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	5.03	5.07	5.17	5.02	-2.07
명목GDP (십억\$)	932.07	1,015.5	1,104.7	1,120	1,059.6
1인당 GDP (PPP, \$)	10,620	11,070	11,800	12,480	12,220
1인당 명목 GDP (\$)	3,605.72	3,885	3,947	4,196	3,922
정부부채 (% of GDP)	30	29.4	30	30.5	38.5
물가상승률 (%)	3.53	3.81	3.2	3.02	1.68
실업률 (%)	5.61	5.5	5.34	5.3	7.07
수출액 (백만\$)	144,489.77	167,640.45	180,215.04	167,002.88	163,306.49
수입액 (백만\$)	135,652.58	156,925.37	187,916.68	170,388.23	141,622.13
무역수지 (백만\$)	8,837.19	10,715.08	-7,701.64	-3,385.35	21,684.36
외환 보유고 (백만\$)	116,361.53	130,196.38	120,654.27	129,183.28	135,896.66
이자율 (%)	4.75	4.25	6	5	3.75
환율 (자국통화)	13,308.33	13,380.83	14,236.94	14,146.33	14,576.81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2021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약 4% ~ 5%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의 주요 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⁴⁾도 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3) <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

4) <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

| 주요 대내외 기관들 경제성장률 전망⁵⁾(2021년) |

1. 인도네시아 재무부: 3.7~4.5% (2021.7 기준)
2. OECD: 4.7% (2021. 5 기준)
3. WORLD BANK: 4.4% (2021. 6 기준)
4. IMF: 3.9% (2021. 7 기준)
5. EIU: 3.9% (2021. 8 기준)

1.3 인도네시아 경제협정 현황 및 투자 동향

2019년부터 진행되어 온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2020년 12월 18일 최종 서명되어 타결됨에 따라 수출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0년 3월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이 구축되어 개통됨에 따라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 형태로 교환할 수 있게 되어, 원산지 진위를 둘러싼 논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⁶⁾

2021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투자부(KEMENTERIAN INVESTASI;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Indonesia/BKPM; 이하 “투자부”) 통계를 기준으로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 중국, 네덜란드에 이은 5대 인도네시아 투자국이다. 2020년 동 분기 기준 투자국 순위 6위에서 1 단계 상승했다. 투자금액의 관점에서도 6억 8천만 달러 규모에서 18억 4천만 달러 규모로 대폭 증가하였다.

| 인도네시아 주요 투자국 투자 현황 | ⁷⁾

단위: 백만 달러

국가명	2018	2019	2020	2021.상
싱가포르	9,193.2	6,509.6	9,779.1	4,711.8
홍콩	2,011.4	2,891.0	3,535.9	2,271.6
중국	2,376.5	4,744.5	4,842.4	1,682.1
네덜란드	943.1	2,596.8	1,422.4	1,285.7

5) <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

6) <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

7) 인도네시아 투자부 공식 발표자료, 2021 상반기 10대 투자국 기준

국가명	2018	2019	2020	2021.상
대한민국	1,604.7	1,070.2	1,841.9	1,077.2
일본	4,952.8	4,310.9	2,588.0	1,038.6
미국	1,217.6	989.3	749.7	799.2
말레이시아	1,774.9	1,357.5	1,045.3	706.9
스위스	243.3	150.7	130.9	496.5
태국	396.3	342.8	112.1	318.9
총합	29,307.9	28,208.8	28,666.3	15,650.3

1.4 입법 동향

인도네시아 의회 및 정부는 사업주체의 사업활동 편의를 보장하여 인도네시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외국인 투자 등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 전략적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 11월 2일, 소위 ‘옴니버스법’이라고 불리는 「2020년 제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 이하 “옴니버스법”)이 법률로서 공포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다.

옴니버스법은 하나의 법률을 통하여 78개의 기존 법률을 개정(76개 법률 개정) 및 폐지(2개 법률 폐지)하는 방식을 택하였는데, 각 산업 부분의 개별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기존에 법률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던 각종 사업허가의 요건 및 투자 요건 등을 가급적이면 단순화시키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부령(대한민국 법령 체계상 ‘시행령’에 해당) 또는 대통령령(대한민국 법령 체계상 ‘시행규칙’에 해당)에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2021. 2. 2. 약 40 여개 이상의 옴니버스법 구체화를 위한 다수의 하위 법령이 제정 및 공포되었다.

투자 부문의 경우, 옴니버스법 제77조에 의하여 투자법 제12조가 개정되었는데, 개정 투자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투자의 요건 및 개방과 제한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2021. 3. 4.부터 「2021년 제10호 투자 사업분야에 관한 대통령령」(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2021 TENTANG BIDANG USAHA PENANAMAN MODAL)이 시행되었다.

사업인허가와 관련된 부문의 경우, 사업활동의 위험도에 따라 사업허가의 내용이 대폭 간소화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2021. 2. 2. 마련된 「2021년 제5호 위험도 기반 사업허가 실시 에 관한 행정부령」(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2021 TENTANG BIDANG USAHA PENANAMAN MODAL) 및 2021. 3. 29. 제정된 「2021년 제4호 위험도 기반 사업허가 절차 및 투자혜택에 관한 투자부 규정」(PERATURAN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REPUBLIK INDONESIA NOMOR 4 TAHUN 2021 TENTANG PEDOMAN DAN TATA CARA PELAYANAN PERIZINAN BERUSAHA BERBASIS RISIKO DAN FASILITAS PENANAMAN MODAL)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다.

노동 부문의 경우, 옴니버스법 제81조 내지 제84조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사회보장시스템법, 사회보장청법, 이주근로자보호법이 각 일부 개정되었고, 그에 대한 후속 하위법령으로 2021. 2. 2. 제정된 「2021년 제34호 외국인력 사용에 관한 행정부령」, 「2021년 제35호 기간제계약, 인력파견, 근무 및 휴식시간,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행정부령」, 「2021년 제36호 임금제도에 관한 행정부령」, 「2021년 제37호 고용보험 프로그램에 관한 행정부령」에 의하여 각 규율되고 있다.

위와 같은 입법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i) 사업허가제도의 개혁, 사업허가 절차 및 투자요구 사항 단순화, ii) 기업 활동의 편의 보장, iii) 투자 생태계 전반의 규제 조정 및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환경의 개선, iv) 근로 분야 개혁, v)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가속화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인도네시아 투자의 개방과 제한

2.1 인도네시아 투자 관련 법령, 기관 및 시스템 개관

우선, 인도네시아는 투자와 관련하여 「2007년 제25호 투자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5 TAHUN 2007 TENTANG PENANAMAN MODAL, 이하 “투자법”)을 제정하여 투자에 관한 기본법으로 삼고 있다.

투자의 형태가 내자투자인지 외자투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투자법은 인도네시아 내의 모든 자본투자 영역에 적용되므로,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 투자법상의 규정 내용과 다른 방식의 투자는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옵니버스법에 의하여 2007년 제25호 투자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개정 투자법에 의하더라도 외국인 투자는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 법에 기초한 주식회사(Perseroan Terbatas)의 형태로 행해져야 한다는 점 및 외국인 투자가 위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둘째, 투자법에서 투자 분야의 개방과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마련된 「2021년 제10호 투자 사업분야에 관한 대통령령」(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2021 TENTANG BIDANG USAHA PENANAMAN MODAL, “2021년 투자리스트”)에서 투자 개방의 요건과 함께 구체적으로 개방 분야 및 제한 분야의 목록을 마련하고 있다.

2021년 투자리스트는 2016년에 마련된 소위 ‘네거티브 리스트(Daftar Negatif Investasi; DNI; Negative List)’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으로서 2021. 3. 4.부터 시행 및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편의점 사업을 하고자 마음을 먹은 외국인 사업자(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편의점 사업이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 만약 개방되어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분율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투자법과 함께 2021년 투자리스트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투자를 위한 각종 요건, 절차, 방법, 사업허가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2021. 2. 2. 공포되어 시행된 「2021년 제5호 위험도 기반 사업허가제도 실시에 관한 행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5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PERIZINAN BERUSAHA BERBASIS RISIKO, “위험도 기반 사업허가제도 실시에 관한 행정부령” 또는 “2021년 사업허가 행정부령”)이나 투자부(BKPM)에서 마련한 각종의 규정들이 투자와 관련된 분야를 규율하는 공통적인 기본 법령에 해당한다.

참고로, 위 2021년 사업허가 행정부령의 제정과 함께 기존에 OSS(Online Single Submission) 관련 행정부령인 2018년 제24호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통합된 사업허가에 관한 행정부령은 폐지되어 효력을 모두 상실하였고, 위 폐지된 행정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OSS 관련 규정들은 새로운 행정부령인 2021년 사업허가 행정부령의 규정 내에서 일부 개정 및 통합되어 존재하게 되었다.

넷째, 각 산업별로 투자허가 요건 등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법령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은행, 증권업, 보험업 등 금융업 분야에서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BI) 규정 및 금융감독총국(Otoritas Jasa Keuangan; 이하 “OJK”) 규정들이 해당 업종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므로, 당해 관련 규정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사업허가 및 투자요건 등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각 업종별 개별 법률로는 「어업법」, 「농원법」, 「식물품종보호법」, 「지속가능한 농업재배시스템법」, 「농업인 보호법」, 「원예법」, 「축산 및 동물건강법」, 「임업법」, 「산림파괴방지법」, 「광물 및 석탄채굴법」, 「석유 및 천연가스법」, 「지열법」, 「전력법」, 「원자력법」, 「산업법」, 「무역법」, 「도량형법」, 「할랄제품보증법」, 「주택 및 주거지역법」, 「집합주택법」, 「건설업법」, 「수자원법」, 「도로운송법」, 「철도법」, 「항해법」, 「항공법」, 「보건법」, 「병원법」, 「항정신성약품법」, 「마약법」, 「식품법」, 「영화산업법」, 「관광산업법」, 「우체국법」, 「통신법」, 「방송법」, 「은행법」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개별 업종의 코드와 그에 해당하는 업무의 범위를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Klasifikasi Baku Lapangan Usaha Indonesia; 이하 “KBLI”)가 존재한다.

KBLI는 경제활동에 관한 국제표준산업분류(SIC)와 아세안 공통 산업 분류를 참조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것은 2020년 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이다. 예를 들어, 재보험업에 대한 KBLI 코드는 65200이고, 재보험업의 하위 분류에 있는 일반 재보험업에 대한 KBLI 코드는 65201이다.

2021년 투자리스트에는 그 개방과 제약에 해당하는 각 업종의 KBLI 코드를 병기하여 두고 있으므로 2021년 투자리스트와 함께 2020년 KBLI 내용을 검토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영위하려는 사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보유 지분 최대한도, 현지 인도네시아 파트너 필요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여섯째, 외자투자에 관한 투자인허가 등 투자업무의 상당부분은 인도네시아 투자부와 관련이 되어 있다.

기존에는 투자에 관한 승인/허가 등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일반업종에 대한 투자허가 등은 투자부, 은행업의 경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은행업 이외의 금융업은 금융감독총국(OJK), 광업 분야의 경우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등에서 별도로 허가 등을 발급하여 왔으나, 2018년 제24호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통합된 사업허가에 관한 행정부령이 마련됨에 따라 금융업, 은행업, 광업 분야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허가와 관련하여서는 OSS 시스템을 통하여 통합되어 온라인으로 행정처리가 되고 있고, 이러한 기조는 2021년 제5호 위험도 기반 사업허가제도 실시에 관한 행정부령을 통하여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2021년 제5호 위험도 기반 사업허가제도 실시에 관한 행정부령(2021년 사업허가 행정부령)에 따르면 OSS 시스템을 운용 및 관리하는 주체는 OSS 기관인데, OSS 기관의 역할을 인도네시아 투자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투자와 관련된 통합 인허가 시스템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하여야 할 부처는 인도네시아 투자부다. 투자부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직속 하위 기관으로서 투자 정보의 제공, 투자 통계 조사, 투자 실현 검증 및 모니터링, OSS 시스템의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2.2 투자 종류의 구분

인도네시아 투자법상 “투자(Penanaman Modal)”란 자본을 투자하는 모든 형태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업을 위하여 행해지는 내국자본의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의 투자를 포함한다.

“외국자본(Modal Asing)”이란 외국 국가, 외국인, 외국 단체, 외국 법인, 그리고 외국 당사자가 소유한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하여 설립된 인도네시아 법인이 보유하는 자본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내국자본(Modal Dalam Negeri)”은 국가(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법인격 여부를 불문하고 인도네시아 단체가 보유하는 자본을 말한다.

이러한 외국자본 및 내국자본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100%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법인 등에 의하여 투자된 자본만을 내국자본이라고 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 등으로부터 투자된 자본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외국자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외자투자(Penanman Modal Asing)” 또는 외국인 투자란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업을 위

하여 외국 투자에 의한 자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본의 전부가 외국자본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일부에 내국자본이 포함된 경우에도 외자투자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로, 실무상 외자투자를 축약하여 “PMA”라고 칭하고, 외국인 투자회사를 “PMA 회사”, 인도네시아 내국인 투자회사를 “PMDN 회사”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2.3 인도네시아 투자법에 따른 혜택 개관

인도네시아 투자법에 따르면, 투자자가 아래에 열거된 요건들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게 되면 i) 세 제상의 혜택, ii) 토지에 관한 권리 취득의 편의, iii) 이민국 서비스 편의, iv) 수입 허가 편의를 받을 수 있다.

| 투자 혜택을 위한 요건 (인도네시아 투자법) |

- i) 많은 노동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 ii) 우선순위 업종에 포함되는 경우
- iii)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포함되는 경우
- iv) 기술적 전문 영역에 투자를 실행하는 경우
- v) 선구적 사업 분야에 투자를 실행하는 경우
- vi) 오지, 격지, 국경지역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 vii) 생활환경을 보존하는 경우
- viii) 연구, 개발, 그리고 혁신 사업에 투자를 실행하는 경우
- ix)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 또는 조합과 협력하는 경우
- x) 국내에서 생산된 자본재, 기계 또는 장비를 이용하는 사업의 경우
- xi) 관광 산업 개발의 경우

한편,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와 투자국 사이에서 외화로 송금 또는 수금을 할 권리가 부여된다.



| 외화 송금 또는 수금 대상 (인도네시아 투자법) |

- i) 자본금
- ii) 이익금, 은행 이자, 배당금, 기타 이득금
- iii)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대금
 - 원자재 및 부자재 구입, 반제품 구입
 - 투자를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자본재 교체
- iv) 자본 투자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자금
- v)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vi) 반드시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 또는 로열티
- vii) 투자된 사업 영역에서 일하는 외국 노동자의 급여
- viii) 투자의 청산 또는 매매로 인한 환가금
- ix) 손해에 대한 배상금
- x) 취득에 대한 보상금
- ii) 기술구역과 경영구역에 대하여 지불되어야 할 용역비, 프로젝트 계약의 이행에 따른 비용,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비용
- ii) 자산 이전에 따른 환가금

외국인 투자자에게 위와 같은 항목의 금원을 인도네시아 내외로 송금 또는 수금할 권리가 유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도네시아 정부에 자금의 이동과 관련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가 기발생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현지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체불하는 등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송금 또는 수금이 연기되거나 금지될 수도 있다.

2.4 투자의 개방과 제한

옴니버스법 제77조에 의하여 일부 개정된 인도네시아 「투자법」에서는 투자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거나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만이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는 원칙적으로 투자가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투자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투자의 요건 및 개방과 제한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투자리스트가 시행 및 적용되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2021년 투자리스트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 옴니버스법 외국인 투자 분야 주요 변경 사항 | ⁸⁾

구분	기존 대통령령 (2016년 제44호 대통령령; 네거티브 리스트)	신규 대통령령 (2021년 제10호 대통령령; 2021년 투자리스트)
인센티브	구체적 명시 부족	유무형적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제한구분	3개 (투자 금지, 조건부 개방, 특정조건 개방)	5개 (투자 우선 개방, 조건부 개방, 특정조건 개방, 기타, 투자금지)
투자금지업종	20개	6개
현지기업 협업 업종	145개	89개
투자지분제한업종	350개	46개
지분한도 초과 규정	지분한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2년 이내에 명시된 한도 내로 재조정 필요	초과분에 대한 조항 없음
최소투자금액 규정	2018년 투자부 제6호 규제 외 최소투자금액에 대해 명시되지 않음	최소 투자금액 100억 루피아 명시 (특별경제구역 내 기술기반 스타트업 100억 루피아 미만 가능)

2.5 금지된 사업분야

인도네시아 투자법과 2021년 투자리스트에 따르면, i) 투자가 금지된 것으로 선언된 분야, ii) 오직 중앙정부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분야는 투자에 개방되어 있다.

개정 투자법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투자 제한 분야에 대해서는 내자투자(Penanaman Modal Dalam Negri; PMDN)⁹⁾ 및 외자투자(외국인 투자; Penanman Modal Asing; PMA)¹⁰⁾를 불문하고 투자가 금지된다.

8)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시행령 투자분야 주요 내용, 2021: <https://news.kotra.or.kr/>

9) “내자투자(Penanaman Modal Dalam Negri)”란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업을 위하여 내국 자본을 이용하여 투자 활동이 이루어지는 자본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내자투자는 인도네시아 국민, 법인과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도네시아 내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외자투자(Penanman Modal Asing)”란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업을 위하여 외국 투자에 의한 자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본의 전부가 외국 자본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일부에 내국 자본이 포함된 경우도 외자투자가 된다. 이러한 외자투자는 외국인, 외국 법인과 단체, 외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내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 투자 제한 분야 (인도네시아 투자법) |

- i) 마약 재배 및 유통 산업
- ii) 모든 형태의 도박 및/또는 카지노 산업
- iii)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와 관련된 산업
- iv) 산호초의 활용 및 채취 등에 관한 산업
- v) 화학무기 제조업
- vi)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 물질 관련 산업

‘오직 중앙정부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는 분야’란 서비스의 성격상 또는 전략적인 안보 및 보안에 관한 것으로서 제3자에 의하여 또는 제3자와의 협력에 의하여 수행될 수 없는 분야를 말하는데, 통상 국방에 관련된 분야가 이에 해당한다.

위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원칙적으로 투자에 개방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개별 사업분야별로 해당 영역을 규제하는 개별 법령에 의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칙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과 관련하여 i)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 ii) 가능하다면 투자 개방의 정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률 자문을 통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6 개방된 사업분야

2021년 투자리스트에 따르면, i) 우선사업분야, ii) 영세중소기업분야, iii) 특정조건분야, iv) 위 3 가지에 언급되지 않은 분야는 투자(내자투자 및 외자투자)에 개방되어 있다.

🔴 우선사업분야 (2021년 투자리스트 첨부 1)

2021년 투자리스트 첨부 1에는 총 245개 사업분야가 “우선사업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다. 우선사업분야는 국가전략프로젝트나, 자본집약산업, 첨단기술산업, 연구 및 혁신산업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분야를 말한다. 이러한 우선사업분야에 대해서는 i) 세금 감경, 면제, 투자 공제, 관세 혜택 등과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와 사업허가 편의, 인프라 지원, 고용 편의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인센티브의 구체적 적용은 2021년 투자리스트를 통하여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분야의 제반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세금 분야에서 당해 사업자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혜택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등¹¹⁾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우선투자분야 및 혜택 구분 | ¹²⁾

혜택 ¹³⁾ 구분	분야
Tax Allowance (183개 분야)	농업(옥수수, 대두, 논, 사탕수수 등), 육우 사육 및 재배, 임업(소나무 숲, 마호가니 숲 등), 갑각류, 연체동물, 석탄, 지열, 광석(철, 보크사이트, 니켈, 구리, 우라늄, 주석, 금 등), 화학, 화장품, 필라멘트 폴리 에스테르, 타이어, 플라스틱, 철, 제강, 유리, 섬유 기계, 발전소, 호텔 등
Tax Holidays (19개 분야)	금속, 기초금속, 석유화학, 화학, 제약원료, 전자의학, 반도체, 기계 및 부품, 로봇공학, 발전소용 부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선박 부품, 기차 및 항공기, 펄프, 인프라(발전소, 도로, 항만 등), 디지털 경제 관련 등
Investment Allowance (43개 분야)	육류 가공, 수산물 가공, 유제품 가공, 커피 가공, 의류, 가죽, 종이, 종이 포장, 고무 제품,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식기류 제품, 조리기구 제품, 가전 제품, 농업 기계, 목재 가구, 장난감 등

➤ 영세중소기업분야 (2021년 투자리스트 첨부 2)

영세중소기업분야는 2021년 투자리스트 첨부 2에 열거되어 있는데, 이 분야는 다시 i) 영세중소 기업에게만 배정된 사업분야와 ii) 영세중소기업과 협업하는 사업분야로 구분된다. 영세중소기업에게만 배정된 사업분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불가능하고, 영세중소기업과 협업하는 사업분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참고로, 외국인 투자가 인도네시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그 투자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에 의한 주식회사(PT)의 형태로만 가능하고, 위와 같은 형태의 외국인 투자(PMA) 회사는 인도네시아 영세중소기업법 및 투자부 규정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대기업'의 분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할 때에도 영세중소기업에게만 배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불가능하다.

11)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10년 제94호 행정부령” 및 위 행정부령의 일부 개정 규정인 “2019년 제45호 행정부령”, “2020년 제16호 재무부 장관령”, “2020년 제130호 재무부 장관령”의 내용을 각 참조

12)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시행령 투자분야 주요 내용, 2021

13) 각 혜택에 따른 주요 내용은 아래 “3.4. 세제 관련 혜택 개관” 이하 참조

▶ 특정조건분야 (2021년 투자리스트 첨부 3)

특정조건분야는 다시 i) 내자투자 조건 사업분야, ii) 외국자본의 소유 제약이 있는 사업분야, iii) 특별 허가가 필요한 사업분야로 구분된다. 이러한 특정조건분야는 기존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¹⁴⁾ 상 350개 분야에 이르렀는데, 2021년 투자리스트에서는 46개로 대폭 축소되었다.

2021년 투자리스트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분야는 원칙적으로 내자투자 및 외자투자를 막론하고 완전 개방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에서 규율되고 있었으나 이번 2021년 투자리스트에서 제외된 분야는 기존의 제약과 달리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특정조건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분야가 기존에 비하여 대폭 축소되었다는 것은 외자투자에 개방된 분야가 그만큼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특정 조건에 의한 투자 허용 세부 내용 | ¹⁵⁾

지분 비율	구분	세부 내용
현지자본 100%가 원칙이나 사업 확장과 같은 특정 조건에 따라 외국인의 20%~49% 지분 취득 가능(5개 분야)	언론 매체	1. 일간지, 잡지 등(최대 49%) 2. 개인 방송(최대 20%) 3. 케이블 티비와 같은 구독 방송(최대 20%) 4. 라디오 방송(최대 20%) 5. 지역 티비 방송(최대 20%)
외국인 투자는 최대 49%, 국내 자본이 외국인 총 지분 (단일 다수)보다 많아야 함 ¹⁶⁾ (3개 분야)	항공 운송	1. 정기 상업 항공 운송(KBLI 51101) 2. 국내 비정기 상업용 항공 운송(KBLI 51102) 3. 항공 운송 활동(KBLI 51109)

14) 2016년 제44호 대통령령(PERATURAN PRESIDEN NOMOR 44 TAHUN 2016 TENTANG DAFTAR BIDANG USAHA YANG TERTUTUP DAN BIDANG USAHA YANG TERBUKA DENGAN PERSYARATAN DI BIDANG PENANAMAN MODAL)을 말한다.

15)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 인도네시아 음니버스법 시행령 투자분야 주요 내용, 2021

16) 이 분야의 경우, Single Majority(단일 다수) 원칙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내 자본에 의한 지분권자가 다수인 경우, 적어도 그 국내 자본에 의한 지분권자 1명의 지분이 외국 자본에 의한 지분의 총 합계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국내 자본 A 31%, 국내 자본 B 20%, 외국 자본 C 49%로 구성되어 있다면, 외국 자본 C의 지분율은 외국인 투자 최대 한계의 범위 내에 있기는 하나, 국내 자본 A와 B 중 최대 지분권자인 A의 지분율이 외국 자본 C의 지분율보다 낮다는 점에서 Single Majority 원칙이 충족되지 않게 되므로, 항공 운송에 관한 3가지 분야에서 이러한 지분 구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아래 행의 “외국인 투자 최대 49%”는 이러한 제약이 없으므로, 위의 예시와 같은 지분 구조도 허용된다.

지분 비율	구분	세부 내용
외국인 투자 최대 49% 제한 (21개 분야)	교통 물류 인프라	1. 우편 서비스 2. 국내 해상 여객 운송(정기 및 부정기선) 3. 국내 해상 화물 운송(정기 및 부정기선) 4. 해외 해상 특정 화물 운송 5.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교통 선도 분야 6. 강과 호수 여객 및 화물 운송
특별 허가 조건 (6개 분야)	방산 주류	1. 방산(국방부로부터 사전 허가 필요) 2. 주류 제조(발리, 누사틍가라, 북술라웨시, 파푸아 등 특정 지역에서만 허용하였으나 2021년 3월 2일 철회) 3. 주류 유통(특별 유통 허가 필요, 2021년 3월 2일 철회)
내자투자조건 사업분야 현지 자본 100% (11개 분야)	기타	1. 전통 의약품 제조 2. 수공예 목재 제품 3. 전통 음식(른당) 4. 전통 화장품 5. 전통 의상(바틱) 6. 무슬림 성지순례(종교는 이슬람 필수)

한편, 이러한 특정 조건에 따른 외국인 투자 지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인도네시아 내의 증권거래소를 통한 상장회사의 주식에 대한 거래, 즉, 자본시장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간접거래/포트폴리오 거래에 의한 투자활동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금융업 및 은행업의 적용 제외

기존 2016년 네거티브리스트에서는 금융업 및 은행업의 각 업종별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소유 제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두고 있었으나, 2021년 투자리스트에서는 금융업 및 은행업의 각 업종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 경우, 2021년 투자리스트상에 언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금융업 및 은행업의 각 업종 분야가 외국인 투자에 100% 개방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이러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2021년 투자리스트에서는 금융업 및 은행업의 경우 당해 업종을 규율하는 개별 분야의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마련하여 두었다.

따라서 금융업 및 은행업의 외국인 투자 지분의 제한, 사업허가에 필요한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당해 업종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업의 경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및 금융감독청 규정의 각 내용, 증권 및 보험업의 경우 금융감독청 규정의 각 내용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3. 외국인 투자시의 혜택 및 인센티브

3.1 토지 관련 혜택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토지에 관한 권리 중 경작권(Hak Guna Usaha), 건축권(Hak Guna Bangunan), 사용권(Hak Pakai)의 취득과 관련하여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경작권은 최장 35년간 부여될 수 있고, 최장 25년 동안 연장될 수 있으며, 다시 최장 35년의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건축권(국가토지 및 관리권 토지에 대한 건축권)은 최장 30년간 부여될 수 있고, 최장 20년 동안 연장될 수 있으며, 다시 최장 30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개인의 소유권 토지에 대한 건축권 설정의 경우, 최장 30년 동안 건축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다시 최장 30년 단위로 갱신될 수 있다.

사용권(국가토지 및 관리권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최장 30년간 부여될 수 있고, 최장 20년 동안 연장될 수 있으며, 다시 최장 30년의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개인의 소유권 토지에 대한 사용권 설정의 경우, 최장 30년 동안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다시 최장 30년 단위로 갱신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작권, 건축권, 사용권의 권리 기간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혜택이 주어진다.

- a. 경작권(Hak Guna Usaha)은 한번에 일괄하여 60년 동안 제공이 될 수 있고 그 이후 35년을 갱신하는 방법에 의하여 총 95년 동안 제공될 수 있다.
- b. 건축권(Hak Guna Bangunan)은 한번에 일괄하여 50년 동안 제공이 될 수 있고 그 이후 30년을 갱신하는 방법에 의하여 총 80년 동안 제공될 수 있다.
- c. 사용권(Hak Pakai)은 한번에 일괄하여 50년 동안 제공이 될 수 있고 그 이후 25년을 갱신하는 방법에 의하여 총 75년 동안 제공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혜택이 최초로 일괄하여 제공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 a. 장기간에 걸쳐 행해지는 투자이며 그 투자가 인도네시아 경제구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투자인 경우
- b. 투자하는 사업 종류의 특성상 투자금의 회수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투자로서 투자가 위험성을 가지는 경우
- c. 대규모의 면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투자의 경우
- d. 국유토지에 대한 권리를 이용하는 투자인 경우
- e. 공공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의 공정성을 방해하지 않는 투자의 경우

3.2 이민국 서비스 혜택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민국 서비스 편익이 제공될 수 있다.

- a. 외자투자자를 위한 2년간의 제한적 거주 허가(Izin Tinggal Terbatas)의 제공
- b. 2년간 연속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살았던 제한적 거주 허가를 받은 투자자를 위하여 고정적 거주 허가(Izin Tinggal Tetap)로 변경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
- c. 1년의 제한적 거주 허가를 받은 자를 위하여 제한적 거주 허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장 12개월간의 복수 출입국 허가의 제공
- d. 2년의 제한적 거주 허가를 받은 자를 위하여 제한적 거주 허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장 24개월간의 복수 출입국 허가의 제공
- e. 고정적 거주 허가를 받은 자를 위하여 고정적 거주 허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장 24개월간의 복수 출입국 허가의 제공

다만, 위와 같은 이민국 서비스 편익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외자투자자가 i) 투자를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외국인 노동인력이 필요한 투자의 경우, 또는 ii) 기계장치, 기타 생산을 위한 보조 장치에 대한 개선탄, 그리고 사후 서비스를 위한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인력이 필요한 투자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3.3 수입 허가 편익

외국인 투자자가 다음과 같은 재화를 인도네시아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이 가능하다.

- a. 재화의 무역에 관련된 제반 법령의 규정의 내용에 반하지 아니하는 재화
- b. 안녕, 질서, 보건, 생활환경, 그리고 전국가적 윤리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재화

- c. 외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가진 공장에서 생산된 재화
- d. 생산 그 자체를 위하여 필요한 자본재 또는 원자재

3.4 세제 관련 혜택 개관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세제상의 혜택은 아래와 같다.

- a. 일정한 시점 내에 투자되는 투자 총액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법인세의 감면
- b.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기계, 또는 장비의 수입에 대한 세금의 감면
- c.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으로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또는 부자재의 수입에 대한 세금의 감면
- d.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또는 기계 또는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특정한 기간 동안 면제 또는 유예
- e. 가속적인 감가상각
- f. 특정한 지구 또는 지대 또는 단지에서 특정한 사업활동을 하는 특별한 경우에 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세금 감경

확장성이 높은 사업, 높은 부가가치와 전파효과를 갖는 사업, 신기술을 도입하는 사업과 국가 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전략적 가치를 갖는 사업 분야에서 신규 투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위 a.호의 혜택에서 더 나아가 법인세(또는 법인소득세, 이하 동일) 감면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법인세 감면, 투자소득공제 등 조세 관련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2010년 제94호 행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94 TAHUN 2010 TENTANG PENGHITUNGAN PENGHASILAN KENA PAJAK DAN PELUNASAN PAJAK PENGHASILAN DALAM TAHUN BERJALAN), 위 2010년 제94호 행정부령에 대한 일부 개정 규정인 「2019년 제45호 행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19)을 근간으로 하여 규율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및 행정부령의 위임에 따라 조세 인센티브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2018년 제35호 재무부 장관령」(PMK No. 35/PMK.010/2018 tentang Pemberian Fasilitas Pengurangan Pajak Penghasilan Badan)은 「2018년 제150호 재무부 장관령」(PMK No. 150/PMK.010/2018 tentang Pemberian Fasilitas Pengurangan Pajak Penghasilan Badan)에 의하여 폐지되어 효력을 상실하였고, 다시 위 2018년 제150호 재무부 장관령은

2020. 9. 18. 공포된 「2020년 제130호 재무부 장관령」(PMK No. 130/PMK.010/2020 tentang Pemberian Fasilitas Pengurangan Pajak Penghasilan Badan)에 의하여 폐지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만, 기존 2018년 제35호 및 2018년 제150호 각 재무부 장관령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납세의무자의 경우, 기존 재무부 장관령에 따른 혜택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기존의 규정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조세 관련 인센티브 중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소득공제(Investment Allowance)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2020. 3. 9. 공포된 「2020년 제16호 재무부 장관령」(PMK No. 16/PMK.010/2020 tentang PEMBERIAN FASILITAS PENGURANGAN PENGHASILAN NETO ATAS PENANAMAN MODAL BARU ATAU PERLUASAN USAHA PADA BIDANG USAHA TERTENTU YANG MERUPAKAN INDUSTRI PADAT KARYA)을 살펴보아야 한다.

3.5 조세 감면 (Tax Holiday)

▶ 감면의 대상 및 요건

선도 산업(Industri Pionir)에 새로운 투자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주된 사업 활동분야에서 수취 또는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때 새로운 투자(신규 투자)의 규모는 최소한 1천억 루피아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 감면 요건 |

1. 선도 산업에 해당할 것
2. 인도네시아법에 따른 법인일 것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규 투자 일것
 - a. 법인세 감면 또는 거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b. 소득세법 제31A조에 근거하여 법인세 혜택에 관한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c. 노동집약적 산업인 특정 사업 분야의 신규 투자 또는 사업 확장을 위한 당기순이익 감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및
 - d. 특별경제구역 내의 조세혜택 부여에 관한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최소 1천억 루피아 이상의 신규 투자 계획을 가질 것
5. 재무부 장관령으로 정하여 둔 법인세 계산 목적의 회사의 부채 및 자본 비율(4:1)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
6. 법인세 감면 결정이 있는 후, 1년 이내에 투자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선도 산업의 범위

선도 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 분야 및 생산 유형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세부사항은 투자부(BKPM) 규정에 따르는 하나, 선도 산업에는 다음과 같은 업종이 포함된다.

| 선도 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

1. 통합된 파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업스트림 철강 또는 비철강 금속산업
2. 석유, 가스정제 및 정련산업
3. 석유, 가스 및/또는 석탄에 기반한 석유화학산업
4. 농업, 임업에 기반한 유기 화학산업
5. 통합 또는 비통합의 무기 기초 화학산업
6. 제약 원재료산업
7. 방사선, 전기치료, 전기요법 장비 제조산업
8. 반도체 웨이퍼, 백라이트, 디스플레이와 같은 전자·컴퓨터통신장비 부품 제조산업
9. 기계 및 기계 주요 부품 제조산업
10. 기계 제조산업을 뒷받침하는 로봇틱스 부품 제조산업
11. 발전기계 주요 부품 제조산업
12. 차량 및 엔진 기반 차량의 주요 부품 제조산업
13. 선박 부품 제조산업
14. 기차 부품 제조산업
15. 항공기 및 항공산업 지원 영역 부품 제조산업
16. 농업, 펄프 생산 임업 생산물에 기반한 가공산업
17. 경제 관련 기반시설 산업
18. 데이터 관리, 호스팅 및 이와 연관된 활동을 포함하는 디지털 경제

선도 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나머지 법인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의 경우, 당해 투자자에 대한 평가 결과 그 투자자가 선도 산업 정량 기준 점수의 80 점 이상에 해당하고, 그 투자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선도 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 감면 혜택

신규 투자자 최소한 5천억 루피아 이상인 경우, 법인세의 100%가 면제된다. 이러한 법인세 100%의 면제 혜택의 기간은 신규 투자금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신규 투자금 규모에 따라 각 5년, 7년, 10년, 15년, 20년 동안 부여됨), 위 면제 혜택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최소한 5천억 루피아 이상의 신규 투자자에게는 그 기간 만료 이후에도 2년 동안 납부할 법인세의 50%의 감경 혜택이 제공된다.

신규 투자자가 1천억 루피아 이상에서 5천억 루피아 미만인 경우, 법인세의 50%가 감경된다. 이 경우, 법인세 감경기간은 일의적으로 5년이 부여된다. 위 면제 혜택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1천억 루피아 이상 5천억 루피아 미만 신규 투자자에게는 그 기간 만료 이후에도 2년 동안 납부할 법인세의 25%의 감경 혜택이 제공된다

▶ 감면 절차

신규 투자자의 법인세 감면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결정은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즉, 신규 투자자가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게 되면, 법인세 감면 요건의 충족 여부를 OSS 시스템을 통하여 신규 투자자(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그리고 OSS 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신규 투자자가 i) 투자 계획서상의 고정 자산 명세, ii) 부채 및 자본 비율에 대한 자료, iii) 모든 주주의 재정 증명서류를 신규 투자의 상업생산 개시 시점 이전에 OSS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면, 당해 신규 투자자에 대해서는 이미 법인세 감면 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서류의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OSS 시스템을 통하여 국세청장을 거쳐 재무부 장관에 신청서가 송부되고, 법인세 감면 신청이 재무부 장관에게 송부되었다는 사실 역시 OSS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통지된다.

법인세 감면 신청에 대한 승인은, 완비된 서류가 재무부 장관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되고, 승인권한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은 재무부 장관 명의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법인세 감면 결정의 취소

법인세의 감면 결정은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된다.

| 법인세 감면 결정 취소 요건 |

1. 현장조사 결과 신규 투자 실현액이 1천억 루피아 미만인 경우
2. 현장조사 결과 주요 사업활동 계획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3. 중고자본재를 수입 또는 구매하는 경우
다만, 중고자본재 전체가 재배치되는 경우로서 그 중고자본재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가 국가 전략계획의 수행 임무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4. 법인세 감면 혜택 기간 중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규 투자 실현 총액이 신규 투자 계획상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5. 신규 투자를 인도네시아 외로 이전하는 경우

3.6 투자소득공제 (Tax Allowance)

▶ 투자소득공제 요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에게는 투자소득공제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러한 투자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이전에 투자부장의 투자 승인 및 추천을 선행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 투자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투자 요건 |

1. 대규모 투자 법인 또는 수출 목적의 투자
2. 높은 수준의 고용 창출
3. 높은 수준의 국내 컨텐츠 사용

▶ 투자소득공제 혜택

재무부는 투자소득공제 혜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토지를 포함한 유형의 고정자산 형태의 투자에 대해 연간 5%씩, 6년간 총 투자금액의 30%까지 순이익에서 감경. 매년 5%씩 순이익 감경을 받는 것이므로 6년 동안 투자된 자산이 이전되지 않을 것이 요구됨.
- 감가상각 관련 가속상각 인정
- 외국인 주주에 대한 배당세는 10% 또는 조세협약에 따른 세율 중 보다 낮은 세율 적용 · 옴니버스법 제111조에 의한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일부 개정으로 i) 법인이 수령하는 인도네시아 국내 배당소득 및 ii) 개인이 수령하는 국내 배당소득을 일정기간 동안 전부 인도네시아에 재투자하는 경우, 국내 배당에 대해서는 비과세
-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 연장은 최대 10년까지 공제 가능

▶ 신청 절차 등

투자소득공제의 신청은 OSS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상업생산의 개시 이전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혜택의 부여가 가능하다. 또한, 투자소득공제의 신청은 투자자(납세자)가 사업고유번호(NIB)를 신청하는 시점 또는 OSS 시스템을 통하여 신규 사업허가를 발급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7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투자소득공제(Investment Allowance) 등

선도 산업(Industri Pionir)에 새로운 투자를 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설령 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도네시아 투자법,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 따른 조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과세대상 소득 계산 및 당해 연도 법인세 납부에 관한 행정부령에 따라 노동집약적인 산업 분야에서 신규 투자 또는 사업분야를 확장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요 사업활동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 유형고정자산 형태의 총 투자금액의 60%를 일정기간 동안 순이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관련 법령에 의한 납세의무자로서 특정 역량¹⁷⁾에 관하여 실무 교육 또는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목적으로 지출된 총 비용의 최대 200%까지 총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나아가 인도네시아 관련 법령에 의한 납세의무자로서 인도네시아 내에서 특정 연구·개발 활동¹⁸⁾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으로 지출된 총 비용의 최대 300%까지 일정기간 동안 총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7) 특정 역량이란 실무 교육 또는 전략적 교육을 통하여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노동의 효율성 달성 및 개별 산업에서 요구되는 노동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역량을 말한다.

18) 특정 연구·개발 활동이란 발명, 혁신, 신기술 획득 또는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행해지는 연구 및 개발 활동으로서 국가 경쟁력 향상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II. 투자 절차, 사업허가 및 청산

- 
1. 진출 형태
 2. 법인 설립
 3. 위험도 기반 사업허가
 4. 법인 청산

1. 진출 형태

1.1 법인

인도네시아 법령에 따른 법인의 형태와 사업 활동의 형태에는 여러가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내국인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협동조합, 합자회사, 합명회사, 주식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투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인도네시아 법에 기초한 주식회사(Perseroan Terbatas)의 형태로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법인의 형태로 진출함에 있어서는 크게 2가지 정도의 방식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첫째, 현지의 파트너(또는 파트너 회사)와 합작(Joint Venture)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식은 보통 합작 파트너로 참여하는 현지인 또는 현지 회사의 정보력, 유통망, 기존 고객군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하거나 정착하고자 할 때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합작 파트너와의 사이에서 지분 비율의 정도, 경영 참여의 정도 등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상 회사의 기관(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구조 구성과 관련하여서도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사전에 법률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합작 파트너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 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이러한 합작법인은 인도네시아법령상 외자투자(PMA) 회사로 분류되므로 i) 2021년 투자리스트 상의 투자 제한에 관한 규정(외국 투자자의 보유 지분 최대 한도), ii) 최소투자금액 및 최소자본금 요건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둘째, 사실상 단독으로 출자하여 단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단독으로 출자한 외국 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의 효율성이 합작법인에 비하여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 현지 사정에 정통하지 않거나 긴밀한 네트워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현지 파트너의 정보력, 유통망, 기존 고객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회사의 성공적 시장진입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상 단독으로 출자한다는 것이 인도네시아에 설립될 법인의 주주가 1인 주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외국 투자자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별로 2021년 투자리스트에 따른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지분율의 한도를 초과하여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상 외국인이 이 주주로 참여하게 되는 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이 필요하므로, 사실상 단독으로 출자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의 주주는 형식상으로 2인 이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1.2 대표사무소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주식회사의 설립을 통하여 직접 투자를 결정하기 이전에 대표사무소(Kantor Perwakilan: 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진출을 타진해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법령에 따른 대표사무소는 i) 일반 업종의 대표사무소(Kantor Perwakilan Perusahaan Asing; KPPA), ii) 외국 무역회사의 대표사무소(Kantor Perwakilan Perusahaan Perdagangan Asing; KP3A), iii) 인도네시아 건설업법에 따른 외국건설업자 대표사무소(Kantor Perwakilan Badan Usaha Jasa Konstruksi Asing; BUJKA)의 3가지로 구분된다.

▶ 일반 업종 대표사무소

인도네시아 투자부 규정(PerBKPM 6/2018)에 따르면, 일반 업종의 대표사무소는 외국에 있는 회사의 감독자, 연락담당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외국 본사 또는 그 계열사의 이해를 관리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표사무소는 직접적인 영업을 할 수 없고(수익 활동이 불가능하고 인보이스 발행도 불가),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마케팅 행위 등도 할 수 없으며, 단순한 시장조사, 정보수집 및 본사와의 연락 업무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투자부 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대표사무소의 기능을 외자투자 회사의 설립을 준비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표사무소의 주소지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당해 주(州)의 주도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 업종 대표사무소의 설립 신청 및 사업허가의 신청은 모두 OSS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투자부 공고 Pengumuman BKPM 24/Pengumuman/A.8/2019에 의할 때 사업자에게는 PDF 형태로 설립증서 등이 제공된다. 대표사무소의 설립을 신청 중에 있는 자는 OSS 사이트에 접속하여 설립 허가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 등 각종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 외국 무역회사 대표사무소

무역부 장관 규정(Permendag 10/2006)에 따르면, 무역회사 대표사무소의 본점과 지점은 SIUP3A라고 약칭되는 외국 무역회사 대표사무소 허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활동을 할 수 있다.

SIUP3A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 무역회사의 대표 등이 무역부 장관 규정의 첨부 1.에 첨부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SIUP3A를 취득하게 되면, 무역회사 대표사무소의 대표자는 회사등록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그 SIUP3A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무역회사 대표사무소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SIUP3A를 보유하는 경우, 무역회사 대표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 a. 외국회사에서 생산한 상품의 소개, 홍보
- b. 외국회사에서 생산한 상품의 사용 및 수입에 대한 정보 또는 지침을 제공
- c. 상품의 마케팅을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내의 시장조사, 인도네시아 내 판매 관리
- d. 외국회사가 인도네시아 기업에 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조건 등에 관한 정보 또는 지침을 제공
- e. 수출을 위하여 외국회사와 인도네시아 기업과 사이의 계약 체결을 대행

▶ 외국건설업자 대표사무소

인도네시아 건설업법(UU 2/2017) 및 관련 하위 법령(Permen PU 10/2014)에 따르면, 외국건설업자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국내건설업자와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 건설업법에서는 외국건설업자의 사업활동을 위한 형태를 아래와 같이 2가지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 건설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건설업자는 반드시 i) 외국건설업자 대표사무소, 또는 ii) 인도네시아 국내 건설업자와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건설업자가 인도네시아에서 별도로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법 규정에 따른 외국건설업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외국건설업자의 인도네시아 진출 형태와 관련하여서는 항을 바꾸어 별도로 설명하기로 한다.

1.3 건설업 분야 진출의 특수성

▶ 일반

건설업의 경우, 「2017년 제2호 인도네시아 건설업법」(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 TAHUN 2017 TENTANG JASA KONSTRUKSI, 이하 “건설업법”)에서 별도의 정함을 두고 있으므로, 일반 회사의 인도네시아 진출 및 투자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건설업법상 “건설업(Jasa Konstruksi)”이란 건설업무(건설공사) 및/또는 건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건설 컨설팅(Konsultansi Konstruksi)”이란 건축물 건축에 관한 분석, 계획(엔지니어링), 설계, 감리, 그리고 건설관리를 포함하는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므로, 건설업의 개념에는 건설 관련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 엔지니어링, 감리가 모두 포함된다.

외국 건설업자로서는 건설업자의 역량 및 능력에 대한 분류 및 자격을 인정하는 증명서에 해당하는 “건설업면허(Sertifikat Badan Usaha; SBU)”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건설업면허를 발급받기 위하여 반드시 건설업협회를 통하여 공공건설주택부 장관에게 발급신청을 하였어야 했으나, 옴니버스법에 의하여 인도네시아 건설업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앙정부의 인증 및 등록 절차를 거쳐 중앙정부가 건설업면허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건설업면허에는 i) 사업의 종류, ii) 사업의 성격, iii) 사업의 분류, iv) 사업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기재되므로, 외국 건설업자의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의 범위와 종류는 위 건설업면허에 명시된 사항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건설업법상 건설업자의 자격은 i) 소규모, ii) 중규모, iii) 대규모 건설업자로 분류되고, 이러한 자격 분류의 기준은 다음과 사항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 a. 연간 매출액
- b. 재정 능력
- c. 건설 인력의 가용성
- d. 건설 장비의 공급 능력

위와 같은 자격 분류를 바탕으로 각급 규모의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수행할 수 있는 참여 시장이 구분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대규모 건설업자는 i) 고위험도, ii) 고급 기술력, iii) 고비용이 소요되는 건설업 분야에서만 건설업을 수행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건설공사사업의 경우 도급금액이

1,000억 루피아 이상, 건설컨설팅업(설계, 엔지니어링 등)의 경우 도급금액이 100억 루피아 이상의 분야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 건설업 합작법인

인도네시아 건설업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 건설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인도네시아 국내 건설업자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즉, 인도네시아 국내 건설업자와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도록 강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외국 건설업자가 사실상 단독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단독 경영을 하면서 건설업에 진출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건설업법에 의하면, 건설업 합작법인은 반드시 대규모 건설업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외국 건설업자의 건설업 합작법인은 건설공사업 수행 시 도급금액이 1,000억 루피아 이상, 건설컨설팅업(설계, 엔지니어링 등) 수행 시 도급금액이 100억 루피아 이상의 고위험도/고급 기술력/고비용 건설업에만 종사할 수 있게 된다.

▶ 외국건설업자 대표사무소

외국건설업자 대표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a. 대규모 건설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업체의 형태를 갖추어야 함
- b. 외국건설업자의 대표사무소로서 대표사무소 허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c. 인도네시아 내에서 행하는 모든 건설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건설업 사업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국내건설업자와 컨소시엄(Kerjasama Operasi)의 형태로 활동하여야 함
- d. 외국 인력보다 인도네시아 인력을 많이 고용하여야 함
- e. 인도네시아 국적자 개인을 대표사무소의 대표로 두어야 함
- f. 인도네시아 국내의 건축자재 및 기술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g. 최첨단의 효율적이고 친환경 기술을 보유하여야 하고, 동시에 지역의 슬기로운 기술에도 주목하여야 함
- h. 기술이전을 이행하여야 함
- i. 제반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한편, 외국건설업자가 신규로 대표사무소의 설립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 a. 대표사무소 허가 신청서
- b.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려고 하는 외국건설업자가 위치한 국가의 공증인 또는 공인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외국건설업자의 정관
- c. 외국건설업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
- d. 외국건설업자가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이고 좋은 평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기재된 서류로서 인도네시아에 존재하는 당해 외국의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추천서
- e. 적법한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외국건설업자의 건설업허가 서류
- f. 건설업발전협회(Lembaga Pengembangan Jasa Konstruksi Tingkat Nasional)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Sertifikat Penyetaraan, 외국건설업자의 역량에 관한 증명서로서 Permen PU 10/2014 제1조 제9호에 정의된 것)
- g. 외국건설업자에 의하여 발급된 외국건설업자 대표사무소 대표에 관한 임명서
- h.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검증된 외국건설업자 본사의 자본에 관한 최신의 보고서
- i. 대표사무소 대표 후보자의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 j. 대표사무소 대표 후보자의 이력서
- k. 대표사무소가 소재하는 곳의 관할동장(Kelurahan)이 발행하는 소재증명서(surat keterangan domisili).
- l. 문서의 진실성 및 진정성에 관한 확인서
- m. 외국건설업자의 이사 또는 감사위원이 현재 인도네시아 내의 다른 건설업자의 이사 또는 감사위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서

외국건설업자의 대표사무소가 허가를 받게 되면, 그 허가에 관한 사항은 증명서의 형태로 제공되고, 그 증명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게 된다.

- a. 건설업자의 명칭
- b. 대표사무소 대표의 이름
- c. 외국건설업자의 주소와 연락처
- d. 대표사무소 허가의 유효기간
- e. 건설업의 종류

외국건설업자의 대표사무소는 3년 동안 유효하고, 그 대표사무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연장될 수 있다. 외국건설업자 대표사무소 연장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a. 대표사무소 허가가 만료된 후 늦어도 60일 이내에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것
- b. 연장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문서를 완벽하게 구비할 것
- c. 3년의 허가 유효기간 내에 최소한 1건의 건설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 d. 당해 연도에 관한 연간활동보고서를 늦어도 그 다음 해의 1월까지 제출하였을 것
- e. 기술팀(Tim Teknis)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추천을 얻을 것

한편, 외국건설업자의 신규 대표사무소 허가 신청, 대표사무소 연장 허가 신청, 대표사무소 허가 내용의 변경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의 인지대가 소요된다.

- a. 엔지니어링업/감리업의 경우에는 USD 5,000(미화 오천 달러)
- b. 건설공사업의 경우에는 USD 10,000(미화 일만 달러)

외국건설업자는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반드시 인도네시아 국내건설업자와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컨소시엄 형태의 활동은 준비시점부터 개시되어 건설활동 단계를 거쳐 건설공사의 완료시점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컨소시엄의 당사자들은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컨소시엄의 대상이 되는 인도네시아 국내건설업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 a.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을 것
- b. 주식의 100%를 인도네시아 국적자 개인, 국가, 지방정부, 인도네시아 사기업, 국가공기업 및/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고 있을 것
- c. 대규모 건설업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 d. 사업허가를 보유하고 있을 것

만약, 컨소시엄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국내건설업자가 위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관령(Permen PU 10/2014) 첨부5.에 첨부된 양식을 이용하여 대상으로 선정하여 줄 것에 관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장관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인도네시아 국내건설업자를 외국건설업자의 대표사무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승인하여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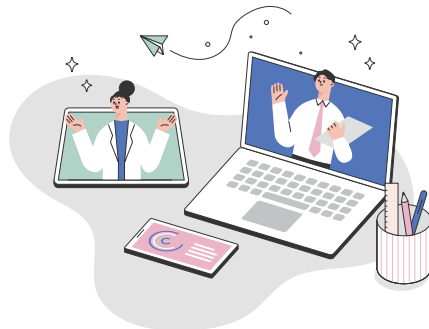
- a. 최소한 주식의 65%를 인도네시아 국적자 개인, 국가, 지방정부, 비영리재단, 인도네시아 사기업, 국가공기업 및/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고 있을 것
- b. 인도네시아 국내건설업자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이사 및 인사담당 이사를 인도네시아 국적자가 담당하고 있을 것
- c. 국내건설업자가 국내 건설업계의 생산공급망에 활력을 더하는 활동을 하였음이 입증될 것

외국건설업자의 대표사무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자격이 되지 아니하는 국내건설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경고의 제재를 받게 된다.

외국건설업자의 대표사무소는 오직 고위험도, 고급 기술력, 고비용이 소요되는 건설업무에 대해서만 건설업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비용이 소요되는 건설업무란 i)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최소 1,000억루피아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공사를 의미하고, ii) 엔지니어링, 설계 업무 및/또는 감리 업무에 있어서는 최소 100억 루피아 이상의 가치가 있는 업무를 의미한다.

건설공사 시공을 위한 외국 건설업자의 대표사무소와 내국 건설업자의 컨소시엄은 'i) 최소 공사금액 가치의 50% 이상의 공사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수행되는 공사일 것, 그리고 ii) 최소 공사금액 가치의 30% 이상의 공사가 인도네시아 국내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될 것'과 같은 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건설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업무를 위한 컨소시엄은 'i) 모든 엔지니어링 업무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수행되는 업무일 것, 그리고 ii) 최소 엔지니어링 업무금액 가치의 50% 이상의 업무가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링업자에 의하여 수행될 것'과 같은 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엔지니어링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2. 법인 설립

2.1 외자투자(PMA) 회사 설립 절차 개관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자투자의 형태는 투자법에 따라 반드시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UU 40/2007)에 따른 '주식회사(PT)'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상적으로 직접 투자 방식의 외자투자 회사의 설립 기간은 통상적으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다만, 이는 기본 절차를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고,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체류허가, 취업허가, 개인 NPWP 등 각종 후속 절차가 요구되므로, 실제로 법인 설립 후 실질적인 운영의 개시까지는 추가로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품 등의 생산을 위한 제조법인의 경우, UKL-UPL로 약칭되는 “환경모니터링 및 환경관리노력(Upaya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dan Upaya Pemantauan Lingkungan Hidup)”, Amdal로 약칭되는 “환경영향평가(Analisis Mengenai Dampak Lingkungan Hidup)”, RKL로 약칭되는 “환경모니터링계획(Rencana Pemantauan Lingkungan Hidup)”, “환경관리 및 모니터링 서약(SPPL)”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추가로 2~3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PMA 회사의 설립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 PMA 회사의 설립 절차 개관 |

- 2021년 투자리스트 확인하여 사업 영역 체크
 - 개방 분야 여부 및 외국인 최대 지분율 등 확인 / 업종의 종류 확인 등을 위하여 BKPM 초기 상담
- 회사의 상호명 확보
 - 법무인권부 등록 절차 진행 전 반드시 상호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PMA 회사의 설립 증서 및 회사 정관 초안 작성
 - 공증인(Notaris)를 통하여 반드시 AKTA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함
- 법무인권부 AHU Online 사이트 통하여 등록 및 관보에 공시
 - 개정 주식회사법에 의하여 AHU Online에 등록 및 등록증명서 발급받은 시점에 법인격 취득
- OSS 시스템에 사업자 계정 생성, 활성화 및 데이터 입력
 - <http://oss.go.id>
- 사업자고유번호(Nomor Induk Berusaha: NIB) 발급
 - 사업자가 OSS 시스템에 등록을 행한 후에 OSS 기관에 의하여 발급되는 사업자의 고유번호
 - NIB가 수입허가등록번호(API-U), 세관고유번호(NIK), 회사등록번호(TDP)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
- 납세자번호(Nomor Pokok Wajib Pajak: NPWP) 발급 및 부가세 납세자번호(NPPKP)호 발급
 - 납세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실현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신분 또는 신원으로서 사용되는 수단

- 은행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
 - 외자투자의 경우, 기존 투자부 규정(Per BKPM 5/2019)에 따라 i) 토지 및 건물의 가치를 제외하고 100억 루피아 이상의 투자를 하여야 하고, ii) 회사의 발행자본 및 납입자본은 최소한 25억 루피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 그러나, 2021년 신규 투자부 규정인 PerBKPM 4/2021에 따라 외자투자(PMA)에 대해서는 최소 투자금 및 최소 자본금 규정이 신설되어, 새로 설립되는 외자투자 회사의 경우 최소 자본금 100억 루피아가 필요하다.
- OSS 시스템 통하여 위험도에 따른 표준인증서 또는 사업허가(미유효, 일시적 허가) 등 발급
 - 사업 위험도에 따라 NIB+표준인증서 / NIB+사업허가
 - 사업의 종류에 따라 UKL-UPL, Amdal, RKL, SPPL 등 사업허가를 발급받기 위한 전제사항 이행 필요
- 투자이행보고 및 협약사항 등 OSS 업로드
 - 사업자가 OSS 시스템 협약사항 준수를 결과를 업로드

2.2 2021년 투자리스트 체크 및 사업 업종 확정

인도네시아에서 외자투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립할 회사의 업종과 영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사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외자투자 회사의 설립의 경우에는 내자투자 회사와 달리 최소 투자금, 최소 자본금 등의 규제가 있고, 또한 영위하고자 업종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투자 요건과 금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나아가 2021년 투자리스트의 마련으로 외자투자에 대한 개방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업종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취득할 수 있는 지분(주식)의 최대한도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는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KBLI를 확정 및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3 회사 상호명 확보

법인 설립의 초기단계에서 회사의 상호(회사명)를 조회 및 결정하여야 한다. 설립될 법인의 명칭이 인도네시아 법령상 사용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법무인권부에 신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위 상호 사용을 위한 절차는 통상적으로 인도네시아 공증인(Notaris)을 통하여 조회 및 진행된다. 상호 확인 행위는 발기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할 수도 있으나, 그 업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인에게만 위임할 수 있을 뿐이므로, 실무적으로 외자투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회사의 상호 앞에는 반드시 “Perseroan Terbatas” 또는 줄여서 “PT”라고 기재된 문구가 붙게 된다.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의미있는 3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호는 사용이 금지된다.

- a. 다른 회사에 의하여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상호
- b. 다른 회사의 상호와 그 핵심에 있어서 동일한 상호
- c. 공공질서 및/또는 도덕에 반하는 상호
- d. 국가 기관, 정부 기관 또는 국제 기구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
- e. 회사의 목적, 그리고 사업 활동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호
- f. 상호 자체가 없이도 회사의 의도와 목적을 나타내는 상호
- g. 기호 또는 기호의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호
- h. 무의미한 알파벳의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호

2.4 회사 설립증서 및 정관

회사는 공증인이 작성한 인도네시아어로 된 설립증서 및 2인 이상의 주주에 의하여 설립된다.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상 100% 인도네시아 국유회사, 마을소유기업, 영세 및 소기업 등의 경우 1인 주주에 의한 회사 설립도 가능하지만, 외자투자 회사는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에 속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기업’으로 분류되므로 1인 주주에 의한 설립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

위 회사 설립을 위한 설립증서는 ‘정관’ 및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기타 설명사항’으로 구성되는데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 a. 회사의 명칭과 주사무소 위치
- b. 사업 목적, 회사의 사업분야
- c. 회사의 존속기간
- d. 수권자본, 발행자본 및 납입자본의 규모
- e. 주식의 수, 수종의株式이 있는 경우에는 종류주식, 주식에 부여된 권리들, 그리고 개개의 주식의 액면가
- f. 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수 및 그 담당자 이름
- g. 주주총회의 개최 방법과 절차, 개최 장소

h.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변경 및 해임 방법과 절차

i. 이익잉여금의 이용 방법 및 배당금의 배당 방법과 절차

그리고, ‘기타 설명사항’에는 적어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회사 발기인의 이름, 태어난 장소와 생일, 직업, 주소 및 국적, 또는 회사가 발기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및 주소, 법인격의 승인에 관한 장관의 결정을 받은 날과 그 번호
- b. 최초로 임명되는 이사(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감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정확한 이름, 태어난 장소와 생일, 직업, 주소 및 국적
- c. 주식의 일부를 이미 취득한 주주의 이름, 주식 수의 세부사항, 그리고 기발행 및 기납입된 주식의 액면가

이러한 설립을 위한 설립증서는 반드시 공증인에 의하여 작성 및 공증될 것이 요구되고, 개정 주식회사법(옴니버스법에 의하여 일부 개정)에 따라, 위 설립증서를 AHU Online에 등록한 이후 등록증명서(구 주식회사법상 법인격 승인결정서)를 발급받는 시점에 법률적으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된다.

참고로, 회사가 아직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발기인은 향후 법인격을 취득할 회사를 위하여 발기인의 명의로 계약체결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때 발기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가 향후 설립된 회사의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해 회사의 법인격을 취득한 후 반드시 늦어도 6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발기인의 명의로 행해진 법률행위를 회사가 인수 또는 수용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 회사 설립시 필요한 주요 서류 |

1. 주주 관련 서류 (2인 이상의 주주)
 - a. 주주가 법인인 경우
 - 회사 사업자등록증 영문 사본
 - 회사 영문 정관 사본(영문 번역 공증)
 - 회사 대표이사의 여권 사본
 - 회사 대표이사의 영문 자택 주소
 - 회사 이메일 주소
 - b. 주주가 개인인 경우
 - 개인의 여권 사본
 - 영문 자택 주소
 - 이메일 주소
 - 연락처

2.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관련

- 이사 또는 감사가 될 자의 여권 사진
- 이사 또는 감사가 될 자의 영문 자택 주소
- 이메일 주소
- 연락처

3. 자본금 납입 약서, 위임장(회사 설립증서 서명 등 목적) 등

2.5 OSS 시스템 사업자 계정 활성화, 데이터 등록, NIB 발급

OSS 시스템 사이트(<https://app.oss.go.id/app/#>)에 OSS 절차 진행을 위한 사업자 계정을 우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외자투자 회사의 주주로 참여할 자의 KTP 또는 여권번호, 여권상 이름, 여권 발급국가, 성별, 생년월일, 국적, 소속 회사, 출생 장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계정을 활성화할 수 있다.

| OSS 시스템 등록을 위한 계정 활성화 팝업창 |

*) = Elemen Wajib di isi

Jenis Identitas *)

Kartu Tanda Penduduk (KTP)

Nomor Induk Kependudukan (NIK) *)

Nomor Induk Kependudukan (NIK)

Isikan Nomor identitas dari salah satu penanggung jawab yang tercantum dalam akta (untuk jenis pelaku usaha non perseorangan)

Negara Asal *)

(+62) - Indonesia

Tanggal Lahir *)

tanggal-bulan-tahun

Format : dd-mm-yyyy

Nomor Telepon Selular *)

Nomor HP (tanpa 0 di depan)

Contoh : 085712345678 menjadi 85712345678

Alamat e-mail *)

Alamat e-mail

Pastikan alamat email anda dapat menerima segala notifikasi dari sistem OSS

*) = Elemen Wajib di isi

Jenis Identitas *)

Paspor

Nomor Paspor *)

Nomor Paspor

Isikan Nomor identitas dari salah satu penanggung jawab yang tercantum dalam akta (untuk jenis pelaku usaha non perseorangan)

Nama (sesuai paspor) *)

Nama (sesuai paspor)

Negara Penerbit Paspor *)

Tanggal Pengeluaran *)

tanggal-bulan-tahun

Format : dd-mm-yyyy

Tanggal Expired (Paspor) *)

tanggal-bulan-tahun

Format : dd-mm-yyyy

Kantor *)

Jenis Kelamin *)

Tempat Lahir *)

Tanggal Lahir *)

tanggal-bulan-tahun

Format : dd-mm-yyyy

Nomor Telepon Selular *)

Nomor Handphone

Contoh : 085712345678 menjadi 85712345678

Alamat e-mail *)

Alamat e-mail

Pastikan alamat email anda dapat menerima segala notifikasi dari sistem OSS

NIB란 사업자가 OSS 시스템에 등록을 행한 후에 OSS 기관에 의하여 발급되는 사업자의 신원(정체, 신분)이 되는 번호로서, 다음을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 a. 수입 식별 번호에 관한 법령에 언급된 수입 식별 번호(API-U 또는 API-P)
- b. 세관 분야의 법률에 규정된 세관 번호
- c.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 등 가입을 위한 번호
- d. 사업자의 인력사용 관련 의무보고를 위한 번호

NIB 발급을 위한 신청시, 사업자는 반드시 OSS 시스템에 i) 사업자 또는 사업체(회사)에 관한 데이터 및 ii) 사업활동 일반계획 데이터를 완비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 NIB 발급을 위하여 입력하여야 하는 데이터 |

1. 사업자 데이터
 - a. 개인사업자의 경우(참고용)
 - 이름 및 NIK(주민고유번호)
 - 개인 NPWP
 - 자본조달계획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b. 사업체의 데이터
 - 회사의 명칭
 - 회사의 종류
 - 투자 상황
 - 회사 설립증서 및 법무부가 발급한 설립 승인(등록)번호
 - 회사의 주소
 - 투자 계획의 규모
 - 회사의 주주 및 회사의 기관(이사, 감사)에 관한 정보
 - 투자자의 출신 국가
 - 회사의 사업 목적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회사의 NPWP
2. 사업활동 일반계획
 - KBLI에 부합하는 사업영역 데이터
 - 회사 사업장 위치(사업장 주소, 사용 토지 면적, 보유하는 토지 권리의 종류, 위치 좌표, 건물에 대한 소유 및 임대 여부, 건물이 있는 경우 층수 및 총 면적)
 - 세관 접근 번호
 - API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인력 사용 관련 보고현황

위와 같이 사업자에 관한 데이터 및 사업활동 일반계획 데이터가 입력되면 OSS 시스템을 통하여 NIB가 발급된다.

2.6 NPWP 발급

NPWP로 약칭되는 “납세의무번호(Nomor Pokok Wajib Pajak)”란 납세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실현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신분 또는 신원으로서 사용되는 수단으로서,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되는 번호이다.

회사 NPWP의 신청은 인도네시아 국세청 사이트(<https://www.pajak.go.id/>)를 방문하여 전자 등록 시스템 메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계정의 생성 및 검증 과정을 통하여 로그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그 이후 납세자 데이터 등록 페이지로 이동하여 온라인으로 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온라인 신청 및 등록 화면 |

Formulir Registrasi Data WP

1 Pendaftaran 2 Identitas Wajib Pajak 3 Cont. Identitas Wajib Pajak 4 Daftar Pengurus/Penanam Modal 5 Identitas Penanggung Jawab 6 Lampiran 7 Pernyataan 8 PP23

Pendaftaran

Kategori ☒ 1. Badan

Status Pusat/Cabang ☒ Pusat ☐ Cabang

NPWP Pusat

Simpan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의 NPWP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 회사 NPWP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

1. 법인 설립 관련 자료
 - a. 법인 설립증서 및 설립번호
 - b. 현지 설립된 법인에 대한 외국회사 본사의 임명서
2. 법인의 기관(이사, 감사)에 대한 신원 관련 서류
 - a. WNI(인도네시아 국적자 개인)의 경우 개인 NPWP 사본
 - b. WNA(외국인 개인)의 경우, 여권 사본 또는 개인 NPWP 사본

2.7 부가세 납세자번호 발급

NPWP 이외에도 법인 설립 주소지 관할 세무관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업자(Pengusaha Kena Pajak)로서 부가세 납세자번호(Nomor Pengukuhan Pengusaha Kena Pajak)를 발급받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NPWP 발급을 받았으나 부가세 과세업자(PKP)로서 등록 및 납세자번호를 발급받지 않으면 과세업자 등록 이전에 발생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과 상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부가세 과세업자로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 설비 등을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불한 경우, 부가세 납세자번호 발급 이전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입부가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반드시 부가세 납세자번호를 발급받아 환급 또는 매출부가세와 상계처리를 하여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 부가세 납세자번호 발급 신청서 샘플 |

D. FORMULIR PENGUKUHAN PENGUSAHA KENA PAJAK

KEMENTERIA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DIREKTORAT JENDERAL PAJAK FORMULIR PENGUKUHAN PENGUSAHA KENA PAJAK	
SEMUA INFORMASI HARAP DIISI DENGAN HURUF KAPITAL/CETAK. Isi atas form sesuai dengan jenis perusahaan yang sesuai. (Isi dari perusahaan)	
Jenis Pengukuhan: ☐ Pemohonan Wajib Pajak ☐ Pengukuhan Secara Juhatan Nomor LRP/LRP: _____	
Kategori: ☐ 1. Badan ☐ 1.a. Pusat ☐ 1.b. Cabang ☐ 2. Orang Pribadi ☐ 2.a. Pusat ☐ 2.b. Cabang ☐ 2.c. Orang Pribadi Pengusaha Tertentu ☐ 3. Joint Operation (JO) ☐ 3.a. Pusat ☐ 3.b. Cabang	NPWP: _____
A. IDENTITAS WAJIB PAJAK	
1. Nama Wajib Pajak _____	
Gelar Depan _____ Gelar Belakang _____	
2. Jenis Usaha / Kegiatan _____ KLU _____ (atau oleh petugas)	
3. Merek Dagang/Usaha _____	
4. Alamat tempat kegiatan usaha: Jalan _____	
Hub: _____ Isi: _____ RT/RW: _____ / _____ Kelurahan/Desa: _____ Kecamatan: _____ Kota/Kabupaten: _____ Provinsi: _____ Kode Pos: _____ Nomor Telepon: _____ No. Ponsel _____ Nomor Handphone: _____ E-mail: _____	
5. Status kepemilikan tempat kegiatan usaha: ☐ Milik Pribadi/Perusahaan ☐ Sewa/Kontrak ☐ Lain-lain (jelaskan): _____	
6. Identitas Pimpinan/Pesanggang Jember : (Jember WP Badan)	
Nama: _____ Jabatan: _____ Kebangsaan: ☐ Indonesia NIK: _____ ☐ Asing Negeri Asal: _____ No. Paspor: _____ NPWP: _____	

2.8 계좌개설 및 자본금 납입

인도네시아의 경우, 루피아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이 설립된 상태이어야 하고 통상 은행은 계좌 개설을 위하여 다음의 서류 등을 요구한다.

| 계좌 개설을 위하여 준비할 서류 및 자료 |

1. 사업자고유번호(NIB)
2. 회사의 설립증서 및 정관
3. 사업소재지증명서(Surat Keterangan Domisili Perusahaan)
4. 납세의무번호(NPWP)
5. 대표자의 여권 및 제한적 거주허가(ITAS)
6. 위임의 경우, 공증된 위임장 및 수입자의 신분증

법인 설립증서를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에 제출한 후 법무인권부로부터 등록증명서를 발급받는 시점에 법률적으로 법인격을 취득하나, 그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본금 납입에 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은행의 계좌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출자 상태가 기재된 재무 제표나 출자확인 각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옴니버스법 제109조에 의하여 일부 개정된 인도네시아 식회사법을 통하여 수권자본금에 관한 규정이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외자투자 법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투자부 규정에 따라 최소 투자금 및 최소 자본금에 대한 규제가 존재한다.

“위험도 기반 사업허가제도 및 투자혜택 절차의 지침에 관한 투자부 규정(PerBKPM 4/2021)”이 신설되기 이전의 기존 규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법상 PMA 회사(인도네시아법상 대기업으로 간주됨)는 i) 토지 및 건물의 가치를 제외하고 100억 루피아 이상의 투자를 하여야 하고, ii) 회사의 발행자본 및 납입자본은 최소한 25억 루피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규정 하에서 법인 설립시 원시정관의 수권자본의 규모를 얼마로 설정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는데, 실무에서는 25억 루피아로 설정하여 두고 발행자본 및 납입자본의 규모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PerBKPM 4/2021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적어도 신규로 설립되는 외자투자 법인의 경우, 최소 투자금은 KBLI 5자리 번호에 해당하는 하나의 사업당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100억 루피아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자본금 역시 발행자본/납입자본금 기준 100억 루피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대규모 무역사업, 식음료 서비스 사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업의 경우 최소 투자금의 규정에 대한 예외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사전에 예외 규정을 잘 파악하여 둘 필요가 있다.

자본금을 가장납입하는 경우, 각종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되고, 회사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 위험도 기반 사업허가

3.1 위험도 기반 사업허가 발급 제도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활동(상행위)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 사업활동을 위한 기본조건 및 ii) 사업의 위험도 분류에 따른 사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옴니버스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사업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는 서류의 종류와 내용이 구분되게 되었다. 옴니버스법에서는 사업활동을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i) 저위험도 사업활동, ii) 중저위험도 사업활동 및 중고위험도 사업활동, iii) 고위험도 사업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때, 사업활동의 위험성 구분은 i) 위험도 평가 및 ii) 잠재적 위험도를 감안하여 결정된다.

위험도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지표에는 i) 보건, ii) 안전, iii) 환경, iv) 자원 활용 및 관리가 있고, 그와 더불어 사업의 종류, 사업활동의 기준, 사업의 위치, 한정된 자원, 변동성과 같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게 된다.

잠재적 위험도는 위험의 발생가능성의 정도를 i) 발생이 거의 불가능함, ii) 발생 가능성이 낮음, iii) 미약한 가능성 있음, iv) 거의 확실하게 발생할 것 같음의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게 된다.

| 사업 위험도에 따른 사업허가제도의 구분 |

- ☑ 저위험도 사업
 - NIB(사업고유번호)의 발급으로 충분
- ☑ 중저위험도 사업
 - NIB(사업고유번호)
 - 표준인증서(추가 검증 불요, 사업자의 진술만으로 충분)
- ☑ 중고위험도 사업
 - NIB(사업고유번호)
 - 표준인증서(추가 검증이 필요함)
- ☑ 고위험도 사업
 - NIB(사업고유번호)
 - 별도의 사업허가 취득이 필요함

3.2 사업허가 발급기관 및 주체

사업허가의 발급기관에는 i) OSS 기관, ii) 주(州)정부 통합서비스투자부서, iii) 시/군 통합서비스 투자부서, iv) 특별경제구역(KEK) 관리청, v) 자유무역 및 자유항 구역(KPPBP) 관리청이 있고,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업종 및 종류에 따라 발급기관이 구분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3.3 사업개시를 위한 사업활동 기본조건의 내용

사업활동의 기본조건에는 i) 공간사용 활동의 적합성, ii) 환경 승인, iii) 건물의 신축, 개축, 확장 등을 위한 허가인 '건축승인서(Persetujuan Bangunan Gedung; PBG)' 및 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건물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인 '건물기능인증서(Sertifikat Laik Fungsi Bangunan Gedung; SLF)'이 포함된다.

다시 '환경 승인'에는 i) Amdal로 약칭되는 "환경영향평가(Analisis Mengenai Dampak Lingkungan Hidup)", ii) UKL-UPL로 약칭되는 "환경모니터링 및 환경관리노력(Upaya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dan Upaya Pemantauan Lingkungan Hidup)", iii) SPPL로 약칭되는 "환경관리 및 모니터링 서약(Surat Pernyataan Kesanggupan Pengelolaan dan

Pemantauan Lingkungan Hidup)”이 포함된다.

모든 사업활동에 있어서 Amdal, UKL-UPL 및 SPPL과 같은 환경 승인이 전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생활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Amdal로 약칭되는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할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UKL-UPL로 약칭되는 ‘환경모니터링 및 환경관리노력’을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업활동에 UKL-UPL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활동의 기본조건으로 SPPL로 약칭되는 ‘환경관리 및 모니터링 서약’을 제출하게 된다.

위와 같은 Amdal, UKL-UPL 및 SPPL의 제출은 모두 OSS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Amdal, UKL-UPL 및 SPPL이 필요한 사업 및/또는 활동에 대해서는 제반 관련 법령의 규정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4 사업개시를 위한 위험도에 따른 사업허가의 내용

▶ 저위험도 사업활동

저위험도 사업활동의 경우, NIB로 약칭되는 “사업고유번호(Nomor Induk Berusaha)”를 발급받는 것으로 사업허가 취득 절차가 마무리된다. 다만, 저위험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OSS 시스템으로 환경을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진술서가 제출되면, SPPL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이러한 내용은 NIB 발급시 NIB에 포함되어 있으며, 위 NIB가 SPPL로서도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NIB가 발급되면, 사업활동의 준비, 사업의 운영 및 상업적 생산 등 모든 활동을 적법하게 할 수 있다.

▶ 중저위험도 사업활동

중위험도 사업활동은 다시 i) 중저위험도 사업활동, ii) 중고위험도 사업활동으로 구분된다. 중저위험도 사업활동의 경우, i) NIB 발급 및 ii) 표준인증서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된다. 중고위험도 사업활동의 경우, i) NIB 발급 및 ii) 사업자의 사업활동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발급한 표준인증서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된다.

중저위험도 사업활동의 경우에는 UKL-UPL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활동과 SPPL만의 제출로도 충분한 사업활동으로 구분되는데 각 요건이 충족되면, NIB 이외에 표준인증서가 OSS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발급된다. 위 NIB와 표준인증서는 별도의 추가적 검증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NIB 이외에 표준인증서가 OSS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발급되면, 사업활동의 준비, 사업의 운영 및 상업적 생산 등 모든 활동을 적법하게 할 수 있다.

▶ 중고위험도 사업활동

중고위험도 사업활동의 경우 UKL-UPL을 제출하여야 사업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며, 향후 중앙 정부 등 허가기관의 검증을 전제로 하여 NIB와 비검증된 상태의 표준인증서가 발급된다. 다만, 이러한 NIB와 비검증 상태의 표준인증서가 있으면 사업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행위는 할 수 있다. 비검증된 상태의 NIB와 표준인증서의 검증을 위한 절차는 사업자에 의하여 운영/생산의 개시 90일 전까지 이행되어야 한다.

검증절차가 완료되어 표준인증서가 검증된 상태에 있게 되면, 그 이후부터 사업의 운영 및 상업적 생산활동을 적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 고위험도 사업활동

고위험도 사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NIB 이외에도 반드시 운영 및/또는 상업 활동을 위한 별도의 ‘허가’를 보유하여야 한다. 고위험도 사업활동의 경우, 필수적인 Amdal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과 UKL-UPL 의무로 충분한 사업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Amdal 의무 및 UKL-UPL 의무의 각 이행 절차는 모두 OSS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NIB만 발급된 상태에서는 사업의 준비활동만을 할 수 있고, 별도의 허가가 발급된 이후에야 비로소 사업의 운영 및 상업적 생산활동을 적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4. 법인 청산

4.1 법인의 해산, 청산 및 법인격 소멸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사유로든 법인에 대한 해산이 있게 되면, 법인에 대한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청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법인격은 여전히 존속하게 된다. 해산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청산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 때에 비로소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되어 당해 회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한편, 법인의 해산이 있게 되면, 그 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청산절차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이름 뒤에는 반드시 “청산 중”이라는 표시가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4.2 법인의 해산 사유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는 주식회사의 형태로만 가능한데, 회사의 해산은 다음의 경우에 발생한다.

| 주식회사의 해산사유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

1. 주주총회의 결의
 - 이사회, 감사위원회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대표하는 1인 이상의 주주는 주주총회에 회사 해산에 관한 의제 제안 가능
 -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3/4 이상의 참석(대리 참석 포함)으로 개의하고, 투표된 총 주식수의 3/4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해산결의가 적법하게 됨
2. 정관에 규정된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 별도의 결의 없이도, 정관상 회사의 존속기간 만료 시점에 당연 해산

3. 법원의 회사에 대한 해산 결정이 있는 경우

- 회사가 공익을 위반하거나 또는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검사의 해산 신청이 있는 경우
- 회사 설립증서에 법적 결함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의 해산 신청이 있는 경우
- 회사가 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주주,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해산 신청이 있는 경우
- 법원은 회사의 해산 결정시 청산인 지정 가능

4. 파산재단이 파산비용을 지불하기에 부족한 경우로서, 확정력 있는 상업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선고가 취소된 경우

5. 파산재단이 이미 「파산 및 채무변제 유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회사의 사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청산되어야 하는 경우 (예, 은행업, 보험업 등 금융업)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로 회사의 해산이 발생하고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청산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의 이사회의 구성원이 청산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만약,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청산인 선임의 결의하게 되면, 그 선임된 청산인이 청산 중에 있는 회사(“청산회사”)의 청산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4.3 회사의 청산 개시 및 청산 절차

회사가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인은 반드시 i) 일간지와 관보에 회사의 해산을 공고하여, 모든 채권자들에게 회사의 해산 사실을 알려야 할 뿐만 아니라 ii) 회사등기부에도 “청산 중”이라는 사실이 기재되도록 법무인권부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 해산 공고시 필수 포함 사항 |

1. 회사의 해산 및 해산의 법적 근거
2. 청산인의 이름과 주소
3.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사에 신고하는 방법
4. 채권신고 기간(해산 공고 후 60일)

청산인은 청산회사의 자산을 정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구체적으로 i) 청산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파악, ii) 청산 자산의 분배 계획에 대한 공고, iii)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iv) 청산 잔여 재산을 주주에게 배분, v) 자산의 정리에 필요한 기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인은 반드시 회사의 파산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청산 자산의 분배 계획에 대한 공고가 있게 되면, 채권자는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늦어도 60일 이내에 청산 재산 분배 계획에 관하여 청산인에게 이익을 제기할 수 있다. 청산인이 위 채권자의 이익제기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그 이익제기가 거부된 날로부터 늦어도 6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권신고 기간 내에 청산인에게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청산인이 그 채권의 인정을 거부한 경우, 채권자는 그 거부된 날로부터 늦어도 6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채권자가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당해 채권자는 회사의 해산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청구가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경우, 그 채권자의 채권은 주주를 위하여 남겨진 청산 재산 잔여분에서 집행될 수 있다. 만약, 청산 재산 잔여분이 이미 주주에게 배분된 이후에 위 청구가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경우, 청산인은 주주에게 이미 배분된 청산 재산 잔여분을 회수하여 정당한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여 재산을 분배받은 주주는 위 채권자의 채권액과 관련하여, 자신이 분배받은 잔여 재산액에 비례하여 청산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청산 절차가 종결되면, 반드시 법무인권부 장관에게 청산 종결을 통지하여야 하고 일간지에 청산의 절차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이후 법무인권부 장관이 회사 법인격의 소멸을 기재하고 회사등록부에서 회사의 상호를 말소한 후, 회사의 법인격 소멸 사실을 공고하면 회사는 완전히 소멸되게 된다.

위와 같은 청산 절차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청산 절차 요약 |

1. 해산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또는 각종의 해산 사유)
2. 일간지 및 관보 해산 공고
3. 법무인권부 해산 사실 신고
4. 사업허가 등 말소 신고

5. 세무서의 세무조사
6. 납세등록증 말소
7. 잔여재산 등 분배
8. 청산 공고
9. 법무인권부 법인격 소멸 공고

4.4 청산 소요기간 및 비용

회사의 해산결의부터 청산 완료시까지의 통상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다만, 위 2년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청산사무 종결시까지 2년 이상의 기간의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청산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납세등록증의 말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회사에 대한 납세등록 말소 신청의 경우, 조세당국은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 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므로 세무서의 세무조사의 완료 및 납세등록증 말소 기간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못한 채권자가 회사의 해산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채권의 존재 사실 및 변제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해 회사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할 경우, 청산절차의 종결시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산시 소요되는 비용은 청산회사의 규모, 이해관계자의 정도, 상업활동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책정하기는 어려우나, 법무법인 등에 청산사무를 위임한다는 전제 하에 대략 미화 6만 달러 내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4.5 청산시 유의점

회사의 청산은 회사의 폐업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 경우 회사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다. 회사의 폐업은 반드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흑자인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회사의 자본잠식이나 적자 등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한 폐업의 경우, 근로관계 해지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각종 보상금의 규모가

다르다¹⁹⁾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근로관계의 해지시 사용자의 보상금 지급 의무 및 규모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노동법령에 규정된 보상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별도의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두었다하더라도, 그러한 합의서는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청산절차의 종결시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산회사와 관련된 모회사나 담당자 등 관계자들은 청산종결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간헐적으로 장기간 동안 청산업무를 진행하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여유를 가지고 청산사무에 임하여야 한다.



19) 회사의 손해에 기인한 폐업의 경우, 해고보상금의 0.5배, 근속보상금 1배, 대체보상금 1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반면, 회사의 손해에 기인하지 아니한 폐업의 경우, 해고보상금의 1배, 근속보상금 1배, 대체보상금 1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 투자실무가이드



III. 인도네시아 비관세 장벽

1. 인도네시아 표준인증(SNI)
2.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청(BPOM) 인증
3. 인도네시아 할랄(HALAL) 인증
4. 인도네시아 국산부품사용(TKDN) 제도

1. 인도네시아 표준인증(SNI)

1.1 인도네시아 표준인증 제도 일반

“SNI”로 약칭되는 인도네시아 표준인증(Standar Nasional Indonesia)이란 안전, 보안, 보건, 환경, 과학기술 발전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규격과 생산 과정에 관한 기술 요구사항 또는 표준화된 절차를 말한다. 표준인증제도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규격을 마련하여 유해한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유통을 근절시킴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제품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2014년 제20호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4 TENTANG STANDARDISASI DAN PENILAIAN KESESUAIAN)을 근간으로 하여 규율되고 있다.

표준인증에는 의무적인 인증과 자발적인 인증 품목으로 구분되는데, 의무적인 SNI 인증제도의 경우 해외 저가 제품이나 비인증 제품 등의 유통 등을 금지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비관세 무역장벽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1.2 의무적인 SNI 인증

한편, 2021년 현재 인도네시아 표준인증을 받은 품목은 11,298개²⁰⁾에 이르고 있고, 이 중 205개²¹⁾의 항목이 의무적인 SNI 인증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각 의무 SNI 항목에 관하여는 개별 장관령 또는 개별 장관 결정사항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전거 제품에 관한 항목은 「2018년 제30호 의무적인 자전거 표준 인증에 관한 산업부장관령」(Peraturan Menteri Perindustrian No. 30 tahun 2018 tentang Pemberlakuan Standar Nasional Indonesia sepeda roda dua secara wajib)에 의하여 규율된다.

20) [https://bsn.go.id/uploads/download/statistik_sni_juni_2021_\(1\).pdf](https://bsn.go.id/uploads/download/statistik_sni_juni_2021_(1).pdf)

21) <https://bsn.go.id/main/download/>

| 의무적인 SNI 항목 예시 |

No	Nomor SNI	Judul SNI	Peraturan Pemberlakuan	Instansi Teknis
125	SNI 01-3140.1-2001	Gula kristal mentah (raw sugar)	Keputusan Menteri Pertanian No.03/Kpts/KB.410/1/2003	Kementerian Pertanian
126	SNI 3140.3:2010 Amd/1:2011	Gula kristal putih		Kementerian Pertanian
127	SNI 03-7097-2005	Peralatan komunikasi darat udara berfrekuensi amat tinggi (VHF-AIR Ground) di bandar udara	Peraturan Menteri Perhubungan No.KM. 27 Tahun 2005	Kementerian Perhubungan
128	SNI 8222:2016	Sarden dan makarel dalam kemasan kaleng	Peraturan Menteri KKP 58/PERMEN-KP/2016	Kementerian KKP
129	SNI 8223:2016	Tuna dalam kemasan kaleng		Kementerian KKP
130	SNI 2973:2011	Biskuit	Peraturan Menteri Perindustrian Republik Indonesia Nomor 96/M-IND/PER/11/2015	Kementerian Perindustrian
131	SNI 6729:2010	Sistem pangan organik	Peraturan Menteri Pertanian No. 64/Permentan/OT.140/5/2013	Kementerian Pertanian

의무적인 SNI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과 관련된 사업자는 반드시 SNI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 SNI 증명서가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사업자는 i) 제품의 거래 및 유통, ii) 서비스의 제공, iii) SNI 인증에 부합되지 아니한 제조 프로세스의 실행 행위가 금지된다.

상품을 수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SNI 인증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을 수입하거나 그 거래 및 유통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와 같은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는 행정적 제재가 부과된다.

의무적인 SNI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의 웹사이트(<http://sispk.bsn.go.id/RegulasiTeknis/SniWajib>)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의무적인 SNI 해당 여부 확인 웹사이트 |

SNI > SNI yang diberlakukan Wajib				
Daftar SNI yang diberlakukan Wajib				
Menampilkan 10 Data		Pencarian:		
No	No SNI	Judul	Regulator	No SK
1	SNI ISO 8124.4:2010	Keamanan mainan - Bagian 4: Ayunan, seluncuran dan mainan aktivitas sejenis untuk pemakaian di dalam dan di luar lingkungan tempat tinggal	KEMENPERIN	Peraturan Menteri Perindustrian No. 29 tahun 2018
2	SNI ISO 8124.3:2010	Keamanan mainan - Bagian 3: Migrasi unsur tertentu	KEMENPERIN	Peraturan Menteri Perindustrian No. 29 tahun 2018
3	SNI ISO 8124.2:2010	Keamanan mainan - Bagian 2: Sifat mudah terbakar	KEMENPERIN	Peraturan Menteri Perindustrian No. 29 tahun 2018

1.3 자발적인 SNI 인증

의무적인 SNI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는 제품이 아니더라도, 사업자는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SNI 인증 신청을 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만약, 자발적으로 SNI 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사업자는 그 경우에 상품의 포장 또는 라벨에 SNI 마크 또는 적합성 마크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서에 규정된 범위 이외의 제품에 SNI 마크를 부착하는 행위, 인증받은 SNI 번호와 다른 SNI 번호를 부착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위와 같은 의무 사항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는 행정적 제재가 부과된다.

1.4 SNI 인증 절차 개관

SNI 인증의 대상은 어떠한 종류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해당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조, 공급, 유통, 수입하는 회사가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우선,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하려는 제품의 표준목록을 웹사이트(<http://sispk.bsn.go.id/SNI/DaftarList>) 통하여 해당하는 품목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품목이 존재하지 않으면 제품의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 SNI 표준목록 찾기 웹사이트 |

The screenshot shows the 'SNI > Daftar SNI' page. It features a green header with the title 'Parameter Pencarian'. Below this, there is a search form with the following fields and options:

- No. SNI:** A text input field with the placeholder 'Masukan No SNI'.
- Komite Teknis:** A dropdown menu with the option 'Pilih Komite'.
- Judul:** A text input field with the placeholder 'Masukan Judul'.
- Tahun:** A dropdown menu with the option 'Pilih Tahun'.
- Status Perumusan:** A dropdown menu with the option 'Pilih Perumusan'.
- Status SNI:** A dropdown menu with the option 'Pilih SNI'.
- Pilih ICS:** A dropdown menu with the option 'Pilih ICS'.

At the bottom of the form, there are two buttons: a green 'CARI DATA' button and a red 'RESET' button.

그 다음, 해당 품목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품인증기관으로서 국가인증위원회 (Komite Akreditasi Nasional; KAN)에서 인정한 기관이 있는지 여부를 웹사이트(<http://sispk.bsn.go.id/LPK/LembagaSertifikasi>)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SNI 인증기관 찾기 웹사이트 |

Daftar Lembaga Sertifikasi

Menampilkan 10 Data
Pencarian:

Lembaga Sertifikasi

- Pusat Pengujian Mutu Barang**
No LPK : LSPR-001-IDN
Lingkup : Bahan Kimia, Produk Kimia, dan Serat; Karet dan Produk Plastik; Logam Dasar dan Produk Terbuat dari Logam; Mesin dan Peralatan; Peralatan Listrik dan Peralatan Optik; Peralatan Transpor Lain; Konstruksi; Perdagangan Grosir dan Eceran; Reparasi Kendaraan Bermotor dan Barang Keperluan Rumah Tangga; Teknologi Informasi; Jasa Engineering; Jasa Lain, Administrasi Umum
Alamat : Jl. Raya Bogor, Km. 26, Ciracas, Jakarta Timur
Telpon : (021) 8710321-3
Email : sertifikasipmb_pji@yahoo.com
Contact Person : Nurul Fadina
Periode Akreditasi : 12 Nov 2010 - 11 Nov 2018
SNI yang Terkait : 56 SNI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는 제품인증기관(LSPro)에서 수행되는데, 제품 인증을 원하는 사업자는 LSPro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LSPro의 인증 절차를 따르면 된다. SNI 인증신청서 제출시 구비되어야 할 기본서류 및 기술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SNI 신청시 기본서류 및 기술서류 |

☒ 기본서류

1. SNI 신청서
2. 회사의 설립증서 및 정관
3. 사업허가증(SIUP)
4. 납세의무번호(NPWP)
5. 지식재산권 사무처의 상표등록증명서(Surat Pendaftaran Merek dari Dirjen HAKI)
6. 상표 또는 브랜드 사용 또는 협력서(Surat Pelimpahan Merek atau kerjasama antara pemilik merek)
7. 회사의 조직도
8. 수입업자식별번호(API) – 제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9. 기타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서(Sertifikat Sistem Manajemen Mutu) – 있는 경우

 기술서류

1. 인증된 품질 지침
2. 생산공정 순서도
3. 주요 생산설비 목록
4. 주요 원료 목록
5. 검사 및 시험장비 목록
6. 품질지침문서

2.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청(BPOM) 인증

2.1 인도네시아 BPOM 인증 제도 일반

“BPOM”로 약칭되는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청(BPOM 또는 “식약청”)은 인도네시아 내에 유통되는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식약청(BPOM)이 감독하는 식품 및 의약품의 범주에는 i) 의약품, ii) 약재, iii) 마약류, iv) 항정신성의약품, v) 중독성 물질, vi) 전통의약품, vii) 건강보조식품, viii) 화장품, ix) 가공식품이 포함된다.

식약청(BPOM)은 유통되는 식품 및 의약품의 감독을 위한 표준, 절차 및 기준 등을 결정하고 있다. 즉, 식품 및 의약품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BPOM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 효능 및 품질에 대한 표준 및 요건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검사 및 조사를 실시하며 유통 허가 및 인증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제도는「2017년 제80호 식품의약품감독청에 관한 대통령령」(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80 TAHUN 2017 TENTANG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을 근간으로 하여, 식품 및 의약품 별로 수십개의 식품의약품감독청(BPOM)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식품 및 의약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입하기 위해서는「2017년 제30호 인도네시아 수입 식품 및 의약품의 감독에 관한 BPOM 규정」(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30 TAHUN 2017 TENTANG PENGAWASAN PEMASUKAN OBAT DAN MAKANAN KE DALAM WILAYAH INDONESIA)이, 식품 및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과 관련하여서는「2020년 제8호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식품 및 의약품의 감독에 관한 BPOM

규정」(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8 TAHUN 2020 TENTANG PENGAWASAN OBAT DAN MAKANAN YANG DIEDARKAN SECARA DARING)이 각 근거 법령이 된다. 또한, 약품의 등록 절차 및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2020년 제 27호 약품 등록 절차 및 기준에 관한 BPOM 규정」(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27 TAHUN 2020 TENTANG KRITERIA DAN TATA LAKSANA REGISTRASI OBAT)을 참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BPOM의 인증제도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및 의약품의 유통을 금지시킴으로써 특히 해외에서 수입되는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2.2 화장품 BPOM 인증 및 신고 절차²²⁾

인도네시아 내에 유통되는 화장품은 모두 식약청(BPOM) 규정에 따라 모두 사전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회사는 식약청의 화장품 등록 신청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필요 정보를 기입하고 아이디(ID)와 패스워드(PASSWORD) 발급 절차를 받아야 한다. 아이디의 승인을 위해서는 최초 등록 대상 제품에 대한 제조사, 위임장, 자유판매 증명서(CFS) 등과 수입사의 법인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며, 해당 서류를 등록하게 되면 식약청에서는 서류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그 이후 등록 예정 제품에 대한 제조사의 등록 서류를 준비해 식약청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다. 제조사의 등록이 완료된 후, 해당 제조사에서 생산한 개별 제품에 대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제조사 등록 및 개별 제품 등록 |



제조사 등록

1. 수입산 제품 등록을 위해 수입사는 해외 제조사에 화장품 GMP 또는 ISO22716를 요청해야 하고, 해당 서류가 없을 경우 대한 식약청 등록신청 불가
2. GMP는 한국 식약처(KFDA)에서 발행되는 허가서로 제조사는 해당 서류를 준비하거나 ISO 인증기관으로부터 ISO22716(화장품 GMP)를 받아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제출
3. 제조사의 CGMP 또는 ISO22716은 영사공증이 필요하며,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해당 서류 접수 후 2~3주 심사 기간을 거친 후에 제조사가 식약청에 등록될 수 있음

22) <https://news.kotra.or.kr/>

개별 제품 등록

1. 개별 제품의 등록을 위해서는 CFS(자유판매증명서) 제출 및 그 서류에 대한 영사 공증
2. 1차적 평가 심사 대상은 제품에 대한 전성분. 이 때 전성분에서 사용되는 재료와 사용량을 0.000000g(ml) 단위까지 상세 기재하고, 합계가 100.000000%가 되어야 함
3. 전성분의 사용 금지 재료는 또는 사용 제한 기준치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국제 화장품 재료 규정에 맞춰 준비가 필요하고, 인도네시아 BPOM의 경우 주로 유럽연합의 기준을 참고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Cosing의 웹사이트(https://ec.europa.eu/growth/sectors/cosmetics/cosing_en)에 게재돼있는 'Cosmetic ingredient database' 열람을 통해 해당 성분에 대한 기능성과 금지 대상 여부 그리고 사용제한 여부를 확인
4. 전성분에 대한 자료와 제품의 용기, 용량, 제형 등의 사항을 입력해 식약청 등록 신청

개별 화장품의 등록을 완료하였다면, 수입 통관 절차를 마무리하여야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수입신고서(Surat keterangan Impor; SKI)의 발급이다. 등록 허가를 받은 화장품은 수입시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에 수입신고서 신고 후에 식약청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통관 심사가 진행되는데, 이 절차는 화장품의 수입시마다 매년 진행하여야 한다.

| 수입신고 절차 개관 |

1.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업체는 식약청의 화장품 수입 유통 신고 신청 온라인 사이트(<https://e-bpom.pom.go.id/>)에 접속하여 필요 정보를 기입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 발급 절차 진행
2. 최초 등록 아이디의 공식 승인을 위해서는 기업의 인허가 관련 정보와 문서 그리고 주소 및 연락처 입력
3. 창고의 주소, 연락처, 그리고 창고의 전면 사진 업로드
4. 신청서류로 Surat Permohonan(신청서), Surat Kuasa(신청인의 위임장), Surat Pernyataan(수입 제품의 세부 현황), NIE(등록허가증) 사본 제출
5. 선적서류로는 Invoice, Packing list, BL(waybill)의 제출
6. 선적 제품의 시험성적서(제조사 발급)를 제출
7. 서류와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다면 근무일 1일 후 SKI 발급

3. 인도네시아 할랄(HALAL) 인증

3.1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제도 일반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가된, 허락된, 합법적’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반대어: Haram)로, 할랄제품이란 이슬람 율법(Syariah)에 따라 검증을 거친 제품을 의미한다. 할랄 인증이 적용되는 범위에는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 제품, 유전자 변형 제품 등이 포함되고, 위 제품 등의 재료에는 돼지고기, 혈액, 인체장기 등이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할랄제품의 가공, 처리, 저장, 포장, 배포, 판매의 단계에서 비할랄제품의 가공, 처리 수단 및 장비 등과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을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할랄제도는 「2014년 제33호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3 TAHUN 2014 TENTANG JAMINAN PRODUK HALAL, 이하, “할랄제품법”)을 근간으로 하여 규율되고 있는데, 위 법률의 일부 규정이 2020년 옴니버스법에 의하여 일부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옴니버스법에 따라 할랄제품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시행령도 2021년 새로이 정비되어, 기존 할랄제품의 실시에 관한 2019년 제31호 행정부령은 「2021년 제39호 할랄제품 보장에 실시에 관한 행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9 TAHUN 2021 TENTANG PELAKSANAAN BIDANG JAMINAN PRODUK HALAL)의 도입으로 완전히 폐지되었다. 따라서, 2021년 현재, 인도네시아의 할랄제도는 2014년 할랄제품법 및 2021년 제39호 행정부령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3.2 할랄의 시행과 유예

2021년 제39호 행정부령에 의하면, 할랄 의무인증은 다음과 같은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할랄제품 인증기관(BPJPH)를 통하여 할랄 인증 절차를 진행하여 인증서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 할랄 의무인증 유예기간 |

품목 및 서비스	유예기간	비고
식품, 음료, 도축 제품 및 도축 서비스	2019. 10. 17.~2024. 10. 17.	이 항목들의 경우, 할랄 인증 의무는 각각 유예기간의 경과 이후 바로 시행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2021. 10. 17.~2026. 10. 17.	
향정신성 약물 제외 경질 약물	2021. 10. 17.~2034. 10. 17.	
화장품, 화학 제품, 유전자 변형 제품	2021. 10. 17.~2026. 10. 17.	
의류, 헤드기어, 액세서리	2021. 10. 17.~2026. 10. 17.	
가정용 건강용품, 가전제품, 이슬람 종교 도구, 문구류, 사무용품	2021. 10. 17.~2026. 10. 17.	
의료기기(A등급)	2021. 10. 17.~2026. 10. 17.	
의료기기(B등급)	2021. 10. 17.~2026. 10. 17.	
의료기기(C등급)	2021. 10. 17.~2026. 10. 17.	
그 밖의 비할랄 원료 이용 의약품, 생물학적 제품, 의료기기	다른 제반 법령의 규정에 따름	

할랄제품인증기관(BPJPH)은 각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유예기간 중 할랄 의무인증의 대상이 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지침을 제공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내에서 할랄 인증의 개선 및 개발이 장려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3.3 할랄 인증서 발급 절차

사업자는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할랄 인증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문서를 첨부하여 할랄제품인증기관(BPJPH)에 제출한다.

| 할랄 인증신청서 첨부 문서 |

1. 회사에 관한 자료 (NIB 및 사업허가 관련 서류)
2. 제품의 이름과 종류
3. 사용된 제품과 재료의 목록(할랄 인증서에 의하여 입증된 제품 및 재료이어야 함)
 - 다만, i)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에서 식물과 채광 자재의 형태의 원료, ii) 금지 약물을 함유할 위험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는 것, iii)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재료에 대해서는 위 입증 불요
4. 제품 처리(구매, 수령, 재료의 보관, 가공, 포장, 완제품 보관 및 유통에 관한 정보)

할랄제품인증기관(BPJPH)은 인증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완비된 상태에서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한 날로부터 늦어도 1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는 i) 제출된 서류에 대한 유효성 검사, ii) 제품 및 서비스가 할랄 조건을 유지 및 충족하는지에 대한 테스트(할랄 테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심사 과정에서 서류의 유효성의 검증을 위하여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추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할랄 테스트는 심사 개시 후 15일 이내에 실시되고, 만약 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할랄 테스트 기간은 최대 1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의 경우, 할랄 테스트 기간이 최대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서류의 유효성 검증과 할랄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는 경우, 할랄제품인증기관(BPJPH)은 4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할랄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만약, 제품의 재료 구성에 변화가 없는 경우, 할랄제품인증기관(BPJPH)은 할랄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 승인을 할 수 있다.

4. 인도네시아 국산부품사용(TKDN) 제도

4.1 인도네시아 국산부품사용(TKDN) 제도 일반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생산 제품의 사용을 늘림으로써 국제시장에서 인도네시아 생산 제품 등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자국내 산업구조의 강화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국산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 의무, 일정 수준 이상의 국산부품사용(TKDN), 국산부품사용 여부에 대한 감사 등의 제도를 입법화하고 있다. 이 중 국산부품사용(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TKDN)²³⁾이란 재화, 용역, 또는 재화 및 용역의 조합물에 포함된 인도네시아 국내산 부품, 콘텐츠 등 구성요소의 수준 또는 양을 의미하는데, 여러 개별 산업 분야별로 개별 법령에 의하여 국산부품사용 비율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국산부품사용(TKDN) 제도는「2014년 제3호 산업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 TAHUN 2014 TENTANG Perindustrian, 이하, “산업법”) 제76조, 제83조, 제84조, 제90조, 제95조를 근간으로 하여, 위 산업법의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2018년 제29호 산업 역량 제고에 관한 행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9 TAHUN 2018 TENTANG PEMBERDAYAAN INDUSTRI, 이하, “산업역량제고 행정부령”)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그리고, 위 산업역량제고 행정부령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 발생 시점에 이미 시행 및 수행되고 있던 산업역량의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 및 활동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산부품사용(TKDN) 비율의 계산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1년에 산업부장관령으로 공포되어 발효된 「2011년 제16호 국산부품사용 수준의 계산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PERATURAN Menteri Perindustrian REPUBLIK INDONESIA NOMOR 16 TAHUN 2011 TENTANG Ketentuan dan Tata Cara Penghitungan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23) TKDN이란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의 약칭으로서 재화, 용역, 또는 재화 및 용역의 조합물에 포함된 인도네시아 국내산 부품, 콘텐츠 등 구성요소의 수준 또는 양을 의미한다. 보다 정확한 의미에서는 “국산 구성요소 수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편의상 “국산부품사용”이라고 하였다.

4.2 국산부품사용(TKDN) 비율 산정 방법

국산부품사용(TKDN) 제도에서 의미하는 “국산부품”이란 인도네시아 내에 투자를 한 기업이 생산하거나 수행하는 설계 및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상품에 있어서 국산부품사용(TKDN)의 비율은 “(완제품 가격 - 외국부품 가격)”을 “완제품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이때, 완제품 가격은 당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생산원가”를 의미하는데, 생산원가는 i) 직접재료비 + ii) 직접노무비 + iii) 생산간접비(공장간접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되고, 회사의 이익, 회사의 간접비 및 세금은 위 생산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 생산원가 중 i) 직접재료비의 경우, 재료의 원산지 국가를 기준으로 국내 재료비와 외국 재료비를 구분하고, ii) 직접노무비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비용을 구분하며, iii) 생산을 위한 작업 도구 및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당해 생산간접비의 국내 비중 금액과 해외 비중 금액은 다음의 내용에 기반하여 산정된다.

| 생산간접비 계산 비중 |

1. 국내에서 생산되고 국내 상품/서비스 제공자가 공급한 작업도구를 이용한 경우, 국산부품 100% 사용으로 평가됨
2. 국내에서 생산되고 외국 상품/서비스 제공자가 공급한 작업도구를 이용한 경우, 국산부품 75% 사용으로 평가됨
3. 국내에서 생산되고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 기업이 공급하는(보유하는) 작업도구를 이용한 경우, 국산부품 사용률은 75%를 기본값으로 하여, 위 합작 기업의 주식에 대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주식 보유율에 비례하여 최대 25%의 사용률을 더함
 - 예를 들어,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주식 지분이 50%대 50%로 동일하다면, 국산부품 사용률은 87.5% (= 75% + 12.5%)가 되는 것임
4. 외국에서 생산되고 국내 상품/서비스 제공자가 공급한(보유한) 작업도구를 이용한 경우, 국산부품 75% 사용으로 평가됨
5. 외국에서 생산되고 외국 상품/서비스 제공자가 공급한(보유한) 작업도구를 이용한 경우, 국산부품 0% 사용으로 평가됨
6. 외국에서 생산되고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 기업이 공급하는(보유하는) 작업도구를 이용한 경우, 국산부품 사용률은 위 합작 기업의 주식에 대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주식 보유율에 비례하여 평가됨

결국, i) 직접재료비 + ii) 직접노무비 + iii) 생산간접비(공장간접비)의 합계 값에서 국산 요소가 차지하는 값의 비율을 계산하면 국산부품사용(TKDN)의 비율이 도출된다. 예시를 통하여 국산부품 사용 비율을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국산부품사용 비율 산정 예시 |

분류	국산요소	외국요소	총 금액	비고
직접재료비	국산 재료비 100원	외국산 재료비 50원	총 직접재료비 150원	
직접노무비	인도네시아 국적 근로자 노무비 400원	외국 국적 근로자 노무비 100원	총 직접노무비 500원	
생산간접비	국산 도구료 200원	외국산 도구료 100원	총 생산간접비 300원	생산 작업 도구 및 시설의 국산요소 사용에 따른 비율로 금액 계산
생산원가	700원(국내요소)		950원 (생산원가; 완제품 가격)	TKDN 비율 73.6% (=700 / 950)

상품에 있어서 국산부품사용(TKDN)의 비율은 상품의 종류별로 하게 되는데, 이때, 상품의 종류는 동일한 생산과정 및 원재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상품을 말한다.

그리고, 2종 이상의 완제품을 조합하여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국산부품사용(TKDN)의 비율의 계산은 각 완제품의 가격을 합산한 값을 분모로, 그 완제품들에서 국산요소가 차지하는 가격을 합산한 값을 분자로 하여 나눈 값으로 산정된다(즉, 개별 완제품의 TKDN 비율을 각 완제품의 생산원가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값).

위와 같이 상품에 있어서 국산부품사용(TKDN)의 비율의 계산 방법은 i) 서비스, ii) 제품 및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4.3 개별 제품 및 서비스의 국산부품사용(TKDN) 비율 준수 여부

사업자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공급 및 유통하고자 하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 전부에 대해서 국산부품사용(TKDN)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공급 및 유통하고자 하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있어서 국산부품사용(TKDN) 비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각 산업 분야별, 제품 및/또는 서비스 유형별로 다음의 법령의 내용을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국산부품사용 관련 법령 |

1. 2015년 제146호 국산 정유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대통령령
2. 2018년 제16호 정부 재화 및 용역 조달에 관한 대통령령
3. 2021년 제12호 위 2018년 제16호 대통령령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4. 2019년 제55호 도로운송을 위한 배터리 전기차 사업 가속화에 관한 대통령령
5. 2018년 제24호 국산부품사용 확대에 관한 대통령령
6. 2006년 제57호 국산부품 및 서비스의 사용 수준 검증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7. 2012년 제54호 전력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산부품사용 지침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8. 2014년 제2호 정부 조달 상품 및 서비스에 있어서 국산 비중 제고를 위한 지침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9. 2014년 세입 및 세출 예산에서 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정부 조달 상품 및 서비스에 있어서 국산 비중 제고를 위한 지침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10. 2015년 제27호 기술표준에 기반한 통신장비 및/또는 도구 관련 기술요구사항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
11. 2016년 제15호 전력 인프라 개발 가속화를 위한 국산제품용 송전탑 등의 표준사양 및 가격표준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12. 2017년 제29호 휴대전화, 휴대용 컴퓨터 및 태블릿 컴퓨터의 국산제품사용 수준의 계산 및 절차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13. 2017년 제4호 태양광 발전소의 국산부품사용 수준 평가 및 절차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14. 2017년 제5호 전력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산부품사용 지침의 개정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15. 2019년 제8호 국영기업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조달 일반 지침에 관한 국영기업부 장관령
16. 2019년 제4호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을 위한 통신장비 및/또는 도구의 기술요건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
17. 2019년 제84호 국산부품사용 확대를 위한 국가조직 구성에 관한 해양조정부 장관령
18. 2020년 제20호 전자 및 텔레매틱스 제품에 대한 국산부품사용 수준 계산 및 절차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19. 2020년 제16호 의약품의 국산제품사용 수준 계산 및 절차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20. 2020년 제32호 산업발전을 위한 국산 기계, 상품 및 자재 목록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개정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21. 2020년 제27호 배터리 기반 전기자동차의 사양, 개발 로드맵 및 국산부품사용 수준 계산 등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예를 들어, 「2017년 제4호 태양광 발전소의 국산부품사용 수준 평가 및 절차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 시스템 부품의 국산부품사용(TKDN) 비율은, i) 부품이 34.09% 이상이어야 하고, ii) 서비스의 경우 100% 이어야 하며, 부품과 서비스를 합산한 경우 40.68% 이상이여야 한다.



인도네시아 투자실무가이드



IV. 노무관리

1. 근로 관계
2. 근무(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및 초과근무수당
3.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4. 근로관계의 해지 및 각종 보상금
5. 외국인력의 고용

1. 근로 관계

1.1 근로관계의 종류

옴니버스법으로 개정된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의 근로관계는 2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PKWT로 약칭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와 PKWTT로 약칭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rtentu)”이 그것이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특정한 업무 또는 일정 기간의 근로관계를 위하여 체결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말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란 영구적인 근로관계를 위하여 체결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의미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소위 ‘정규직’ 근로의 형태이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소위 ‘계약직’ 근로의 형태이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다수의 기업들이 계약직 근로계약의 체결이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근로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옴니버스법으로 개정된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약직 근로계약의 체결이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러한 계약은 비록 그 명칭과 형태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근로계약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2 기간 특정 및 일정 업무 종료에 의한 계약직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계약은 i) '근로의 기간을 특정'하는 방법 또는 ii) 별도로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프로젝트(업무)의 종료'를 계약의 종기로 정하는 방법으로 정해진다. 다만, 계약직 근로계약은 영구적 성격의 업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을 특정'하는 방법에 의한 계약직 근로계약은 다음과 같은 성격의 업무에 대해서 체결된다.

| 기간에 기초한 계약직 가능 업무 |

1. 길지 않은 기간 내에 종료가 예상되는 업무
2. 계절적 성격의 업무
 - 계절적 성격의 업무는 i) 계절 또는 날씨에 의존하여 실시되는 업무 또는 ii) '특정 상태'에 의존하여 실시되는 업무를 말하는데, 계절 또는 날씨에 의존하는 업무는 오직 특정한 계절 또는 특정한 날씨에서만 실시되고, 특정 상태에 의존하는 업무는 특정한 주문 또는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실행되는 업무를 의미함
3. 신제품, 새로운 활동, 또는 시험 또는 공략 중인 추가제품과 관련이 있는 업무
4. 영구적인 특성을 가지지 않은 종류 및 성격, 또는 활동과 관련된 기타 업무

기간을 요소로 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은 최장 5년 동안 체결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2년 기간의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그 만료되는 시점에 업무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최초의 근로기간 및 연장기간의 총합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직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즉, 위 예시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최장 3년의 기간 동안 계약직 근로관계를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일정한 프로젝트(업무)의 종료'를 종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계약직 근로계약은 다음의 업무를 위하여 체결될 수 있다.

| 프로젝트 종료에 기초한 계약직 가능 업무 |

1. 일회로 완료되는 업무
2. 일시적 성격의 업무

일정 업무의 종료를 요소로 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일정 업무의 종료'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에 어느 범위까지 업무를 하면 완결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범위 및 한계를 규정하여 두어야 한다.

또한, 일정 업무의 종료를 계약의 종료시점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업무기간을 감안하여 기간을 설정하여 둘 수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 설정하여 둔 업무기간보다 일정 업무가 일찍 종료되면 그 기간의 정함과 상관없이 약정한 특정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직 근로관계가 종결된다.

위와 같이 예상되는 업무기간을 감안하여 기간을 설정하여 두었으나, 그 만료 시점에 아직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계약직 근로관계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일정 프로젝트의 완료 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의 최초 개시시점부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기간은 5년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3 일일 근로에 의한 계약직 근로계약

한편, 소위 '아르바이트'라고 불리는 단기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아르바이트 계약은 일일 근로계약의 형태로 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일일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일 근로계약에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일일 근로계약 포함 사항 |

1. 사용자(고용주)의 성명 및 주소
2.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
3. 업무의 종류
4. 임금의 규모

이러한 일일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1개월 동안 21일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만약,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매월 21일을 초과하여 출근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위 일일 근로계약은 법에 의하여 무효가 되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법에 의하여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변경된다.

1.4 계약직 근로 수습기간 설정 가능 여부 및 계약서 작성 실무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통상 3개월)을 근로의 조건으로 부가할 수 없다. 만약, 수습 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당해 수습기간은 법에 의하여 무효가 되고 그 수습기간은 계약서상의 근로기간으로 계산된다.

계약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필수 포함 사항 |

1. 회사의 상호, 주소 및 업종
2. 근로자의 성명, 성별, 나이 및 주소
3. 직무 또는 업무의 종류
4. 근무장소
5. 임금의 규모와 지급 방법
6. 제반 법령의 규정 및/또는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 조건에 따른 사용자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7.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개시 및 기간
8.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작성 장소 및 작성일
9. 당사자들의 서명

계약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사용자는 계약직 근로계약의 서명이 완료된 날로부터 늦어도 3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노동부에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만약, 온라인으로 등록 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시/군 노동부서에 계약서가 서명된 날로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1.5 계약직 근로계약의 종료와 보상금 지급

사용자는 계약직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에 계약직 근로자에게 반드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계약직 근로자는 최소한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가진 근로자이어야 한다. 인도네시아 회사에 고용되는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계약직 근로계약만을 체결할 수 있는데, 외국인력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상금 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계약직 근로계약을 연장하기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당초 설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의 만료 시점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그 연장된 계약에 따른 연장기간의 만료 시점에 다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급을 위한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고정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만약, 임금 체계가 “기본급+고정수당”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이 된다. 예를 들어,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 “기본급+비고정수당”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임금은 “기본급”이 된다. 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하여 지급된다.

| 계약직 근로자 보상금 지급 공식 |

- 12개월간 연속되는 계약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분 임금 상당액 기준
-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경우 또는 12개월 이상의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아래의 공식에 따라 비율적으로 계산됨:

$$\frac{\text{근로기간} \times \text{1개월 임금}}{12}$$

계약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근로기간의 만료 시점 이전에 어떠한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계약직 근로자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2. 근무(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및 초과근무수당

2.1 근무시간 및 휴식

근무시간의 원칙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주 6일 근로제의 경우, 1일 7시간 및 1주 40시간의 근무시간으로 운영된다. 주 5일 근로제의 경우,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의 근무시간으로 운영된다. 위와 같은 근로제의 내용에 따라, 주 6일 근로제의 경우 주휴일은 1일이고, 주 5일 근로제의 경우 주휴일은 2일이 된다.

다만,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업무 분야의 회사는 위 원칙적인 형태에서 단축된 근무시간 또는 초과된 근무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업무 분야의 회사란, i) 업무 완료에 1일 7시간 미만 및 1주 35시간 미만이 소요, ii) 유동적인 근무시간, iii) 업무가 근무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가진 회사를 의미한다.

근무시간 사이의 휴식은 연속 4시간 근무 후 최소한 30분간 제공되고, 위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2 휴가, 병가 등

근로자가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소 연 12일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연차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게 된다.

근로자가 근로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임금은 지불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무노동 무임금의 예외 |

1.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 * 근로자 질병시에는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한다.
 - 처음 4개월 동안은 급여의 100%
 - 두 번째 4개월 동안은 급여의 75%
 - 세 번째 4개월 동안은 급여의 50%
 - 그 이후부터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급여의 25%

2. 여성근로자가 생리통으로 인해 생리 첫째 날과 둘째 날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3. 근로자 본인 결혼, 자녀 결혼식, 자녀 할례식, 자녀 세례식, 배우자 출산 또는 유산, 배우자/자녀/며느리/사위/부모/처부모/동거 가족 구성원 사망으로 인한 결근
 - * 위 사정으로 인한 유급휴가 일수
 - 근로자 자신의 결혼 3일
 - 자녀의 결혼 2일
 - 자녀의 할례 2일
 - 배우자의 출산 또는 유산 2일
 - 배우자, 부모/처부모, 자녀, 사위/며느리 사망 2일
 - 동거 가족 구성원 사망 2일
4. 근로자가 국가 의무 수행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5. 근로자가 종교에서 명하는 종교활동 수행을 위해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6. 근로자는 계약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본인의 실수나 회피 가능한 장애로 인해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경우
7. 근로자가 휴가권을 사용하는 경우
8.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하에 조합업무를 수행할 경우
9. 근로자가 회사에서 시행하는 교육 임무를 수행할 경우

2.3 초과근무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는 1일 기준 최장 4시간 및 1주일에 최장 18시간으로 한정된다. 이러한 초과근무시간의 제한 규정은 근무일에 행하는 초과근무만을 의미하고 주휴일 및/또는 공휴일에 행하는 근로시간은 위 초과근무 기준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휴일 및/또는 공휴일에 행하는 근로가 초과근무 기준 시간에는 합산되지 않는다고 하여 주휴일 및/또는 공휴일 근무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초과근무의 실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 및/또는 전자적 매체를 통한 사용자의 지시 및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있어야 하고, 사용자는 반드시 초과근무시간 및 초과근무하는 근로자의 성명이 포함된 초과근무 실행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초과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아래의 음식과 음료수의 제공을 금전으로 대체하여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 초과근무시 사용자의 제공 의무 |

1.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2. 충분한 휴식 기회 제공
3. 초과근무가 4시간 이상 행해지는 경우, 최소 1,400킬로칼로리의 음식과 음료수 제공

2.4 초과근무수당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 계산

초과근무수당은 당해 근로자의 월 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되는데, 초과근무를 시간당으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월 임금을 173으로 나누어 계산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된다.

임금의 구성이 “기본급+고정수당”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기본급+고정수당” 금액이 초과근무수당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이 된다.

임금의 구성이 “기본급+ 고정수당+비고정수당”으로 되어 있는 경우, i) “기본급+고정수당”의 합계가 총 임금의 75%에 미달한다면, 초과근무수당의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은 총 임금의 75%가 되고, ii) 기본급+고정수당”의 합계가 총 임금의 75%를 초과한다면, “기본급+고정수당”이 초과근무수당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이 된다.

만약, 근로자가 임금을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월 임금 규모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다. 즉, 주6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당의 25배가 월 임금이 되고,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당의 21배가 월 임금이 된다.

만약, 근로자가 임금을 성과 계산에 기초하여 변동되는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최근 12개월간의 평균 수입을 월 임금으로 본다. 이러한 평균 수입이 당해 근로자가 근무하는 지역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최저임을 초과근무수당 산정을 위한 월 임금으로 본다.

2.5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법

초과근무수당은 i) 근무일에 행해진 초과근무와 ii) 주휴일 및/또는 공휴일에 행해지는 초과근무 여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 근무일에 행해진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법 |

☑ 근무일 초과근무수당

1. 첫 1시간: 시간당 임금 $\times 1.5$
2. 그 이후 시간: 시간당 임금 $\times 2$

주 6일 및 40시간 근무제의 회사에서 초과근무가 주휴일 및/또는 공휴일에 행해지는 경우 다음의 산정 방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이 계산된다.

| 주 6일 및 40시간 근무제 주휴일/공휴일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법 |

☑ 주휴일/공휴일 초과근무수당

1. 첫 1시간 ~ 7시간째: 시간당 임금 $\times 2$
2. 8시간째: 시간당 임금 $\times 3$
3. 9시간, 10시간, 11시간째: 시간당 임금 $\times 4$

☑ 근무시간이 가장 짧은 날이 공휴일이 되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1. 첫 1시간 ~ 5시간째: 시간당 임금 $\times 2$
2. 6시간째: 시간당 임금 $\times 3$
3. 7시간, 8시간, 9시간째: 시간당 임금 $\times 4$

* 근무시간이 가장 짧은 날이란?

주 6일 및 40시간 근무제에서 “근무시간이 가장 짧은 날”이란 통상적으로 토요일을 의미한다. 주6일 및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일 각 7시간 근무, 토요일에는 5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주6일 및 40시간 근무제에서 근무시간이 가장 짧은 날은 토요일이 된다.

다만, 주6일 및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회사의 사정에 따라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한다면, 그 다른 요일이 가장 짧은 근무일에 해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화, 목, 금, 토요일에 각 7시간 근무, 수요일에 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한 회사의 경우, 근무시간이 가장 짧은 날은 수요일이 되는 것이다.

주 5일 및 40시간 근무제의 회사에서 초과근무가 주휴일 및/또는 공휴일에 행해지는 경우 다음의 산정 방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이 계산된다.

| 주 5일 및 40시간 근무제 주휴일/공휴일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법 |

☑ 주휴일/공휴일 초과근무수당

1. 첫 1시간 ~ 8시간째: 시간당 임금 $\times 2$
2. 9시간째: 시간당 임금 $\times 3$
3. 10시간, 11시간, 12시간째: 시간당 임금 $\times 4$

3.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3.1 최저임금

사용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회사의 임금 구조가 '기본급+비고정수당'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기본급은 최소한 최저임금의 규모가 되어야 한다. 한편, 최저임금은 당해 회사의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가진 근로자를 위하여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i) 주(州) 최저임금 및 ii) 특정 조건에 의한 시/군 최저임금으로 구분되는데, 기본적으로 주(州) 최저임금의 규율을 받게 되고, 만약, 최근 3년간의 자료에서 당해 시/군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주(州)의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높다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는 시/군 최저임금을 당해 주(州) 최저임금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i) 구매력 증가, ii) 인력 고용률, iii) 임금 중간값의 변수 및 경제성장률 또는 인플레이션 값에 따라 일정한 공식에 의하여 결정되고, 최저임금액은 매년 조정이 된다.

|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 결정 공식 |

최저임금(t+1) = 다음 연도 최저임금

최저임금(t) = 올해 최저임금

$$\begin{aligned} \text{최저임금}(t+1) = \text{최저임금}(t) \\ + \{ (\text{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중 최대값}) \times \frac{\text{최저임금 상한} - \text{최저임금}(t)}{\text{최저임금 상한} - \text{최저임금 하한}} \} \end{aligned}$$

주(州) 최저임금은 주지사 결정 사항으로 정해지는데, 다음 연도의 적용을 위한 주(州) 최저임금은 늦어도 현행 연도의 11월 21일까지 공포되어야 한다. 다음 연도의 적용을 위한 주(州)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개시된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지사는 시/군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다음 연도의 적용을 위한 시/군 최저임금은 늦어도 현행 연도의 11월 30일까지 공포되어야 한다. 다음 연도의 적용을 위한 시/군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개시된다.

3.2 파산 및 청산시 임금 지급

파산 선고 또는 청산 상태에 있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미수령한 임금 및 기타의 권리는 우선변제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채권이 된다.

임금의 경우에는 담보채권자를 비롯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 권리이므로, 파산 또는 청산 상태에 있는 회사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미지급 임금에 최우선적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권리를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기타의 권리'라고 하는데, 기타의 권리는 담보채권자를 제외하고 우선변제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결과적으로 파산 또는 청산 상태에 있는 회사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i) 미지급 임금채권, ii) 담보채권자의 채권, iii) 근로자의 기타의 권리, iv) 일반 무담보채권의 순으로 변제된다.

3.3 임금에 대한 압류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근로자의 총 임금액의 20% 범위까지만 허용이 된다.

3.4 임금 지급 방법

임금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공화국 루피아로 지급되어야 하고, 사용자에게 의한 임금 지급의 간격은 1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또는 은행을 통하여 지급될 수 있고, 근로자로부터의 위임장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지급될 수도 있다.



4. 근로관계의 해지 및 각종 보상금

4.1 근로관계의 적법 해지 사유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및 하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근로관계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가 가능하고, 아래와 같은 적법한 사유로 해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는 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적법하게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가 부적법하게 해지된 동안 근로자가 지급받지 아니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근로관계의 적법 해지 사유 |

근로관계의 해지 사유

- a. 회사가 흡수합병, 신설합병, 인수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거나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 b. 회사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경영효율화를 하는 경우 또는 폐업에 이르는 것으로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경영효율화를 하는 경우;
- c. 회사가 2년간 연속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
- d. 불가항력적인 사정의 발생으로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 e. 채무변제유예(회생) 상태에 있는 회사의 경우;
- f. 회사가 파산한 경우;
- g.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1. 무례한 방법으로 근로자를 핍박하거나 굴욕을 주는 경우 또는 근로자를 협박하는 경우;
 2. 제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도록 근로자를 설득하거나 및/또는 지시하는 경우;
 3. 비록, 사용자가 나중에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근로자와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근로자로 하여금 약정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6.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생명, 안전, 건강 및 윤리에 위해를 가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 h. 위 g호에 규정된 근로자의 요청이 있고 그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바 없다는 노사분쟁 해결기관의 판단이 있는 경우로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해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 i. 반드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1. 늦어도 사직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
 2. 의무재직사유에 묶여있지 아니함; 및
 3. 사직하는 날까지 근로자의 의무를 확실히 수행함;

- j. 근로자가 적법한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서면에 의한 설명도 없이 5 영업일 이상을 연속하여 결근한 경우로서, 사용자가 적절한 방식 및 서면으로 2회 소환한 경우;
- k.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 행위 이전에 이미 최대 6개월 동안 효력이 있는, 1회, 2회 및 3회의 서면경고를 연속으로 받은 경우;
- l. 근로자가 범죄행위를 한 혐의로 인하여 구금된 결과 6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4.2 근로관계의 해지 절차

근로관계의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는 i) 당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노조원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ii) 당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근로관계 해지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관계의 해지 통지는 통보서 형태로 작성되고, 늦어도 근로관계의 해지 시점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근로자 및/또는 노동조합에 송부되어야 한다. 만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계약)에 따라 수습기간(인턴기간)을 설정하여 둔 근로자가 그 수습기간 중에 근로관계를 해지하고 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점으로부터 7일 이전까지 근로자에게 해지 통보를 하면 된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위 해지 통지를 수령한 후 근로관계의 해지에 반대의사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해지의 사실을 주(州) 및 시/군의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위 해지 통지를 수령한 후 근로관계의 해지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위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반대의 이유가 포함된 거부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 근로관계의 해지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본 원칙

근로관계의 해지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반드시 i) 해고보상금 및/또는 ii) 근속보상금 및 iii) 대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각 근로관계의 해지 사유별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규모가 다르므로, 아래의 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대체보상금을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관계의 해지에 따라 계산되는 각종 보상금의 기본 규모는 다음과 같다.

| 해고보상금 |

1. 근로기간 1년 미만시 1개월 급여
2. 근로기간 1년이상 2년미만 2개월 급여
3. 근로기간 2년이상 3년미만 3개월 급여
4. 근로기간 3년이상 4년미만 4개월 급여
5. 근로기간 4년이상 5년미만 5개월 급여
6. 근로기간 5년이상 6년미만 6개월 급여
7. 근로기간 6년이상 7년미만 7개월 급여
8. 근로기간 7년이상 8년미만 8개월 급여
9. 근로기간 8년이상 9개월 급여

| 근속보상금 |

1. 근로기간 3년이상 6년미만 2개월 급여
2. 근로기간 6년이상 9년미만 3개월 급여
3. 근로기간 9년이상 12년미만 4개월 급여
4. 근로기간 12년이상 15년미만 5개월 급여
5. 근로기간 15년이상 18년미만 6개월 급여
6. 근로기간 18년이상 21년미만 7개월 급여
7. 근로기간 21년이상 24년미만 8개월 급여 및
8. 근로기간 24년이상 10개월 급여

| 대체보상금 |

1. 소멸하지 아니한 미사용 연차휴가;
2. 근로자 채용 장소까지의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이동 경비 또는 교통비 및
3. 기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

예를 들어, 당해 회사에서 2년을 근무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i) 2개월 급여 상당의 해고보상금, ii) 대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속보상금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을 연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위 예시의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근속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한편, 자진 퇴사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i) 해고보상금 및 ii) 근속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고, 다만, i) 대체보상금 및 ii)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규모의 전별금(정하여 둔

것이 있는 경우; 만약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전별금은 없음)을 수령할 권리가 부여될 뿐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4.4 각 근로관계의 해지 사유별 보상금 산정

각 근로관계의 해지 사유별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각 근로관계 해지 사유별 보상금 |

1. 회사가 흡수합병, 신설합병 또는 분할을 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거나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그러한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해지
 - 해고보상금 1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2. 회사의 인수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
 - 해고보상금 1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3. 회사의 인수가 발생하여 근로 조건이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해지
 - 해고보상금 0.5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4.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기인하는 회사의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
 - 해고보상금 0.5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5. 회사의 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회사의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
 - 해고보상금 1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6. 회사가 2년 동안 연속적 또는 비연속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기인하여 폐업하게 됨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
 - 해고보상금 0.5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8. 회사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하여 폐업하게 됨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
 - 해고보상금 0.5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9. 회사의 폐업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
 - 해고보상금 0.75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10. 회사가 입은 손해에 기인하여 채무변제유예(회생) 상태에 있게 됨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
 - 해고보상금 0.5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11. 회사가 손해에 아닌 사정에 기인하여 채무변제유예(회생) 상태에 있게 됨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
 - 해고보상금 1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12. 회사의 파산을 이유로 근로관계의 해지
 - 해고보상금 1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13. 근로자를 핍박하거나 굴욕을 주는 경우, 제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도록 근로자를 설득하거나 및/ 또는 지시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약정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근로관계 해지시
 - 해고보상금 1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14. 위 13항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근로자가 근로관계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바 없다는 노사분쟁 해결기관의 판단이 있는 경우로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 대체보상금 1배
 -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규모의 전별금(정함이 있는 경우)
15. 근로자가 적법한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서면에 의한 설명도 없이 5영업일 이상을 연속하여 결근한 경우로서 사용자가 적절한 방식 및 서면으로 2회 소환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
 - 대체보상금 1배
 -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규모의 전별금(정함이 있는 경우)

16. 근로자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 행위 이전에 이미 최대 6개월 동안 효력이 있는, 1회, 2회 및 3회의 서면경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
 - 해고보상금 0.5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17. 근로자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긴급한 특성의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이 경우, 별도의 해지통보 요건 불필요)
 - 대체보상금 1배
 -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규모의 전별금(정함이 있는 경우)

※ 긴급한 특성 위반행위란?

- 사기, 절도, 회사의 물건 및/또는 금전을 횡령하는 경우;
- 허위 또는 위조된 설명을 제공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 업무환경에서 취하는 것, 취하게 하는 술을 마시는 것,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기타 중독성 물질을 사용 및/또는 배포하는 경우;
- 업무환경에서 부정한 행위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경우;
- 업무환경에서 동료 또는 사용자를 공격, 박해, 협박 또는 성적 추행을 하는 경우;
- 동료 또는 사용자에게 제반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자고 설득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물건을 위험한 상태에 처하도록 방치 또는 훼손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 근무장소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동료 또는 사용자가 위험에 처하도록 방치하는 경우;
-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회사의 비밀을 폭로 또는 유출하는 경우;
- 회사 내에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기타 행위를 한 경우

18. 근로자가 범죄행위를 한 혐의로 당국에 구금되어 6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음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
 - 대체보상금 1배
 -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규모의 전별금(정함이 있는 경우)
19. 회사의 손해를 초래하지는 않았으나 근로자가 범죄행위를 한 혐의로 당국에 구금되어 6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음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20.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 법원의 형사판결이 있고 그 근로자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로서 근로관계를 해지
 - 대체보상금 1배
 -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규모의 전별금(정함이 있는 경우)

21.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장기적인 질병 또는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로서, 12개월 이후에도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
 - 해고보상금 2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22.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장기적인 질병 또는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로서, 12개월 이후에도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의 해지를 요청하여 근로관계를 해지
 - 해고보상금 2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23.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
 - 해고보상금 1.75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24.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경우,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권리
 - 해고보상금 2배
 - 근속보상금 1배
 - 대체보상금 1배



5. 외국인력의 고용

5.1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자

인도네시아 국적자 개인이 아닌 외국인력(TKA)을 고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 외국인력 고용 주체 |

1. 정부기관, 외국 대표부 및 국제기구
2. 외국무역 대표사무소, 외국회사 대표사무소,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외국 연락사무소
3.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활동하는 민간 외국회사
4. 인도네시아 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또는 재단 형태의 법인,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등록된 외국사업체
5. 사회단체, 종교단체, 교육단체 및 문화단체
6. 연예기획사
7. 기타 외국인력을 사용하도록 법에 의하여 허용된 법인

5.2 외국인력의 고용 형태

외국인력은 오직 특정 기간, 특정 직무를 위한 근로계약의 형태, 즉, 계약직 근로계약의 형태로만 고용될 수 있을 뿐이고 인도네시아 국적자 개인과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 합의하더라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형태로 고용할 수 없다.

또한, 비록, 외국인력의 근로계약의 형태는 계약직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력에게는 인도네시아 국적자와 달리 계약직 근로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계약직 종료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른 고용자에 의하여 이미 고용된 외국인력이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를 위하여 중복하여 고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고용자에 의한 동의를 취득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겸직을 하는 외국인력은 기존 고용자가 승인받은 외국인력사용계획(RPTKA)에 기재된 근로기간의 만료일까지만 고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기존 고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승인받은 외국인력사용계획의 만료 시점에 고용관계의 연장 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5.3 외국인력 고용자의 의무

외국인력 고용자는 외국인력을 사용시에, i) 외국인력으로부터 기술 및 전문성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력 동반근로자로서의 인도네시아 인력을 지정하고, ii) 외국인력 동반근로자에게 외국인력이 담당하는 직무 자격에 부합하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iii) 근로관계의 종료 후, 외국인력을 본국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다만, 고용된 외국인력이 i) 이사 및 감사, ii) 대표사무소의 소장, iii) 일시적 성격의 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외국인력인 경우, 사용자는 외국인력 동반근로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력 고용자는 동일 회사 내에서 중복된 직무를 담당하는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외국인력으로 하여금 하나의 직무만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력 고용자는 인사 관리 직무에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외국인력 사용자는 반드시 매 1년마다 다음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노동부 연간 보고사항 |

1. 외국인력 사용
2. 외국인력 동반근로자를 위한 업무 교육 및 훈련 및
3. 외국인력으로부터 외국인력 동반근로자로의 기술 및 전문성 전수



5.4 외국인력사용계획

외국인력사용계획 승인을 위하여, 외국인력 사용자는 반드시 장관 또는 지정된 공무원에게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청서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외국인력사용계획 신청서 포함 사항 및 제출서류 |

신청서 포함 사항

1. 외국인력 사용자의 신원
2. 외국인력의 사용 이유
3. 회사 구조 내에서 외국인력의 직무 또는 담당 업무
4. 외국인력의 수
5. 외국인력의 사용기간
6. 외국인력의 근무장소
7. 외국인력 동반근로자의 신원 및
8. 매년 인도네시아 인력에 대한 채용 계획

제출서류

1. 신청서
2. 외국인력 사용자의 사업고유번호(NIB) 및/또는 사업허가
3.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회사의 설립 및/또는 변경 승인 증명서 및 결정서
4. 회사의 고용 관련 의무 신고서 증거
5. 근로계약 또는 기타 계약의 초안
6. 회사 조직도
7. 외국인력 동반근로자 지정 확인서
8. 인도네시아 인력을 위하여 외국인력이 담당하는 직무 자격에 부합하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확인서 및
9. 외국인력에게 인도네시아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겠다는 확인서

일시적 성격의 업무를 위한 외국인력사용계획 승인은 최장 6개월 기간으로 발급되고 연장될 수 없다. 6개월 초과 업무를 위한 외국인력사용계획 및 외국인력사용기금 납부 면제의 외국인력사용계획 승인은 최장 2년으로 발급되고 연장될 수 있다. 특별경제구역 외국인력사용계획 승인은 최장 5년 기간으로 부여되고 연장될 수 있다.

V. 지식재산권, 영업비밀보호 관리

- 1. 지식재산권 관리
- 2. 영업비밀보호

1. 지식재산권 관리

1.1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개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분야의 제도는 i) 저작권, ii) 특허권, iii) 산업디자인권, iv) 상표권, v) 집적 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보호제도, vi) 영업비밀에 관한 보호제도로 구분된다. 위 각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이 존재하고, 그에 의하여 각 제도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작권 분야의 경우, 2014년 다시 한번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재 저작권 분야는 「2014년 제28호 저작권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HAK CIPTA)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특허권과 관련하여, 2016년도에 기존 2000년도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정비가 이루어졌다. 현재 특허권 분야는 「2016년 제13 특허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2020년 11월 2일, 옴니버스법의 제정으로 위 2016년 특허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산업디자인 분야의 경우, 「2000년 제31호 산업디자인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상표권과 관련하여, 2016년도에 기존 2000년도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정비가 이루어졌다. 현재 상표권 분야는 「2016년 제20호 상표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2020년 11월 2일, 옴니버스법의 제정으로 위 2016년 상표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집적회로 배치설계 분야의 경우, 「2000년 제32호 집적회로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2 TAHUN 2000 TENTANG DESAIN TATA LETAK SIRKUIT TERPADU)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영업비밀 분야의 경우, 「2000년 제30호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2000 TENTANG RAHASIA DAGANG)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1.2 인도네시아 특허권 관련 유의점

인도네시아의 특허제도는 한국의 특허제도와 전반적으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의 경우와 달리 실용신안제도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허법 내에서 실용신안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는 i) 특허(Paten)과 ii) 단순특허(Paten Sederhana)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도네시아 특허법 제2조 b호에 규정된 단순특허의 경우, 한국의 실용신안과 유사한 제도이다. 옴니버스법 제107조를 통하여 특허법 제3조가 일부 개정되면서, 단순특허의 범위가 기존 규정에 비하여 보다 구체화되었다.

특허법에서는 특허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구현'되어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 특허 구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허의 구현 의무 형태 |

1. 특허를 받은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특허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2. 특허를 받은 프로세스의 결과물인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그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3. 특허를 받은 방법, 시스템의 결과물인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그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1.3 인도네시아 특허권 존속기간

인도네시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존속되고 보호된다. 그리고 위 20년의 존속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한다.

한국의 실용신안과 유사한 인도네시아의 단순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존속되고 보호되며, 일반 특허와 마찬가지로 존속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1.4 특허법상 강제실시 제도

인도네시아 특허법상 '라이선스(한국법상 실시권과 유사)'란 독점 및 비독점을 불문하고 특허권자가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특정한 조건으로 특허를 사용하도록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취득한 이후 36개월 이내에 '특허의 구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권자의 특허가 신청자에게 사용되도록 부여되는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인도네시아 특허법상 '강제 라이선스')이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i) 특허권자가 공익에 반하는 형식과 방법으로 특허를 행사하거나 ii) 여전히 보호 중인 다른 사용자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특허를 개발할 수 없을 경우에도 '강제 라이선스'가 부여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들로서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내에서 36개월 이내에 취득한 특허를 '구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특허가 강제 라이선스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1.5 상표법상 상표등록 거부 및 불가능한 사유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상표가 본질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다음에 해당되거나 유사한 점이 있는 경우, 상표등록 신청이 거부된다.

| 상표등록 신청에 대한 거부 사유 |

1. 다른 당사자의 소유이거나 유사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다른 당사자가 이전에 등록을 요청한 상표
2.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것으로서, 유사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잘 알려진 상표
3.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것으로서, 동일한 유형이 아닌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잘 알려진 상표
4. 이미 등록된 지리적 표시
5. 권한있는 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명인의 이름, 사진 또는 법인의 이름 또는 약어를 구성하거나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된 경우
6. 관할 기관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국제 기관의 이름 또는 이름 약어, 깃발, 상징 또는 상징을 모방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
7. 관할 기관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 또는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식 서명 또는 인영과 유사한 경우

다음의 7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인도네시아에서 상표등록은 불가능하다.

| 상표등록 불가능 사유 |

1. 국가 이념, 법규, 종교 윤리, 도덕 또는 공공 질서에 반하는 경우
2. 등록 신청 중인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단순히 그것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
3. 등록이 신청 중인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출처, 품질, 유형, 크기, 사용 목적과 관련하여 대중을 오도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4. 상표가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품질, 혜택 또는 효능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5. 식별력이 없는 경우
6. 공공재산의 일반적인 이름 및/또는 상징인 경우
7. 상표에 기능적인 형태를 포함시키는 경우(윌니버스법 제정으로 신설)

1.6 인도네시아 상표권의 보호기간

인도네시아 상표권은 상표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된다. 위 10년이 경과한 경우, 상표권은 다시 10년의 기간으로 그 보호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장을 위해서는 첫 10년의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이내에 상표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만약, 연장신청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연장신청 비용 이외에 지연가산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1.7 특허권 침해 관련 대응방안 등

특허권자는 권한없이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상업법원(Pengadilan Niaga)에 제기되어야 한다.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상업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항소 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Kasasi)만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상업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늦어도 180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특허권의 침해를 입은 특허권자는 상업법원에 잠정결정(Penetapan Sementara)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업법원은 i) 특허 및 특허 관련 권리의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 등의 반입 방지, ii) 특허 분야 위반행위자의 위법행위 증거를 보존 및 멸실 방지, iii)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 위반 행위의 중지를 명하는 잠정결정을 할 수 있다.

특허권의 침해로 인한 재판이 공개되는 경우,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양당사자들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판사는 재량으로 심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

제품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타인의 특허를 이용하여,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 수입, 임대, 양도 등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와 같은 특허 침해행위를 하는 자는 최대 4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1,000,000,000 루피아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순특허(실용신안)와 관련하여서도, 위와 같은 침해행위를 하는 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500,000,000 루피아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허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잠정결정 이외에도 특허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빠른 방법으로 손해를 전보받기 위해서는 특허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실효적일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도 그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입수하게 된 위반 행위 자료 등은 향후 유용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특허를 침해한 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8 상표권 침해 관련 대응방안 등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i) 손해배상소송의 제기, ii) 위법한 상표 사용과 관련된 일체 행위의 금지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소송은 상업법원(Pengadilan Niaga)에 제기된다. 또한, 상표권 침해시, 위법상 상표 사용과 관련된 일체 행위의 금지를 본안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 행위금지청구권에 기초하여 본안 소송의 제기 이후 또는 그와 동시에 한국의 보전처분에 해당하는 행위금지를 구하는 인도네시아 민사소송제도상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목적으로 상업법원의 판사에게 i) 적법한 권한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중지, ii) 배포의 중지, iii) 거래를 중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유지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표권의 침해를 입은 상표권자는 충분한 소명자료에 기초하여 상업법원에 잠정결정(Penetapan Sementara)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업법원은 i)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거래계에 진입되는 것을 방지, ii) 상표 위반과 관련된 증거 보관 iii) 상표 분야 위반행위자의 위법행위 증거를 보존 및 멸실 방지, iv)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위반 행위의 중지를 명하는 잠정결정을 할 수 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는 최대 5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2,000,000,000 루피아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는 최대 4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2,000,000,000 루피아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동일한 상표 또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그로 인하여 보건 및/또는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치사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10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5,000,000,000 루피아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특허의 경우와 달리,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그로 인하여 보건 및/또는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치사의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고소가 필수적이다(친고죄, 상표법 제103조).

2. 영업비밀보호

2.1 인도네시아 영업비밀보호 현황

2000년도에 제정된 「2000년 제30호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2000 TENTANG RAHASIA DAGANG, 이하 “영업비밀보호법”)에서는 i) 영업비밀의 범위, ii) 영업비밀권자의 권리, iii) 영업비밀권과 라이선스의 등록 및 이전, iv) 영업비밀의 침해, v) 영업비밀 분야에 대한 조사권, vi) 형사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영업비밀보호법은 19개 조문으로 제정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차례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법률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인도네시아 영업비밀의 경우, 비밀로서 관리되는 한 그 권리의 보호기간에 제한이 없기는 하나, 영업비밀의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나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 의하여 영업비밀 침해로 판단을 받은 사례도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사후적인 구제수단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으나 한국과 달리 보전처분제도가 실무상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하여 향후 집행을 위한 단계에서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은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영업비밀을 침해당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2.2 인도네시아 영업비밀의 범위

‘영업비밀(Rahasia Dagang)’이란 기술 및/또는 사업 분야에서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사업활동에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영업비밀의 권리자가 비밀로 유지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산업기술을 포함한 거의 모든 유형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등이 개발되어 기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법을 통하여 보호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보호가능한 영업비밀의 예시 |

1. 식품, 음료 등 제조 공식, 방법
2. 화학물질 및 식품의 관리 방법
3. 소비자 목록 / 거래처 명단
4. 채무자의 신용 정보(상환 능력 등)
5. 업무 계획 / 사업 계획 / 마케팅 계획
6. 각종 자료의 표
7. 제조 기술 정보(산업 기술 정보)
8. 디자인 방법
9. 정보 접근 아이디 및 비밀번호
10. 개인 식별 번호
11. 마케팅 자료

2.3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인프라 및 프로세스 구축

현지 진출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 보안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안관리규정의 내용에는 영업비밀의 종류, 대상, 분류, 보안업무의 조직 및 기능, 자산의 분류와 관리, 인적자원관리, IT보안관리, 보안규정 위반시의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 내에 보안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도 있다. 보안조직을 담당하는 자는 영업비밀 등 보안과 관련하여 이해도가 높으면서도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본사의 인력을 인도네시아로 파견하여 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기 또는 수시로 보안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점검사항으로는 i) 자리 이석시 문서를 공개된 상태로 두는지 여부, ii) 문서 캐비닛, 출입문 등에 대한 단속 여부, iii) PC나 노트북의 화면보호 여부, iv) 이동식 저장매체의 사용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의 영업비밀 등이 담길 수 있는 자산의 목록을 분류 관리하고, 자산에 따른 접근가능자와 등급을 정하여 두며, 정기적으로 자산목록을 점검하여야 한다. 기업의 임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등 제3자가 기업의 자산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서약서(영업비밀약정서) 등을 징구하고, 필요 최소한의 자산에만 접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의 체결 및 종료시 임직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영업비밀약정서 등)를 징구하고,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영업비밀 유출 등에 관한 경각심을 제고시켜야 한다. 특히, 핵심 기술 인력의 퇴직 등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동종업계 취업금지 또는 동종업무 수행금지를 담은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약정서에 포함시켜 두어야 한다.

2.4 영업비밀 침해시의 대응방안 등

영업비밀권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i) 손해배상소송의 제기, ii) 위법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일체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소송은 지방법원(Pengadilan Negeri)에 제기된다.

영업비밀이 재판 과정을 통하여 일반에 널리 공개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더 이상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상실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원고는 판사에게 비공개 심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판사는 재량으로 심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명령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영업비밀권자로서는 위와 같이 재판의 비공개를 신청할 권한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법원에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권한없이 타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자, 그리고 고의로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또는 관련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비서면의 형태를 불문하고 합의된 사항 또는 계약의 준수를 거부하는

자 및 법령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보유한 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300,000,000 루피아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행위의 금지 청구 이외에도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영업비밀권자의 고소가 있게 되면, 손해의 전보를 위한 합의가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도 그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입수하게 된 위반행위 자료 등은 향후 유용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한 고소는 매우 실효적인 측면이 있다.



VI. 세무 관리

1. 인도네시아 조세 관련 법령 개관
2. 조세기본법
3. 법인소득세
4. 개인소득세
5. 원천징수
6. 부가가치세
7. 기타 중요 세무

1. 인도네시아 조세 관련 법령 개관

인도네시아 조세 관련 분야는 i) 조세기본법, ii) 소득세법, iii)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법, iv)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취득세법, v)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재산세법 등을 기본법으로 하여, 위 당해 기본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각종 하위 법령에 근간을 두고 규율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조세기본법의 경우, 조세 행정의 기본 절차, 세무신고, 세무조사 등을 다루고 있는 법률로서 1983년 법률 제6호로 최초로 제정된 후, 증보방식으로 3차례의 개정이 거듭되었고 2009년 법률 제16호(Undang-Undang Nomor 16 Tahun 2009 tentang Penetapan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5 Tahun 2008 tentang Perubahan Keempat atas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Menjadi Undang-Undang)로 대폭 개정(4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후 2020년 11월 2월 제정된 옴니버스법 제113조에 의하여 조세기본법의 일부 조항이 다시 개정되었다.

인도네시아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1983년 법률 제7호(Undang-Undang Nomor 7 Tahun 1983 tentang Pajak Penghasilan)로 최초의 제정된 후, 증보방식으로 3차례의 개정이 거듭되어 오다가, 2008년 법률 제36호(Undang-Undang Nomor 36 Tahun 2008 tentang Perubahan Keempat atas Undang-Undang Nomor 7 Tahun 1983 tentang Pajak Penghasilan)로 4차 개정이 이루어졌던 바 있다. 그러다가, 2020년 11월 2월 제정된 옴니버스법 제111조에 의하여 소득세법의 일부 조항이 다시 증보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은 한국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내용을 하나의 법률 내에 담고 있다.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법의 경우, 1983년 법률 제8호(Undang-Undang Nomor 7 Tahun 1983 tentang Pajak Penghasilan)로 최초의 제정된 후, 증보방식으로 2차례의 개정이 거듭되어 오다가, 2009년 법률 제42호(Undang-Undang Nomor 42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8 Tahun 1983 tentang Pajak Pertambahan Nilai Barang dan Jasa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로 3번째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2020년 11월 2월 제정된 옴니버스법 제112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법의 일부 조항이 다시 증보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인도네시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취득세법의 경우, 1997년 법률 제21호(Undang-Undang Nomor 7 Tahun 1983 tentang Pajak Penghasilan)로 제정된 후, 그 법률의 규정 중 일부가 2000년 법률 제20호(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00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21 TAHUN 1997 TENTANG BEA PEROLE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재산세법의 경우, 1985년 법률 12호로 제정된 후, 그 법률의 규정 중 일부가 1994년 법률 제12호(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2 TAHUN 1994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12 TAHUN 1985 TENTANG PAJAK BUMI DAN BANGUNAN)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2. 조세기본법

2.1 세무신고 및 기장

인도네시아 세법상 납세자는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납세자는 법령에 규정된 신고서 양식에 따라 인도네시아어, 라틴문자, 아랍숫자 및 루피아 화폐단위를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서뿐만 아니라 경리 장부의 작성 및 기타 부속 명세서의 작성도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여 루피아 화폐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재무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와 미 달러화(USD)로 장부의 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영어와 외국 화폐단위로 계산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영어와 미 달러화(USD)로 장부 기장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영어와 달러화로 기장 승인 신청 가능한 자 |

1. 외자투자(PMA) 법인
2. 광업법 규정에 따른 Contract of Work
3. 가스오일 분야의 Production Sharing Contractor
4. 고정사업장
5. 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인도네시아 회사
6.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국외의 모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소재 자회사

2.2 세무신고의 종류, 기한

인도네시아 세법상 세무신고는 i) 월차신고와 ii) 연차신고로 구분된다. 월차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세목(인도네시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익월 20일까지 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개인의 연간 소득세에 대한 신고는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의 연간법인세 신고는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대한 신고는 익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월차신고 및 신고기한 |

세목	신고기한	납부기한
소득세- 개인소득세(원천징수)	익월 20일	익월 10일
소득세- 법인원천징수세	익월 20일	익월 10일
소득세-월할선납법인세	익월 20일	익월 10일
소득세-징수의무자(수입세)	익월 20일	익월 10일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	익월 말일	신고기한 전

| 연차신고 및 신고기한 |

세목	신고기한	납부기한
개인소득세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신고기한 전
법인소득세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신고기한 전

2.3 지연 세무신고에 따른 과태료, 과소납세 및 지연납세에 따른 가산세

월차신고 및 연차신고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i) 개인인 납세자의 사망, 사업활동 중단, ii) 외국인 납세자의 인도네시아 비거주, iii) 고정사업장이 인도네시아 영역 내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iv)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청산 미완료의 법인 납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정을 이유로 지연신고 또는 미신고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자연 또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

자연 또는 미신고 세목	과태료(Rp)
각종 월차신고	100,000
개인소득세 연차신고	100,000
법인소득세 연차신고	1,000,000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 신고	500,000

구 조세기본법 제9조에서는 납세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납세와 관련하여 납기일로부터 실제로 납세일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이 때 1개월이 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그 전부를 1개월 전체로 계산하여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구 조세기본법 제9조 제2a항). 또한, 세금신고서 제출 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납세에 대해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월 2%의 비율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구 조세기본법 제9조 제2b항).

옴니버스법 제113조로 개정된 조세기본법에서는 과소 납세 및 자연 납세와 관련된 제재를 변경하였다. 즉, i) 납세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납세 및 ii) 세금신고서 제출 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납세에 대해서 재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가산세를 부과하는 최대의 기간을 24개월 한정하였고 이 경우 1개월이 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그 전부를 1개월 전체로 계산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조세기본법 제9조 제2a, 2b항).

가산세율의 경우,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조세기본법에서는 “기준 금리 + 5%”의 이자율을 12 등분한 값을 월 가산세율로 적용하도록 하였다(조세기본법 제9조 제2c항).

2.4 수정신고

납세자는 이미 제출된 신고서의 내용을 자신 수정하여 재신고할 수 있다. 다만, 수정신고는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기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한편, 수정신고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한 이후에야 비로소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기준 금리 + 5%의 이자율을 12등분한 비율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때 1개월이 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그 전부를 1개월 전체로 계산하여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납기일로부터 실제 추가 세액 납부일까지 2개월 5일이 경과하였다면, 총 3개월을 지연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계산되는 것이다.

3. 법인소득세

3.1 납세의무자

인도네시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법인의 형태에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등은 거주 납세의무자와 유사한 조세 의무를 부담한다. 옴니버스법 제111조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2조 제4항에서는 세법상 비거주자(국외과세대상)를 i)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 ii) 12개월간 183일을 초과하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iii) 거소, 주된 활동 장소, 생활 장소, 과세 상태 및/또는 기타 요건을 충족하면서 12개월간 183일 이상을 인도네시아 외부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iv)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지 않고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아니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인도네시아를 소득의 원천으로 하여 소득을 수취하거나 인도네시아 내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원천으로 하는 소득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된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가장 큰 차이는 거주자의 경우 비거주자와 달리 인도네시아 내외를 불문하고 취득한 소득 전부가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는 점이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를 원천으로 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3.2 고정사업장

인도네시아 세법상 비거주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된다. 인도네시아 내에서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활동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활동을 시작할 때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고정사업장을 통한 사업/활동을 중지하면 그 때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 소득세법상 고정사업장 예시 |

☒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활동을 할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행하는 형태

1. 지점
2. 대표사무소
3. 공장
4. 정비소
5. 창고
6. 판촉이나 판매를 위한 전시장
7. 광물채굴장소
8. 원유와 천연가스 채굴장소
9. 농업, 어업, 축산업, 플랜테이션, 임업
10. 건설, 설치, 프로젝트 수행지
11. 12개월 중 60일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12. 독립적이지 않은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개인이나 법인
13. 외국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 대표사무소 또는 대리인을 통해 보험료 등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그 장소 또는 개인
14. 컴퓨터, 전자매체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사업의 목적인 전자상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장소

3.3 법인세 과세 대상

법인세의 과세 대상 소득은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능력과 부의 증대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소득을 의미한다. 과세 대상 소득은 세전 수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과세대상 소득의 예시 |

1. 사업소득
2. 자산의 매각이나 이전에 따른 소득
 - 회사, 파트너십 및 다른 형태의 법인에 자산을 이전하고 주식이나 지분 참여의 대가를 받는 경우 그에 따른 이익
 - 청산·합병·결합·사업확장·분할·사업양수도 또는 사업형태 변경 등 형식과 명칭을 불문하고 이러한 거래로부터 얻는 이익
 - 광업권(Hak Penambangan)이나 광업 회사에 대한 재무적 참여권 또는 참여 지분의 일부 또는 전체를 매각·이전함에 따른 이익

3. 이미 비용으로 처리된 세금의 환급금
4. 이자수익 등
5. 배당금
6. 조합의 이익 분배금
7. 권리의 사용에 따른 로열티 및 사용료
8. 자산 사용에 따른 임대료 등
9. 채무면제 이익
10.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
11. 자산 재평가 차익

3.4 손금 산입

법인소득세 산정을 위한 소득 산정과 관련하여, 과세 대상 이익을 취득, 입수 및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손금으로 산입되어 소득에서 공제된다.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 손금산입되는 비용의 예시 |

1. 사업활동의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 재료비
 - 급여, 보너스 등 금전으로 지급하는 근로 및 용역의 대가
 - 이자, 임대료 및 로열티
 - 여비
 - 폐기물 처리비용
 - 납입보험료
 - 재무부장관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광고비
 - 일반관리비
 - 소득세를 제외한 조세
2. 감가상각비
3.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설립된 연금펀드에 납입하는 납입금
4. 회사가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유하던 자산의 이전, 매각 손실
5. 외환 손실(환율 변동)
6. 인도네시아에서 집행되는 연구개발비용
7. 교육훈련비

8. 대손상각비
 -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되었을 것
 - 회수 불능 채권 목록의 제출
9. 국가 재난 방지 목적의 기부
10.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 개발을 위한 기부
11. 사회간접자본 개발 목적의 투자
12. 교육시설 지원 목적의 기부
13. 체육시설 건설 목적의 기부

3.5 손금 불산입

다음의 예시와 같은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를 위한 비용으로 산입되지 아니한다.

| 손금불산입되는 비용의 예시 |

1.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2. 원칙적으로 현물급여, 편의제공과 같이 비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고, 근로자의 소득으로도 간주되지 아니함
 - ※ 다만, 아래의 사항은 비현금성 급여라고 하더라도 손금 산입 가능
 - 모든 종업원에 제공되는 음식료
 -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방호복, 작업복, 선박 승무원에 대한 숙박 장소 제공
 - 산간벽지에서 제공되는 현물 지급 비용
3. 사적 비용
4. 사업과 관련이 없는 선물 및 기부(종교적 기부는 예외)
5. 아래의 사항을 제외한 총당금(원칙적으로 총당금 설정액은 손금에 불산입)
6.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7. 보험회사의 총당금
8. 예금보험기관의 총당금
9. 광업회사의 복구충당금
10. 산림협회 산림준비금
11. 산업폐기물 처리회사의 처리장 폐쇄 및 복구 관련 총당금
12. 소득세 납부액
13. 조세 미납,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가산금, 가산세
14. 은행예치금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

3.6 유형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을 인식한다.

유형자산의 경우,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유형자산의 구매, 건설, 증설, 수선 및 개조와 관련된 비용은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을 배분하여 인식한다. 토지에 관한 권리, 즉, 토지에 대한 소유권(HM), 건축권(HGB), 경작권(HGU), 사용권(HP) 취득을 진행하는 토지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다.

감가상각의 방법으로는 정액법 또는 정률법(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잔존가치가 없도록 적용) 중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하나, 다만 건물의 경우에는 정액법만을 사용할 수 있다.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하고, 감가상각은 해당 자산의 구매 등을 위하여 비용의 지출이 발생한 월 부터 시작된다. 건설 중인 자산의 경우 건설이 완료된 월에 감가상각을 개시한다.

감각상각이 적용되는 유형자산의 분류별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유형자산 분류별 예시 |

분류	유형자산
Category 1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가구 및 목재 비품, 사무실 비품, 오토바이, 특수 산업·서비스용 특수 공기구, 주방 기구, 농림어업용 수작업 공구, 음식료 산업용 경량 기계, 공공 운송업용 차량, 반도체 산업용 공구, 심해 정박 장비 렌탈용 기구 비품, 휴대전화 기지국 장비
Category 2	금속기구 및 기구, 에어컨, 승용차, 버스, 트럭, 스피드 보트, 컨테이너 류, 농림어업용·식료품용 기계, 경량 기계, 벌목 기구, 건축용 도구, 운송·창고용 중장비, 통신 공구, 반도체 산업용 공구, 심해정박장비 렌탈용 기구 비품, 휴대전화 서비스용 공구
Category 3	일반 광산업용 기계(석유가스 제외), 봉제·목재·화학공장·기계 제작 사업용 기계, 운송·통신용 중장비, 부두설비 및 선박, 기타 다른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
Category 4	건설용 중장비 기계, 기관차, 철도 운송도구, 대형선박, 부두



위 유형자산 분류별로 적용되는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 분류별 내용연수와 상각률(무형자산의 경우에도 동일) |

분류	내용연수	정액법 상각률	정률법 상각률	비고
건물(상설)	20년	5%	-	토지·건물 취득세(BPHTB)를 취득원가에 포함
건물(비상설)	10년	10%	-	
Category 1	4년	25%	50%	
Category 2	8년	12.5%	25%	
Category 3	16년	6.25%	12.5%	
Category 4	20년	5%	10%	

3.7 무형자산 감가상각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으로는 영업권과 토지에 관한 권리(건축권, 경작권, 사용권)의 연장 비용이 포함된다. 해당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유형자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Category 1, Category 2, Category 3, Category 4로 구분하여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사용하여 상각한다.

1년 이상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있는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권의 취득비용은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여 상각한다.

1년 이상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있는 광업권, 조림권 및 기타 천연자원 개발권은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여 상각하되, 다만 연간 상각비가 총액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8 법인소득세율 및 계산

법인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 법인소득세의 경우, 개인소득세와 달리 단계별 누진방식이 아니라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25%의 법인세율이, 2020, 2021, 2022년에는 22%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당초 2022년에는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21년 10월 소득세법 개정에 의해 변경)

4. 개인소득세

4.1 납세의무자

인도네시아 세법상 거주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급여 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i)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둔 개인, ii) 12개월간 183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iii) 거주, 주된 활동 장소, 생활 장소, 과세 상태 및/또는 기타 요건을 충족하면서 12개월간 183일 이상을 인도네시아 내에서 거주하는 개인에 해당하면 세법상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4.2 개인인 거주자의 소득세율

인도네시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 과표에 따른 소득세율 |

연간 과세표준(Rp)	세율
0 ~ 60,000,000	5%
60,000,000 ~ 250,000,000	15%
250,000,000 ~ 500,000,000	25%
500,000,000 ~ 5,000,000,000	30%
5,000,000,000 ~	35%

5. 원천징수

5.1 원천징수 제도 개관

원천징수는 거래단계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종류에는 i) 근로자의 급여 지급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PPh 21), ii) 수입 등의 거래행위에 대한 원천징수(PPh 22), iii) 특정 국내 거래행위에 대한 원천징수(PPh 23), iv)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PPh 26), 그리고 v) 특정 사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서 최종 분리 과세 성격의 원천징수{PPh 4(2)}가 있다.

5.2 개인 급여 소득 등 원천징수(PPh 2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급여 등 임금성 금융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5.3 수입 등 거래행위에 대한 원천징수(PPh 22)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되는 세액은 향후 납세자의 연말 법인세 신고시 기납 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므로, PPh 22는 소득세의 선납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수입행위 별 세율에 대해서는 PPh 22에 관한 가장 최신의 규정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10 /PMK.010/2018 규정의 첨부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 수입행위에 대한 세율 관련 첨부 목록 예시 |

A. DAFTAR IMPOR BARANG-BARANG TERTENTU YANG DIKENAKAN PEMUNGUTAN PAJAK PENGHASILAN PASAL 22 SEBESAR 10% (SEPULUH PERSEN)

No	Nomor HS	Uraian Barang
1	3303.00.00	Parfum dan cairan pewangi.
2	3304.10.00	- Preparat rias bibir
3	3304.30.00	- Preparat manikur dan pedikur
4	3304.91.00	- - Bubuk, dipadatkan maupun tidak
5	3304.99.20	- - - Preparat anti jerawat
6	3304.99.30	- - - Krim dan losion lainnya untuk wajah atau kulit
7	3304.99.90	- - - Lain-lain
8	3305.10.10	- - Mengandung khasiat anti jamur
9	3305.10.90	- - Lain-lain
10	3305.20.00	- Preparat pengeriting atau pelurus rambut secara permanen
11	3305.30.00	- Lak rambut

5.4 특정 국내거래에 대한 원천징수(PPh 23)

특정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거주자인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되어야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제23조에 따라 지급 총액의 15% 또는 2%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되고, 금액을 지급하려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 특정 국내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의 경우에도 소득세의 선납 성격을 가지고 있다.

| 15% 원천징수세율 거래행위 |

✓ 15% 세율 적용대상

1. 배당(원칙적으로 15% 대상)
2.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보증수수료를 포함한 이자
3. 로열티
4. 포상금 및 상금

| 2% 원천징수세율 거래행위 예시 |

✓ 2% 세율 적용대상

1. 토지, 건물을 제외한 자산의 임대
2. 기술서비스
3. 경영서비스
4. 컨설팅서비스
5. 감정평가서비스
6. 회계, 장부기장 서비스
7. 설계 서비스
8. 석유 및 가스 시추 서비스(고정 사업장이 수행하는 경우 제외)
9. 지열, 석유 및 가스 시추 관련 지원 서비스
10. 석유 및 가스 이외의 광산 서비스
11. 항공 운송 및 공항 서비스
12. 산림 채벌 서비스
13. 폐기물 처리 서비스
14. 인력 공급/아웃소싱 서비스
15. 중개/에이전시 서비스
16. 증권거래 및 예탁 서비스
17. 사운드 더빙 서비스
18. 필름 믹싱 서비스
19.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시스템 서비스
20. 설치 용역 서비스(예를 들어, 전기, 기계 또는 통신장비). 단, 허가받은 건설
21. 회사가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22. 유지 보수 서비스(예를 들어, 전기, 기계 또는 통신장비). 단, 허가받은 건설
23. 회사가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24. 위탁 제조 서비스
25. 검사 및 보안 서비스
26. 이벤트 제공 서비스
27. 포장 서비스
28. 대중 매체, 옥외 광고 매체 및 기타 매체에 정보 송출을 위해 장소 또는 시간

29. 제공 및 광고
30. 해충 구제 서비스
31. 청소 서비스
32. 케이터링 서비스

5.5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PPh 26)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납세자, 단체 및 외국회사의 대표사무소는 비거주자에게 다음의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될 총액을 기준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소득을 취득하는 비거주자가 인도네시아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협약의 내용에 따라 위 20%의 세율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 총액 기준 20%의 세율 대상 |

1. 배당
2. 프리미엄·디스카운트·보증 수수료를 포함한 이자
3. 로열티, 임차료 및 자산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
4. 서비스, 작업 및 활동에 대한 수수료
5. 상금 및 포상금
6. 연금과 다른 정기적 지급
7. 스왑 프리미엄과 다른 헤지 거래
8. 채무 면제 이익

5.6 최종 분리 과세 성격의 원천징수[PPh 4(2)]

세법상 거주자인 법인 등이 납세자와 고정사업장에게 특정한 소득(예를 들면, 아파트 임대료)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고, 최종적으로 분리하여 과세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의 이행이 완료되면 그 시점에 납부의무가 종결된다.

6. 부가가치세

6.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등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Pengusaha Kena Pajak: PKP)는 법률이 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과세사업자(PKP)는 i) 사업 내역 신고 의무, ii)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iii)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거래 징수 및 납부 의무, iv)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데, 위 의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세사업자(PKP)는 부가가치세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과세사업자(PKP)는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수출 포함)하는 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상인 자이다. 연간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과세사업자의 지위를 보유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이지만, 정책에 따라 예외적으로 5% 내지 15%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도 있다(인도네시아 정부 10% 유지). 인도네시아의 입장에서 용역의 수출에 해당하는 등 제한적인 부분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부가세 과세 대상 |

구분	내용
재화의 공급	과세지역 내에서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
	과세사업자에 의한 과세대상 유형 재화 수출
	과세사업제 의한 과세대상 무형 재화 수출
용역의 공급	과세지역 내에서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
	과세사업자에 의한 용역의 수출
재화의 수입	과세 대상 재화의 수입
	과세 대상 무형 재화의 수입
용역의 수입	과세 대상 용역의 수입

6.2 부가가치세 비과세 재화 및 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과세의 대상이 아니고,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고의무도 없다.

| 부가세 비과세 재화 및 변경 사항 |

1. 자연상태에서 직접 채굴된 광물
 - 원유, 천연 가스(LPG 형태로 직접 소비 가능한 것은 제외), 지열, 석면, 슬레이트, 보석류, 석회석, 경석, 백운석, 암염, 석목, 철광석, 금, 니켈, 은 (기존 석탄도 부가세 비과세 재화에 포함)
 - ※ 옴니버스법 제112조에 의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석탄은 기존과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되었다.
2. 기초 생활 필수품
 - 쌀, 벼, 옥수수, 콩, 소금, 미가공육(절단, 냉장, 냉동 포장 수준의 가공육 포함), 미가공 신선란 (세척, 염장, 포장 수준의 가공란 포함), 우유, 과일류(세척, 껍질 제거, 절단 수준의 가공을 포함 하며 포장 여부는 불문), 채소류
3. 호텔, 식당 등에서 제공되는 식음료 및 케이터링 서비스
 - 현장에서 소비되는지 여부 불문
4. 화폐, 금괴, 유가증권
5. 위탁판매(신규)
 - ※ 옴니버스법 제112조에 의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위탁판매를 위한 재화의 이동에 대해서는 부가세 비과세임
6. 현물출자(신규)
 - ※ 옴니버스법 제112조에 의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분할, 인수 및 합병에 따른 재화의 이동이나 과세대상 재화로 자본금을 납입(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세 비과세임

| 부가세 비과세 용역 |

1. 보건 의료 용역
 - 일반 의사·전문 의사·치과 의사·수의사의 의료 용역, 영양사·보철사·침술사·물리 치료사 등 보건 기술자의 보건 용역, 조산원의 보건 용역, 간호사·준 의료 종사자(Paramedis)의 보건 용역, 병원 조산소·건강 클리닉·임상 병리 등의 보건 용역, 심리 치료 용역, 대체 의료
2. 사회봉사서비스
 - 고아원·양로원 등의 서비스 용역, 소방 용역, 사고 긴급 구조 용역, 갱생 조직 용역, 장례식장 제공 또는 장례 서비스 제공 용역, 상업적 목적이 아닌 체육 분야
3. 우표 사용 우편서비스
4. 금융서비스
5. 보험서비스

6. 종교서비스
7. 교육서비스
8. 문화, 예술 관련 용역
9. 광고를 제외한 방송 용역
10. 육상, 해상, 국제항공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국내선 교통
11. 인력용역서비스
12. 호텔서비스
13. 정부 제공 공공서비스
14. 주차서비스
15. 우편환, 전신환 이용 송금서비스
16. 출장 급식서비스

6.3 매입 및 매출 부가가치세 정산

부가가치세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과세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위 부가가치세는 매출부가세가 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위 부가가치세가 매입부가세가 된다.

위 재화 또는 용역이 구매자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구매자가 지출한 매입부가세액은 다시 그 구매자가 과세사업자로 발생시킨 매출부가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의 과세사업자의 동일기간 동안 총 매출부가세가 총 매입부가세를 초과한다면, 당해 과세사업자는 그 초과된 차액을 익월 말 부가세 신고기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그와 달리, 만약 과세사업자의 동일기간 동안 총 매출부가세가 총 매입부가세에 미달하게 된다면, 당해 과세사업자는 이월하여 공제를 하거나 매년 말 연도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및 변경 내용 |

1. 과세사업자의 지위가 확정되기 이전의 매입세액 중 일부(20%)
 - ※ 기존, 인도네시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내역신고를 통해 과세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
 - ※ 옴니버스법 제112조에 의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 지위 확정 이전 발생한 매입세액의 경우,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매출세액의 80%까지 공제 가능하게 되었다.
2.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4. 적법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형식적 요건 및 실질적 요건 모두 구비 필요
 - 필요적 기재사항
 -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이름, 주소, NPWP
 - 매입자의 이름, 주소, NPWP 또는 신분증 번호(옵니버스법 신규 추가)
 -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수량, 공급가액 및 할인액
 - 부가가치세 금액
 - 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금액
 - 세금계산서 코드, 일련번호 및 발행일자
 - 권한있는 서명권자의 이름과 서명
5. 세무조사로 세액 확정결정서가 발급된 경우
 - 세무조사의 결과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이 세무당국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기간에 속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6. 세무조사 중 누락되었던 매입세액이 새로 발견된 경우(변경)
 - ※ 기존, 세무조사 중 누락되었던 매입세액이 새로 발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였다.
 - ※ 옵니버스법 제112조에 의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i)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매입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신고서에 누락된 항목이 발견된 경우 공제 가능하고, ii) 세무조사, 세무확인서 등에 따라 납부하지 않았던 매입세액에 대한 고지서가 발행되는 경우 그 고지서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게 되었다.
7. 상업생산 이전 매입세액 관련(변경)
 - ※ 기존, 상업생산 이전 취득한 '자본재'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자본재 이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였다.
 - ※ 옵니버스법 제112조에 의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상업생산 이전의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하게 되었다.

6.4 부가가치세 환급

과세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말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환급을 위하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세에 의하여 성실납세자(Wajib Pajak Patuh)로 분류된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7. 기타 중요 세무

7.1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부동산세(Pajak Bumi dan Bangunan; PBB)가 부과된다. 위 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건물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세 제외 토지 및 건물 |

1. 행정 목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용 부동산
2. 종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화, 비영리 목적의 영역에서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
3. 묘지, 고고학 유적지 등 그와 유사한 것
4. 보호삼림, 자연보호지구, 관광목적의 삼림, 국립공원
5.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교 공관의 토지와 건물
6. 재무부에서 승인한 국제기구의 토지와 건물

부동산세는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의 수입인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과세통지서(Surat Pemberitahuan Pajak Terhutani; SPPT)에 기초하여 매년 납부되어야 한다. 세율은 최고 0.3% 이다.

7.2 토지 및 건물 이전 관련 세금

토지 및 건물의 매매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판매에 따른 인정이익 소득세가 발생한다. 인정이익 소득세는 총 이전대가(과세표준)의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매도인의 매매에 따른 인정이익 소득세는 최종분리과세의 형태로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매매증서(AJB)상에 기재된 매매가격과 부동산과세적용가액(Nilai Jual Objek Pajak; NJOP) 중에 더 큰 금액이 된다.

7.3 토지 및 건물 취득시 세금

토지 및 건물의 매매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권리 취득에 따라 취득세(Bea Pengali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 BPHTB)를 부담하여야 한다. 위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에서 비과세상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5% 이다. 비과세상한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다.

과세표준은 부동산취득적용가액(Nilai Perolehan Objek Pajak: NPOP) 또는 시장가치 중 더 큰 금액이 된다.

7.4 배당 관련 소득세 비과세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배당과 관련하여, 기존 개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최종분리과세의 형태로 10% 세율이 적용되었고, 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이 주식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비과세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옴니버스법 제111조에 의하여 소득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i) 개인의 경우, 개인이 수령한 국내배당소득을 일정기간 동안 전부 인도네시아에 재투자하는 경우임을 전제로 배당이 비과세 소득이 되었고, ii) 법인이 수령한 국내배당소득은 별도의 요건없이 비과세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해외 배당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과세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옴니버스법 제111조에 의하여 소득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외법인 또는 고정사업장으로부터 수령한 해외배당이 일정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재투자되는 경우임을 전제로, i) 인도네시아 재투자된 금액은 비과세, ii) 재투자된 금액이 해외법인의 세후순이익의 30%보다 작은 경우, “세후순이익의 30% - 재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iii) 위 i) 및 ii)를 제외한 해외법인의 세후순이익은 비과세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인도네시아 투자실무가이드



VII. 인도네시아 ESG 동향

- 1. ESG 개별 요소 관련 인도네시아 현황
- 2. ESG 관련 법령의 개관
- 3. ESG 권장을 위한 인도네시아 기관의 정책과 그 영향

1. ESG 개별 요소 관련 인도네시아 현황

1.1 환경 요소

인도네시아는 연중 약 7개월에 걸친 우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물 부족 국가에 해당하지는 않고, 수원에 대한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였다(2015년 기준).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인구의 약 84%가 공동 거주 구역 또는 주거지로 직접 공급되는 공급원에 접근할 수 있었다.²⁴⁾ 다만, 물과 관련하여 위생, 오염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로 보인다. 열악한 위생 관리와 느슨한 규제 및 감독은 수로 오염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해석된다.

식량 부분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쌀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The Economist의 Global Food Security Index에서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대상 113 개국 중 69 위).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연간 약 200 만톤의 쌀을 순수입하고 있다.

에너지 및 전력 부분과 관련하여, 풍부한 천연 자원 기반을 갖춘 인도네시아는 도시의 100%와 농촌 인구의 94.8%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고, 국영기업인 Perusahaan Listrik Negara (PLN)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전기를 공급 및 분배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수력, 바이오 연료를 이용한 발전, 지열, 풍력 및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의 약 23%의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온실가스 및 탄소 배출량의 측면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상당히 많은 전력을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작물 경작 방식에 있어서 화전을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전세계에서 온실가스 및 탄소 배출량 상위권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대비 29%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1.2 사회적 요소

인도네시아 노동인구와 관련하여 인구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억 7천만명(비공식적으로 3억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자

24) <https://www.westernasset.com/us/en/pdfs/whitepapers/esg-indonesia-case-study-2019-02.pdf>

로도 존재)으로 전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고, 평균 연령은 약 28세로 생산가능 인구의 지속적인 확대가 가능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성의 건강, 권한 부여 및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UN 개발프로그램은 2017년 인도네시아의 GII (Gender Inequality Index) 지수를 0.453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전세계 대상 160개국 중 104위에 해당하였다.²⁵⁾ 고용시장에서는 노동가능 연령층 기준 남성의 81.8%가 고용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50.7%만이 고용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2000년 이후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강력한 속도로 성장했지만 성장의 이익은 고르게 분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소득불평등도는 아시아 국가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빈곤층을 위한 교육, 건강 및 소액 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꾸준히 늘려왔다.

부패의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의 부패는 여전히 큰 문제이다. 국제 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부패도는 전세계 180 개국 중 89위에 해당하였다.²⁶⁾ 그러나, 2004년에 설립된 반부패위원회(KPK: Komisi Pemberantasan Korupsi)의 활동으로 인해 부패는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KPK의 설립 이래 KPK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무죄로 판단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그동안 122명의 국회의원, 25명의 장관, 17명의 주지사, 51명의 시장과 군수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절차를 시행하고 간소화하려는 인도네시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료주의적 규제와 부패는 여전히 고질적인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이다.

1.3 지배구조적 요소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기업의 지배구조 및 관리하는 회사의 기관은 i) 이사회, ii) 감사위원회, iii) 주주총회로 구성된다.

“이사회(Direksi)”란 회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관리에 대한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회사의 기관으로서,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재판상 및 재판외에서 회사를 대표한다.

25) <https://www.westernasset.com/us/en/pdfs/whitepapers/esg-indonesia-case-study-2019-02.pdf>

26) <https://www.westernasset.com/us/en/pdfs/whitepapers/esg-indonesia-case-study-2019-02.pdf>

“감사위원회(Dewan Komisaris)”란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일반적 및/또는 특별한 방법으로 감사를 행할 임무를 가진 회사의 기관으로서, 이사회에 조언을 할 임무를 담당한다.

RUPS’라고 약칭되는 “주주총회(Rapat Umum Pemegang Saham)”는 주식회사법 및/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으로 부여되지 아니한 권한을 보유하는 회사의 기관을 말한다.

이사회는 1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이사회는 회사의 목적에 부합하게 그리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이사회가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경우, 이사들 사이의 업무 및 관리 권한 분담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회사의 운영은 개개의 모든 이사가 신의성실 및 충분한 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임무를 해태하거나 또는 잘못이 있는 경우, 개개의 모든 이사는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이사회가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경우, 개개의 모든 이사는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감사위원회는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되는데,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위원회로서만 기능하고, 개개의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공공자금을 모으거나 및/또는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사업활동을 하는 회사, 또는 상장회사는 반드시 최소한 2인의 감사를 보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구성원(감사)은 주주총회에서 선출되는데, 감사의 임명, 교체 및 해임 절차는 정관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하고, 감사 후보자의 지명 절차에 관하여도 정관에 규정될 수 있다. 이사회에 의한 운영에 대하여 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감사위원회의 잘못 또는 해태가 있고 그로 인하여 회사가 파산이 되고, 그리고 회사의 자산으로 회사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개개의 모든 감사는 위 원제되지 않고 남은 모든 채무에 대하여 이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주주총회는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또는 개별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부여되지 아니한 권한을 가지는데, 회사 지배구조에 있어서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연간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로 구성되는데, 정기 주주총회는 반드시 회계연도의 말일 지난 이후 늦어도 6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임시 주주총회는 회사의 이익과 필요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최될 수 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1/10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는 이사의 잘못 또는 해태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초래되었음을 이유로, 회사의 명의로 이사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모든 의결권 있는 주주가 관련된 제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서명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구속력 있는 결의를 할 수 있다.

2. ESG 관련 법령의 개관

2.1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및 관련 하위법령상의 내용

인도네시아에서의 기업활동은 주로 '주식회사(PT)'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의 경영활동 및 지배구조는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UU 40/2007)에서 규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에서는 사업자의 기업활동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 실현을 구체화하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에 의하면,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Tanggung Jawab Sosial dan Lingkungan)”이란 회사 자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위한 목적으로 삶의 질과 환경을 유익하게 개선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참여하고 역할을 이행하겠다는 회사의 헌신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환경적 책임의 구체화를 위하여, 주식회사법에서는 모든 주식회사로 하여금 회사의 연간보고서 제출시, i) 재무제표, ii) 회사의 사업활동에 관한 보고서뿐만 아니라 iii) 사회적·환경적 책임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즉, 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회계 연도가 종료된 이후 늦어도 6월 이내에 감사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연간보고서를 주주총회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연간보고서의 내용에 반드시 사회적·환경적 책임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식회사법에서는 천연자원 분야 및/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사는 반드시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환경적 책임은 타당성과 공정성을 감안하여 이행되는 것으로서, 회사의 비용으로서 회사의 예산에 반영되고 회사에 의하여 계산되어지는 회사의 의무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적 제재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2012년 제47호 행정부령(PP 47/2012)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적·환경적 책임의 이행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반드시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주식회사법에서는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의 실현을 위하여 이사회 및/또는 경영진의 각종 역할과 의무, 이사의 독립, 이사의 책임, 감사위원회의 감독 등 역할, 감사의 책임, 주주총회의 역할 등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2.2 인도네시아 투자법

인도네시아 투자법에 의하더라도, 투자 실현시 사회적·환경적 책임 및 건전한 기업지배의 원칙을 실현할 것을 투자자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생불가능한 자연자원을 채취·채굴 하는 사업을 하는 투자자의 경우, 제반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연자원을 채취·채굴한 장소의 생활 환경이 적합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그 복구·복원을 위한 자금을 단계적으로 할당 및 분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자의 책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투자자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 투자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자의 책임 내용 |

1. 제반 법령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출처로부터 준비된 자본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2. 투자자가 일반적으로 사업 활동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방지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의무와 손해에 대하여 제반 법령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고 종결하여야 한다.
3. 공정한 경쟁의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고, 독점과 기타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생활환경의 연속성을 보호하여야 한다.
5. 노동자의 안녕, 건강, 편안 및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6. 제반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3 기타 관련 법령

위와 같은 법령상의 근거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사회적·환경적 책임의 이행 및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의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마련된 법령의 규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기타 사회적·환경적 책임의 이행 및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원칙의 실현 위한 법령 |

1.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2. 근로기준법
3. 주식회사법
4. 투자법
5. 공개기업 주주총회 개최 등에 관한 OJK 규정
6. 상장회사 또는 공개기업의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OJK 규정
7. 공개기업의 기업 내부 지배구조에 관한 OJK 규정

8. 상장회사 또는 공개기업의 보수 관련 위원회에 관한 OJK 규정
9. 보험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에 관한 OJK 규정
10. 금융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에 관한 OJK 규정
11. 일반 은행의 최소 자본 규정에 관한 OJK 규정
12. 공개기업의 전자적 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OJK 규정

3. ESG 권장을 위한 인도네시아 기관의 정책과 그 영향

3.1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BEI)의 ESG 정책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는 2019. 4. UN 지속가능한 증권거래소(Sustainable Stock Exchanges; SSE) 이니셔티브에 가입하였다.²⁷⁾ SSE 이니셔티브는 2009년 유엔 산하의 4개 기관(UNGC, UNCTAD, UNEP-FI, UN PRI)의 협업으로 창설되었는데, SSE 이니셔티브는 증권거래소를 통해 기업의 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ESG)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투자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²⁸⁾

또한,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의 환경·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을 높여 자본시장의 건전성 확보에 적극 기여하고,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향상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적극 독려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거래소 공고(Peng-00363/BEI.POP/12-2020)를 통하여 IDX ESG Leader Index를 출시하였다. IDX ESG Leader Index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가 가장 낮은 ESG 위험도를 보이는 종목 30개를 3개월 단위로 평가하여 발표하고 그 발표된 30개 종목의 주가를 지수로 만들어 거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0개 종목을 선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27) <https://www.idx.co.id/berita/press-release-detail/?emitenCode=1431>

28)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런던증권거래소, 한국거래소 등 전세계의 다양한 거래소가 가입되어 있다.

| IDX ESG Leader 선정 방법 |

1. <https://www.sustainalytics.com> 의 ESG 위험도 점수 평가 활용

Negligible	Low	Medium	High	Severe
0 - 10	10 - 20	20 - 30	30 - 40	40+

2. ESG 위험도 평가가 있는 종목으로 IDX 80 지수 선정
3. ESG 위험도 평가 점수가 “높음” 및 “심각”에 속한 기업 배제
나머지 기업들 중 ESG 위험도가 가장 낮은 순서대로 30개 기업(종목) 선정

2021년 8월 현재를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상장회사들 중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의하여 ESG 리더로 선정되어 있는 회사의 리스트²⁹⁾는 다음과 같다.

| 2021년 8월 기준 ESG Leader 30개 인도네시아 상장회사(2021. 7~ 9) |

1. ACES Ace Hardware Indonesia Tbk.
2. AKRA AKR Corporindo Tbk.
3. ASII Astra International Tbk.
4. BBKA Bank Central Asia Tbk.
5. BBNI Bank Negara Indonesia (Persero) Tbk.
6. BBRI Bank Rakyat Indonesia (Persero) Tbk.
7. BBTN Bank Tabungan Negara (Persero) Tbk.
8. BEST Bekasi Fajar Industrial Estate Tbk.
9. BMRI Bank Mandiri (Persero) Tbk.
10. BSDE Bumi Serpong Damai Tbk.
11. BULL Buana Lintas Lautan Tbk.
12. CTRA Ciputra Development Tbk.
13. DMAS Puradelta Lestari Tbk.
14. ERAA Erajaya Swasembada Tbk.
15. EXCL XL Axiata Tbk.
16. HMSP H.M. Sampoerna Tbk.
17. INTP Indocement Tunggal Prakarsa Tbk.
18. JSMR Jasa Marga (Persero) Tbk.
19. LPPF Matahari Department Store Tbk.

29) <https://www.idx.co.id/data-pasar/data-saham/indeks-saham/>

20. MAPI Mitra Adiperkasa Tbk.
21. MNCN Media Nusantara Citra Tbk.
22. PWON Pakuwon Jati Tbk.
23. RALS Ramayana Lestari Sentosa Tbk.
24. SCMA Surya Citra Media Tbk.
25. SMGR Semen Indonesia (Persero) Tbk.
26. TBIG Tower Bersama Infrastructure Tbk.
27. TLKM Telkom Indonesia (Persero) Tbk.
28. TOWR Sarana Menara Nusantara Tbk.
29. UNVR Unilever Indonesia Tbk.
30. WOOD Integra Indocabinet Tbk

나아가,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는 기업들의 ESG 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IDX ESG Leader Index 지수 및 30개 ESG 선도기업 발표 이외에도 Sustainalytics와 협업을 통하여 Sustainalytics에서 제공하는 개별 인도네시아 상장기업에 대한 ESG 위험도 점수를 공개할 예정이다.³⁰⁾ 이러한 상장기업에 대한 ESG 위험도 평가와 그 위험도 점수는 당해 상장회사가 ESG 경영을 이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는 위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ESG 독려 및 기업들의 ESG 경영의 실천이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으로 더 많은 자본이 유입되도록 하는 선순환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에 대한 더 나은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³¹⁾

3.2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총국(OJK)의 ESG 제도 마련과 그 영향

인도네시아 OJK은 “OJK설립법(UU 21/2011)에 의하여 설립된 이래 금융업 및 일반 상장회사의 활동에 대한 감독과 조정, 그 활동 관련 규정 제정의 권한 등에 기초하여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 및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OJK는 2014년 이래 국제 모범 사례에 따라 인도네시아 상장기업 관련 ESG 제고의 일환으로,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의 틀을 만들고 그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혁을 시작하였다.

30) <https://www.idx.co.id/berita/press-release-detail/?emitenCode=1431>

31) <https://www.idx.co.id/berita/press-release-detail/?emitenCode=1431>

2014년, OJK는 지속가능하고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4가지 규정을 제정하였다.

| 모범적인 지배구조 구현을 OJK 규정 |

1.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개최 및 계획에 관한 OJK 규정 No.32/POJK.04/2014
2. 상장회사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OJK 규정 No.33/POJK.04/2014
3. 상장회사의 지명 및 보상위원회에 관한 OJK 규정 No.34/POJK.04/2014
4.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사무국에 관한 OJK 규정 No.35/POJK.04/2014

2015년, OJK는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상장회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OJK는 지속가능한 금융의 실현을 목표로 민간 부문의 환경·사회적 책임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ESG 경영의 정착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위 로드맵에서는 OJK가 관리 및 감독하는 금융산업(은행, 자본시장 및 비은행 금융업) 전반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시하였는데,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규제, 지속가능한 금융 상품의 개발, 금융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위한 일정을 제시하였다.

| 기업지배구조 지침 관련 OJK 규정 |

1.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OJK 규정 No.21/POJK.04/2015
2.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OJK 회람문서 OJK Circular letter No.32/SEOJK.04/2015

2017년, OJK는 금융규제기관, 은행 및 금융협회 등이 참여한 지속가능한 금융네트워크 연례 회의에서 공유 및 토론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에 관한 인도네시아 최초의 규정을 제정함으로써(OJK 규정 No. 51/POJK.03/2017), 모든 금융기관들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업활동 과정 내에서 지속가능한 금융 원칙이 통합되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2017년 OJK 규정에서는 지속가능한 재정의 원칙, 지속가능한 재정 관련 실행 계획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 제출 의무와 요건 등을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OJK의 제도 마련과 기업들의 노력에 힘입어, 아세안 기업지배구조 평가(ASEAN CG Scorecard; ACGS) 기준 인도네시아 100대 상장회사들의 지배구조 평가 긍정(준수 여부) 지수는 2014년 55.1%에서 2018년 66.5%로 기존 대비 21%의 상승률을 나타냈다.³²⁾

32) Indonesian Institute for Corporate Directorship, 2018

| 인도네시아 100대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 긍정 평가 변화 |

ASEAN CG SCORECARD Part	YEAR				
	2018	2017	2016	2015	2014
Total (Weighted Average Part A-E)	66.5%	65.1%	63.9%	59.9%	55.1%
Part A Rights of Shareholders	51.2%	54.4%	63.5%	56.9%	49.9%
Part B Equitable Treatment of Shareholders	43.0%	41.0%	41.3%	39.0%	37.2%
Part C Role of Stakeholders	82.2%	81.7%	79.4%	78.0%	69.6%
Part D Disclosure and Transparency	76.7%	74.7%	75.6%	72.9%	70.1%
Part E Responsibilities of the Board	64.0%	61.5%	61.1%	55.9%	50.2%

또한, 위 지속가능한 금융에 관한 OJK 규정(No. 51/POJK.03/2017)에서는 인도네시아 대형은행들(Buku 4, Buku 3 및 외국은행이 소유한 은행들)에게 지속가능한 금융의 실행을 의무화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 마련의 결과 인도네시아 대형은행들의 지속가능한 포트폴리오 자금 조달이 증가하였다. 위 OJK 규정은 대형은행들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제출, 지속가능한 재정 구현 보고서의 제출 등을 의무화하고 있었는데, 17개의 대형은행들이 제출한 2019년 지속가능성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포트폴리오 자금 조달 규모가 810억 달러(미화)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2017년에 비하여 137%가 증가한 규모였다.³³⁾

한편, OJK는 위의 지속가능한 금융에 관한 제도 마련 이외에도 2017년 환경친화적인 자본시장 상품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녹색채권에 관한 OJK 규정(OJK 규정 No.60/POJK.04/2017)을 신설한 바 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은행들로 하여금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채권/대출을 발행하도록 장려하였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시장 은행들은 다음과 녹색채권을 발행하였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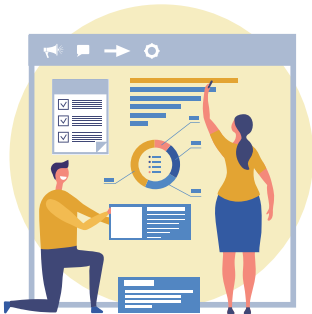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은행들 녹색채권/대출 사례 |

1. 2018년, OCBC NISP 은행은 기후 관련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에서 녹색채권을 발행한 최초의 상업은행. 이 프로젝트에는 IFC가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함

33) <https://www.ifc.org/wps/wcm/connect/8a1337a6-87cf-487d-964b-94b55cb45883/IFC-OJK+IFC+Collaboration+Case-Brochure-FIN.pdf?MOD=AJPERES&CVID=nwv4462>

34) <https://www.ifc.org/wps/wcm/connect/8a1337a6-87cf-487d-964b-94b55cb45883/IFC-OJK+IFC+Collaboration+Case-Brochure-FIN.pdf?MOD=AJPERES&CVID=nwv4462>

2. 2019년, Rakyat Indonesia 은행(BRI)은 고용 창출, 사회경제 발전, 공공 주택, 친환경 교통 및 친환경 건물의 건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5년 만기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채권을 발행함
3. 2019년, Tabungan Pensiunan Nasional 은행은 IFC로부터 4년 만기의 1억 5천만 달러의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수익금은 녹색금융 및 인도네시아 영세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사용하기로 한 바 있음
4. 2020년, OCBC NISP 은행은 환경 보호 프로젝트 지원, 여성 기업가 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2억 달러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하였음. 위 녹색채권의 수익금은 친환경 금융, 친환경 프로젝트, 여성 기업가 및 여성 소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위하여 사용될 예정임



KOTRA자료 22-025

인도네시아 투자실무 가이드 (2021년 개정판)

발 행 인 유정열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2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 화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I S B N 979-11-402-0227-0 (95320)

Copyright © 2022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실무 가이드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ISBN 979-11-402-0227-0 (95320)

Indonesia